

발명특허

INVENTION & PATENT

June 2009

VOL. 395

06





2009 제44회 발명의 날 기념식



96

IP Report

- 16 2009 제44회 발명의 날 기념식 수상내역
- 18 2009 제44회 발명의 날 기념식 수상자 인터뷰
- 23 책과의 만남
- 24 발명자의 지식재산 창출 실태분석
대학 지식의 파급을 통한 발명의 확산
- 33 지식재산권 용어사전
- 34 포커스 새로 도입된 재심사제도와 직권보정제도
- 37 특허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38 국제특허분쟁지도 중국특허(전리)분쟁지도
- 40 지식재산경영사례 Tiger Woods 상표 사례



- 본지는 한국도정지배권리의 실현요건을 준수합니다.
- 본지에 게재된 기사와 본회의 견해와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한국발명진흥회 회장 월간 발명특허
2009년 6월호 제34권 제6호(통권395호)
발행인/편집인 허진규
인쇄인 이평원
발행처 한국발명진흥회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우 135-980)
전화 02)3459-2800(대)
인쇄 2009년 6월 1일
발행 2009년 6월 5일
인쇄처 휘문인쇄사 (02)2276-1234

IP Column

- 42 해피 CEO 인터뷰
- 44 특허기술 평가결과 활용사례
특허기술 제값받기 - (주)엠스코
- 49 우표로 본 인물과 역사
- 50 발명칼럼 21세기 기업에 필요한 지식재산 인제
- 54 지식재산강의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 80 문화산책

IP Information

- 82 발명만화 아무도 몰랐던 물래발명이야기
- 84 건강하게 삽시다 화 조절하기
- 86 즐거운 퍼즐

IP News

- 88 해외특허뉴스 해외특허동향, 해외특허정책, 해외특허분쟁
- 96 KIPA 소식 한국발명진흥회 행사 및 소식
- 98 KIPO 소식 특허청 소식
- 102 특허계 동향 특허계 소식
- 103 회원가입을 축하합니다!
- 104 발명365



세계 100여 개국의 특허정보 제공
전문적이고 다양한 데이터 검색과 분석을 통한 특허 전문가를 위한 검색 솔루션

지금 쓰고 있는 특허 검색 시스템은 TotalPatent™만큼 방대하고 우수합니다?

TotalPatent™는 특허 전문가를 위해서 주요 국가의 기술을 보다 쉽게 찾아낼 수 있도록 더 많은 국가의 특허데이터를 수집·번역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96개국의 특허데이터 수록

- US, EP, WO, JP, DE, FR, GB 및 주요 22 개국의 명세서 Full text를 수록
- 100여 국가의 서지사항 정보를 수록
- BRIC - 중국(중국어, 영문 Full text), 브라질, 러시아, 인도 특허 2009년 업데이트 진행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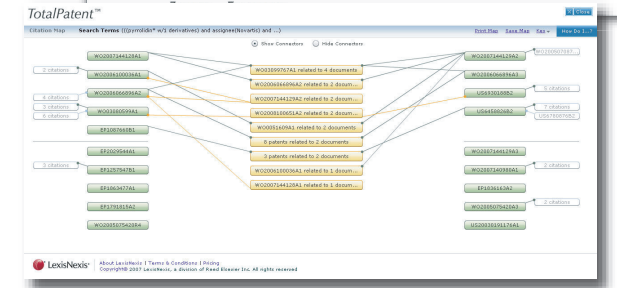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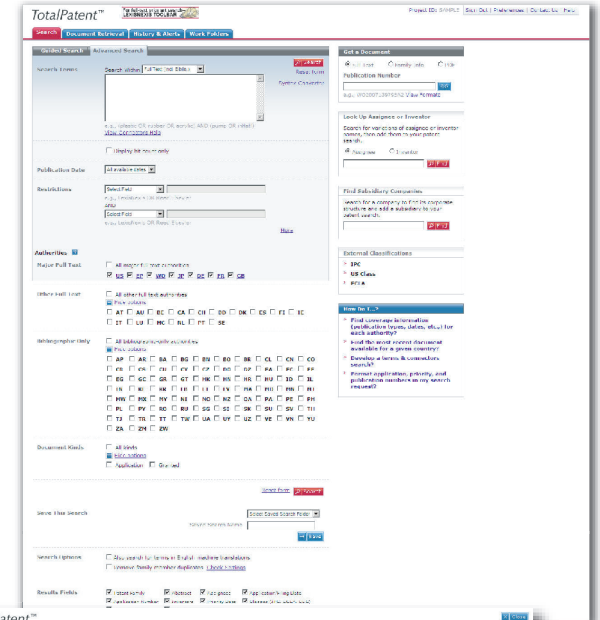
US, EP, WO, DE, FR, GB, AT, BE, CH, DD, DK, ES, FI, IE, IT, LU, MC, NL, PT, SE, AU, CA, JP

비 영어권 특허의 영문 Full text 제공으로 검색을 향상

- EP, WO특허 내 비 영어권 데이터 영문 검색 (99% 이상의 EP, WO 특허 Full text 검색)
- DE, FR, CH 등 비 영어권 데이터의 명세서 Full text 영문 검색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정보 제공

- Multi Data Source를 이용한 다양한 데이터 제공(INPADOC PRS 데이터 등)
- LexisNexis 만의 별도로 제작된 추가 데이터 제공(US POST ISSUANCE 데이터 등)
- Court link 서비스를 통한 미국 특허 소송 정보 제공(소송 건서지 및 히스토리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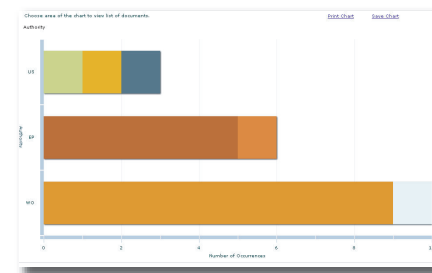


데이터 분석 및 리포팅 기능

- 사이트 내에서 클릭으로 바로 데이터 분석
- US, EP, WO, JP 통합 Citation 분석 및 유사 기술군의 Citation 분석
- 패밀리 정보, Citation 정보, 검색 결과 리포팅 기능

특허 전문가를 위한 상세 검색 및 모니터링

- 250여개 필드에 대한 상세 검색 기능 제공
- Legal 정보의 상세한 법적 상태를 구분하여 별도 검색
- 특허의 상태 변경(등록, 패밀리 변동, 인용정보 추가, 출원인 변경 등) 정보를 모니터링



내가 찾는 기술이 빠짐없이 검색되었는지 지금 TotalPatent로 다시 확인해보십시오.
세계 최고의 Information 전문 Global Company LexisNexis에서 TotalPatent의 시범 ID를 제공해드립니다.



제44회 「발명의 날」 기념식, 발명유공자 총 77명 포상

금탑 산업훈장에 LG전자(주) 이정환 부사장
19일 오후 2시30분 코엑스 3층 오디토리움에서 시상식 개최



트 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지난 5월 19일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제44회 발명의 날 기념식을 갖고, 총77명의 발명 유공자에게 훈·포장 등을 수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승수 국무총리, 고정식 특허청장을 비롯해 포상자와 가족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

시상식에서는 LG전자(주) 이정환 부사장이 금탑 산업훈장 수상의 영예를 안았고, 서울반도체(주) 이정훈 대표이사와 엠텍비전(주) 이성민 대표이사가 은탑 산업훈장을, 삼성전자(주) 최길현 수석과 (주)필룩스 노시청 대표이사가 동탑 산업훈장을 각각 수상했다.

올해의 발명대왕에는 동화약품공업(주) 오윤석 수석연구원이 선정되어 특허청장으로부터 증서와 월계관을 받았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기념식 치사에서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희망찬 선진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서는 새로운 것에 과감히 도전하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발명가 정신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21세기 지식재산 선진 일류국가 실현을 위해 세계 일류수준의 지재권 보유기업이 다수 배출될 수 있도록 지식산업을 집중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승수 국무총리와 고정식 특허청장 등 주요내빈들이 수상자들의 발명품을 관람하고 있다.



▲ 한승수 국무총리가 (주)하이닉스반도체 도창호 선임연구원에 산업포장을 수여하고 있다.



▲ 허진규 한국발명진흥회장이 콜마산업 박정주 대표에게 한국발명진흥회장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 고정식 특허청장이 한국발명진흥회 차명진 강원지회장에게 대통령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한편, 기념식에서는 ‘지식재산, 녹색성장, 선진 일류국가!’를 주제로 홍보영상물 상영과 이성민 엠텍비전 대표의 우수발명사례 발표 등으로 발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시켰다.

이밖에, 부대행사로 충남대의 ‘구형 이동로봇’과 (주)필룩스의 ‘친환경 형광등’ 등 총11점의 우수발명품이 독립부스로 전시되었으며, 세계최초로 발명된 악기들로 구성된 퓨전국악 공연과 샌드애니메이션 등의 축하행사가 펼쳐졌다.

발명의 날 기념식은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한 5월 19일을 「발명의 날」로 지정, 해마다 기념식을 개최하여 우수발명가 및 발명유공자를 포상하는 발명가들의 축제의 장이다.



▲ 고정식 특허청장이 올해의 발명대왕인 동화약품공업(주) 오윤석 수석연구원에 월계관을 씌워주고 있다.



국무총리 한 승 수

우리나라는 반드시 세계 최고의 지식강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국의 발명인 여러분,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온 국민과 더불어 '제44회 발명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발명과 기술개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발명인 여러분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발명의 날을 맞아 그동안의 탁월한 성과로 수상의 영예를 안은 수상자와 가족 여러분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명인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발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발명은 당장의 국가발전 뿐만 아니라, 미래를 앞장서서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하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극복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두 가지 중대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이를 해결해가는 데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선도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지난 해 8월 15일 건국 60주년 기념식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선포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먼저 국가발전 패러다임 자체를 기존의 양적 성장에서 새로운 질적 성장으로 과감히 전환한다는 선언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녹색뉴딜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기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뉴딜정책'과 장기적으로 위기 이후의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녹색성장 전략'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녹색성장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녹색기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녹색기술은 바로 여러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발명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정부가 앞으로 4년간 모두 50조원을 투입하게 될 녹색뉴딜사업은 발명인 여러분에게도 많은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발명인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과 참여로 새로운 '그린 오션', '녹색발명의 시대'를 개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하루속히 극복하고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발명인 여러분, 지금 세계는 새로운 특허기술의 확보와 시장개척을 위해 국경 없는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은 지식재산권을 선점하여 수익을 최대화하는 동시에 경쟁사의 시장진입을 막고 있습니다.

이처럼, 발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식재산의 보호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세계 최고의 특허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핵심, 원천기술의 지적재산권 획득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세계일류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지식산업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적재산권 선진 5개국 활동'을 주도하고, 지적재산권 저개발국을 지원하는 등 이 분야에서 국제협력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발명인과 과학기술자들이 우대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입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발명인과 기업인, 그리고 국민 여러분이 함께 한다면 우리나라는 반드시 세계 최고의 지식강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선진일류국가를 건설하는 데 훌륭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발명인 여러분이 그 중심에 있다는 큰 자부심을 가지고 새로운 발명과 연구개발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발명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을 새롭게 하고 보다 큰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발명진흥회 회장 허진규

우리 경제는 선진국형 지식산업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한승수 국무총리님!
그리고 내외 귀빈 및 수상자 여러분!

오늘 발명인들의 가장 큰 축제인 ‘발명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빛나는 공적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발명인 여러분과 가족 친지 그리고 직장 동료 여러분에게 힘찬 박수와 축하를 보냅니다.

발명인 및 내빈 여러분!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원동력이 지식재산에 달려 있다는 것은 이제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상식이 되었습니다.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은 물론 이웃나라 중국에서까지도 이미, 지식재산을 국가적 이슈로 삼고 이와 관련된 우수인재 양성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특허청의 강력한 발명진흥정책이 알찬 열매를 맺기 시작하여 발명가가 우대받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기업은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세계시장을 주도할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하여 세계 일류 지재권 보유기업으로의 전환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야 하겠습니다.

발명인 및 내빈 여러분!

최근 MS, 3M 등 글로벌 외국 기업이 한국 특허청에 PCT 국제 조사를 신청하는 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PCT 국제조사서비스의 확대·강화는 우리의 선도기술이 외국기업에 의해 특허를 선점당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연간 약 1,800만 불의 조사서비스 외화 수입과 함께 별도의 국가예산 투입 없이 200여 개의 이공계 박사급 고용창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발명계의 오랜 숙원인 특허침해 소송의 변호사·변리사 공동대리제 도입을 통해 명실공히 특허전문가에 의한 특허기술 분석 및 침해기술비교 등을 통해 정당한 특허권리가 효과적으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저는 오늘 자리를 함께 하신 발명인 여러분과 전국의 300만 발명인이야말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힘이요 기둥’이라고 확신합니다.

치열한 특허전쟁에서 기업의 지식재산 경영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원하는 실무형 인재양성이 필요하며, 특히, 지식재산 인적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해외기업의 특허공세 또는 침해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지적재산 전문인력 확보가 시급한 실정으로 이에,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중소기업을 찾아가는 맞춤형 특허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창의적이고, 발명 지향적인 전통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열이 매우 높고 모험심과 도전정신 또한 강한 민족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원천기술을 많이 확보하고 이 기술을 특허제도로 잘 보호하고 활용하면 우리 경제는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선진국형 지식산업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진흙 속에 묻힌 진주를 찾아내듯 모든 국민이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발명으로 승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두뇌와 어깨 위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계속 정진해 갑시다.

다시 한 번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 크게 발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통~ 집에서 나오질 않는 선영씨.
 도대체 왜 그런가 했더니.....
 저렇게 편해보이는 소파를 사놓았네요~!

선영씨! 도대체 **어디서** 산거예요???

인터넷 주소창에 **바이인벤션** 을 쳐보세요.



바이인벤션에서 구입한
 '보나라 빈백'



특허정보조사
 (Patent Information Service - Search & Analysis)

**기술개발의
 첫걸음입니다!**

| 선행기술조사서비스 |

전세계 특허/비특허 문헌을 조사·분석하여 조사보고서(search report)를 제공함으로써 특허출원 시 선행출원 유무의 확인, 경쟁사의 기술동향조사, R&D방향 설정 및 중복투자 방지, 특허분쟁 방지 및 대응에 활용

| 특허맵(Patent Map)서비스 |

특허정보에 포함되어진 항목(출원인명, 국제특허분류기호, 발명을 구성하는 키워드 등)을 추출하여 분류 → 분석 → 가공하여 이를 도표·도식화함으로써 기업으로 하여금 해당기술의 발전추이, 미래흐름의 예측 등을 가능하게 하여 체계적인 특허전략 수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 특허(IP)컨설팅 / 교육지원 |

특허관리 전담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중소기업(SMEs) 등을 위해 KIPRI의 전문인력이 특허관리, 선행기술조사 등에 관한 기법 컨설팅/교육지원

FORX Forecast by
 Reliable Experts

신청
 상담
 안내

선행기술조사서비스

신청 및 접수 : 유현주 02-6915-6114
 일반 상담 : 원태희 02-6915-6623
 팩 스 : 02-6915-6630

특허맵 서비스/특허컨설팅/교육지원
 신청 및 상담 : 배경완 02-6915-6604

<http://www.forx.org>

지식재산교육의 모든것! **NEW** 이 사이트 하나면 충분합니다

연구원

연구방향설정
중복연구방지위한
특허정보검색, 활용
온라인교육시스템제공

초·중·고등학생

창의력 증진
발명기법을 익힐 수 있는
다양한 이러닝
서비스 제공

발명교사

발명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무연수과정



중소기업

특허출원서작성
및 전자출원 등
실무교육
맞춤제공

대학생

전공별 다양한
온라인 교육
시스템 제공

일반인

지식재산권
기초부터
전문가과정까지
온라인콘텐츠
무료제공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이란?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과 한국발명진흥회가 운영하던 발명,지재산 온라인 교육사이트인 사이버특허아카데미, 사이버발명교육연수원, 발명교육센터 등 교육시스템을 통합하여 사용자가 원클릭으로 온라인교육, 교육정보, 커뮤니티, E토론 등이 가능하도록 교육생의 편의를 강화한 포털사이트

기업 (중,소,대기업)

기업별 전용사이트를
무료로 개설·운영
방문교육서비스 가능

연구기관

R&D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연구기관 전용사이트를
무료로 개설, 운영

일반인

발명에 관심있는
일반인을 위한
e-러닝 무료교육

청소년

발명의 원리, 아이디어발상
창의력 신장을 위한
청소년 발명교육

대학생

이공계, 디자인, 예비교원 등
예비지재권전문가를 위한
맞춤 교육

발명교사

발명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무연수과정

'09년 개정 특허법



'08년 10월 특허법이 개정, '09년 시행됨에 따라 개정내용과 개정 취지를 특허청 특허심사정책과의 정현수 서기관께서 직접 강의한 과정입니다.

강의소개

'08년 10월 특허법이 개정, '09년 시행됨에 따라 개정 내용과 개정 취지를 특허청 특허심사정책과의 정현수 서기관께서 직접 강의한 과정입니다.

학습대상

특허관련종사자, 연구원 등 개정특허법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학습목표

'08년 10월 특허법이 개정, '09년 시행됨에 따라 개정내용과 개정 취지를 알 수 있다.

수강방법

1. <http://general.ipacademy.net> ▶
2. 로그인(회원가입) ▶
3. 교육과정중 일반정규과정 선택 ▶
4. 수강신청 ▶
5. 나의강의실에서 학습

2009 사이버 국제특허아카데미 모범학습상 안내

부트로 공부도 하고
상품권도 받고!!!



2009년도 특허청 규제개혁과제 추진현황

특허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042)481-5058]

1. 과제 요약표

번호	과제명	과제내용	조치사항	추진목표 및 기대효과	완료 시기
1	수수료 반환 대상 확대	상표등록출원 후 1개월 이내 출원의 취하 또는 포기 시 상표등록출원의 우선권 주장 신청료도 반환대상에 추가	상표법 개정	수수료 반환제도의 취지에 부합한 제도 개선으로 출원기업인의 비용 부담 감소	'09.9.30 (국회제출)
2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 등록 제도 간소화	현재 출원제도를 신청제도로 간소화하여 작성부담 완화 및 처리기간 단축	상표법개정	· 갱신등록 출원서 작성부담 감소 등 절차간소화 · 실제심사 배제로 인한 행정비용 절감	'09.9.30 (국회제출)
3	심판청구서 작성 첨부 서류의 간소화	결정등본 수령일자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 생략	특허법시행 규칙개정	연간 15,000건 이상의 심판청구서류 첨부 생략으로 청구인 부담 경감	'09.8.30 (공포)
4	변리사자격·등록·특허법인 등 민원처리 간소	민원서류 구비 간소화, 민원처리기간 단축, 민원서식 단순화 등	변리사법 시행령개정	민원구비서류 61.5% 축소로 민원신청 시간 및 비용 절감	'09.6.30 (공포)
5	수수료 등 자동납부 실시	「수수료 자동납부 신청서」를 우리청에 제출한 고객의 예금계좌에서 '모든 수수료'를 자동이체 실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	납부기간 경과에 따른 권리실희 방지 가능	'09.6.30 (공포)
6	부정경쟁방지행위 조사 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세분화	위반행위의 유형 및 횟수에 따라 부과 금액을 차등화 및 구체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무부과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행위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	'09.6.30 (공포)
7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비용액 결정 청구서의 보정 시 지정기간 연장횟수 확대	지정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의 제한을 없애고 지정기간 연장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비용액 결정에 관한 규정(특허청고시) 개정	비용액 결정신청서를 보정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되어 신청인의 경제적 편익 증대	'09.6.30 (공포)
8	FAX를 통한 국제출원 절차 개선	모사전송장치를 통하여 제출된 서류의 원본제출 의무를 완화	특허법시행규칙 개정	FAX를 통한 국제출원 절차가 간소화 될 것으로 기대	'09.6.30 (공포)
9	국제출원의 취하간주 통지에 대한 의견서제출기간 제한 완화	국제출원의 취하간주 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 연장	특허법시행규칙 개정	의견서 제출기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출원인의 편의 증진	'09.6.30 (공포)
10	디자인 출원 시 도면 생략대상 확대	디자인을 출원할 때 첨부하는 도면 중 생략할 수 있는 도면의 대상을 확대하여 출원인 선택기회 보장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개정	도면생략 대상 확대로 출원인의 편의 증진 및 경제적 비용을 절감	'09.6.30 (공포)
11	해외 특허출원 공통서식 도입	외국에 출원할 때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출원서식 도입	특허법시행규칙 개정	국제출원 공통서식 도입으로 절차가 간소화되어 출원인의 편의 도모	'09.6.30 (공포)
12	상표 불사용취소심판 청구인적격 확대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상표에 대한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현행 이해관계인에서 누구든지로 확대	상표법 제76조 개정	상표 불사용취소심판 청구인적격 확대로 저장상표 방지 및 상표 선택기회 보장	'09.9.30 (국회제출)

※ 자세한 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 공지사항 1066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기술가치평가에 의한 사업화 자금 보증지원안내

특허청과 기술보증기금 간에 체결된 우수특허기술 사업화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기술보증기금이 수행하는 특허기술가치평가에 대하여 평가 수수료를 지원하고, 기술보증기금은 평가된 우수특허기술에 대하여 사업화 자금을 아래와 같이 지원할 계획이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및 대상]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지원한도]

사업화자금 보증지원한도 : 신청기업이 보유한 특허권의 기술가치평가금액 이내로서 같은 기업당 10억 원 한도
평가수수료 보조지원한도 : 건당 500만 원 한도 (자기부담금 20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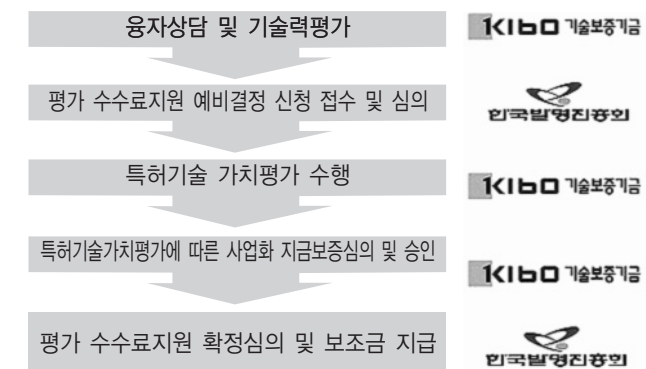
[취급점 및 보증상대처]

취급점 :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구로, 강남, 송파, 종로, 서초, 인천, 수원, 화성, 부천, 천안, 원주, 청주, 대전, 전주, 광주, 대구, 울산, 부산, 안산, 창원)

보증 상대처 : 금융기관

[신청접수]

신청 접수는 연간수시(선착순 마감)이며, 자세한 사항은 기술보증기금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 및 본점의 평가마케팅팀 대표전화 051-460-2466(<http://www.kibo.or.kr>)
- 한국발명진흥회 IP경영지원팀 : 02-3459-2884, 2885, 2890 (팩스 : 02-3459-2899)
- 평가수수료 지원신청을 위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www.kipa.org 발명의 평가지원)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 "지역별 영업점 검색" 참조

2009년 국제출원비용지원 신청안내

1. 사업 개요

○개인발명가 및 중소기업(중견기업이 보유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기술성 및 사업성이 우수한 특허를 업선·지원하는 우수특허 사업화 지원사업(국제출원비용·시작품제작·발명의 평가비용)과 특허·브랜드·디자인경영 등 지식재산경영 컨설팅사업을 연계하여 기업별 실정에 맞게 맞춤형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

2. 지원 대상

○개인 또는 중소기업(중견기업 포함)으로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을 해외에 출원한 자(개별국 출원단계 진입한 건)
- 해외 출원국가의 출원단계 비용을 이미 송금한 기술로, 신청일 기준 출원비용 송금일자가 5년 이내

3. 지원 내용 및 규모

○국제출원비용(28억원) : 연간 1인당 5건까지 지원
- PCT국제출원단계의 비용과 개별국 출원단계의 비용 등

○권리별 지원금액한도

권리별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지원금액한도	700만원	200만원

4.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신청서류는 1차/2차로 제출함)

○지원절차

- ① 패키지 지원 신청·접수 ② 사업별 심사(1단계 기본 요건심사 및 기술성평가, 2단계 선정심사위원회)
- ③ 각 사업별 세부 지원절차 진행 ④ 최종수혜자 선정
- ⑤ 지원

○국제출원비용지원 신청기간 : 연중수시

- 1차지급 : 3월말 / 2차지급 : 5월말 / 3차지급 : 8월말 / 4차지급 : 11월말

○신청방법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http://www.kipa.org>)/사업공고/국제출원비용지원사업안내문의 첨부파일(내려받기)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문의처 안내 ※

○주소 : (135-9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18층) 한국발명진흥회

○연락처 - 국제출원비용지원 사업담당 : 02-3459-2843, -2848, -2846(팩스 : -2799)

2009 제44회 발명의 날 기념식 수상내역	16
2009 제44회 발명의 날 기념식 수상자 인터뷰	18
책과의 만남	23
발명자의 지식재산 창출 실태분석	
대학 지식의 파급을 통한 발명의 확산	24
지식재산권 용어사전	33
포커스	
새로 도입된 재심사제도와 직권보정제도	34
특허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37
국제특허분쟁지도	
중국특허(전리)분쟁지도	38
지식재산경영사례	
Tiger Woods 상표 사례	40

발명인의 전당 관람안내

발명인의 전당	www.kipo.go.kr
관람가능시간	평일 09:00~18:00 (국경일/공휴일 제외)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4동 (1층 소재)
관람연락처	전 화 : (042)481-5940 담당자 : 김명희

찾아오시는 길



IP Report

영광의 수상자들

훈격	분야	포상대상자			비고
		소속	직위	성명	
훈장	금탑	발명유공자(대기업)	LG전자(주)	부사장	이정환
	은탑	발명유공자(대기업)	서울반도체(주)	대표이사	이정훈
		발명유공자(중소기업)	엠텍비전(주)	대표이사	이성민
	동탑	발명가(직무-대기업)	삼성전자(주)	수석	최길현
		발명유공자(중소기업)	(주)필룩스	대표이사	노시청
	철탑	발명유공자(중소기업)	(주)에디피엔지니어링	대표이사	허광호
		발명가(개인)	(주)모컴테크	대표이사	최해용
	석탑	발명가(직무-중소기업)	(주)자동물내림	기술부장	이재통
		발명유공자(연구기관)	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처장	정윤하
	포장	산업포장	발명가(직무-대기업)	(주)하이닉스반도체	선임연구원
발명가(직무-대기업)			(주)코리아나화장품	연구소장	이건국
발명유공자(중소기업)			태원전기산업(주)	사장	이영규
발명유공자(중소기업)			평산에스아이(주)	대표이사	이종화
발명장려유공자(기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주)	부장	최상모
대통령 표창	발명자(개인)	(주)대경기업	대표이사	이광주	
	발명자(개인)	신창공업(주)	대표이사	김영신	
	발명장려유공자(발명단체중사자)	한국발명진흥회 강원지회	회장	차명진	
	발명장려유공단체(중소기업)	주성엔지니어링(주)	주성엔지니어링(주)		
	발명장려유공단체(중소기업)	린나이코리아(주)	린나이코리아(주)		
	발명장려유공단체(중소기업)	(주)에스에프에이	(주)에스에프에이		
	발명장려유공단체(중소기업)	(주)에스에프에이	(주)에스에프에이		
국무총리 표창	발명자(개인)	(주)신아전자	대표이사	이재덕	
	발명유공자(중소기업)	(주)대진코스탈	대표이사	강성공	
	발명장려유공자(기타)	기술보증기금	수석팀장	오진석	
	발명장려유공자(기타)	(주)필름잇다우	대표이사	최희성	
	발명지도유공자(교사)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교사	배은식	
발명장려유공단체(유관단체)	대구상공회의소 대구지식재산센터	대구상공회의소 대구지식재산센터			
지식경제부장관 표창	발명자(개인)	(주)세기종합환경	대표이사	양기해	
	발명자(개인)	벤틱스(주)	대표이사	고경찬	
	발명자(개인)	(주)나노카보나	대표이사	신일산	
	발명자(개인)	(주)미유테크놀로지	대표이사	오준수	
	발명자(개인)	(주)해누리	대표이사	정정례	
	발명가(학생)	영동대학교	4	권혜진	
	발명가(직무-연구기관)	전자부품연구원	책임연구원	김건년	
	발명가(직무-교수)	연세대학교	교수	김상호	
	발명유공자(중소기업)	(주)듀존의료기	대표이사	두홍직	
	발명유공자(중소기업)	(주)에리트	사장	박병훈	

지식경제부장관 표창	발명유공자(중소기업)	(주)신생	대표이사	윤주철
	발명유공자(중소기업)	(주)거산기계	대표이사	박용기
	발명유공자(중소기업)	케이와이케이김영귀환원수(주)	대표이사	김영귀
	발명지도유공자(교사)	충북반도체고등학교	교사	조윤상
	발명장려유공단체(중소기업)	(주)데크	(주)데크	단체
특허청장 표창	발명장려유공단체(유관단체)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지식재산센터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지식재산센터	단체
	발명자(개인)			유형주
	발명자(개인)	젤나코	대표	황인철
	발명자(개인)	나노렉스	대표	이찬봉
	발명가(개인)	호산테크	대표	송재현
	발명자(학생)	연세대학교	3	박승복
	발명자(학생)	아주대학교	4	강병수
	발명자(학생)	신림중학교	3	양민우
	발명자(학생)	동북고등학교	2	우석영
	발명자(학생)	성일고등학교	3	박광동
	발명유공자(중소기업)	세창화학(주)	대표이사	김세창
	발명유공자(중소기업)	이엑스티(주)	대표이사	송기용
	발명유공자(중소기업)	(주)바이오텔	대표이사	김태진
	발명유공자(중소기업)	(주)한빛코리아	대표이사	김수남
	발명장려유공자(발명단체중사자)	한국발명기업총연합회	지도자문위원장	노영호
	발명장려유공자(기타)	군장대학	교수	강지호
	발명장려유공자(기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주임	조희영
	발명장려유공자(기타)	LG전자(주)	수석부장	이호
	발명지도유공자(교사)	고창남초등학교	교사	노희현
	발명장려유공단체(중소기업)	매크로드(주)	매크로드(주)	
한국발명진흥회장 표창	발명자(개인)	한국M로봇트	대표	강명수
	발명자(개인)	(주)포디랜드	대표이사	박호걸
	발명자(개인)	콜마산업	대표	박정주
	발명자(학생)	충북영동대학교	3	이동휴
	발명자(학생)	경북대학교	3	남승우
	발명자(학생)	낙생고등학교	3	최원영
	발명자(학생)	문산제일고등학교	3	박아람
	발명자(학생)	정신여자고등학교	2	오정민
	발명자(직무-중소기업)	(주)서부에너지기술	대표이사	신용오
	발명가(직무-대기업)	세메스(주)	과장	오창석
	발명유공자(중소기업)	(주)시티엔지	대표이사	김욱
	발명유공자(중소기업)	신한정밀(주)	대표이사	전석락
	발명장려유공자(발명단체중사자)	자연과학산업(주)	회장	최완순
	발명지도유공자(교사)	삼일공업고등학교	교사	오종환
	발명지도유공자(교수)	동서울대학	교수	장규순
발명장려유공단체(중소기업)	(주)대경산업	(주)대경산업	단체	

특허 경영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금탑산업훈장] LG전자 특허센터 이정환 부사장



“특허는 기업의 입장에서 경영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고, 더 크게는 국가 위상을 제고하는 데 사용되어야만 그 진가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LG전자 특허센터 임직원들은 이런 특허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노력한 결과, 오늘의 영광은 물론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도 기여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제44회 발명의 날'에 최고상인 금탑 산업훈장을 수상한 LG전자 이정환 부사장은 수상소감을 LG전자 특허센터 임직원의 몫으로 돌렸다.

LG전자 이정환 부사장은 입사 때부터 국내에서 생소하다 할 수 있는 특허 담당자로 시작해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만 32년간 근무한 정통 특허맨으로 특허 개발, 관리, 분쟁 등 다양한 특허 업무를 거치면서 '특허 경영이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실천적으로 보여준 경영자이다.

이 부사장은 LG전자 내부의 특허 역량을 높이기 위해 특허조직을 '특허센터'로 일원화함으로써 국제적인 특허 분쟁 대응은 물론 특허개발 업무의 질도 향상시킨, 특허분야의 '달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노력의 결과, LG전자는 MPEG LA(Licensing Association) 등 다수의 표준특허 Pool에 검열관(Licensors)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미국식 디지털 TV 전송방식인 ATSC 표준에 관한 핵심 특허를 확보해 상당한 로열티 수익을 창출하는 등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LG전자의 우수 R&D활동을 전략특허와 연계시켜, 국내의 업체로부터 로열티 수입은 물론 초우량 업체와도 상호 라이선싱(Cross Licensing)을 체결하여 경쟁특허 로열티 지출을 절감하는 등 국가적인 기술 무역수지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 부사장은 “앞으로는 국가 산업의 신성장동력인 태양전지 분야의 특허 매입과 특허 출원활동을 강화해 세계적인 그린 에너지 시장에서도 한발 앞서 나감으로써 이 분야에서도 국가적인 위상 제고와 수출경쟁력 확보에 앞장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친환경 LED조명기술 '아크리치' 개발

[은탑산업훈장] 서울반도체(주) 이정훈 대표이사



최근 녹색성장이 미래의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백열등과 형광등을 LED로 대체할 수 있는 LED조명의 에너지절감 핵심기술 '아크리치' 개발로 이정훈 서울반도체(주) 대표이사가 '제44회 발명의 날'에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서울반도체가 개발한 '아크리치'는 일반적으로 LED조명에 들어가는 컨버터가 필요 없이, 일반 가정 및 산업용 AC(교류) 전원에 직접 꽂아 사용하는 반도체 조명 광원이다. 따라서 LED의 장점인 긴 수명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 컨버터 비용절감과 함께 LED의 평균 수명을 극대화시켰다는 공로다.

서울반도체는 미국 시장조사기관인 스트래티지 언리미티드(Strategies Unlimited)의 '2008 고휘도 LED 시장현황과 전망(High Bright LED Market Review and Forecast 2008)' 보고서에서 2007년 LED 상위 10대 기업 중 가장 높은 연 43.6%의 고성장으로 2억 3,400만 달러의 매출을 달성해 6위에 올랐다고 보도된 바 있다. 또 아크리치에 적용된 교류전원용 반도체 관련 원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데다, 매년 매출의 10%를 R&D 활동에 투자하고 있다.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는 “앞으로는 변환기 없이 직접 교류전원에 연결해 쓸 수 있는 AC용 LED가 LED 조명기술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며, “2011년까지 세계 LED 업계 TOP3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반도체는 유럽 최고권위의 일렉트로닉誌와 E&E誌로부터 '최우수 제품상'을, 미국의 전자부품전문지 EDN의 '2007년 100대 Hot Product'에 선정되기도 했으며, 2008년에는 지식경제부 주최 '대한민국 기술대상' 및 '대한민국 10대 신기술' 선정 등의 영예를 안았다.

엠텍비전, 휴대폰 멀티미디어 기술개발로 은탑산업훈장

[은탑산업훈장] 엠텍비전(주) 이성민 대표이사



이성민 엠텍비전(주) 대표이사가 모바일 기술개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44회 발명의 날'에서 은탑산업훈장을 수여했다.

엠텍비전(주)은 카메라, ISP, 통신, 센서 그리고 특화된 메모리 기술 등 휴대폰 멀티미디어 기능을 구현하게 하는 거의 모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다.

특히, 고화소 카메라 모듈의 문제점인 불량화소, 렌즈 왜곡현상, 픽셀 간의 불균일성 등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간 영상 압축 기술을 적용한 500만 화소급 카메라 시그널 프로세서 "MV9317"를 개발했다.

또, 자동으로 색 온도를 판단해 화질 및 색 재현성을 높여주는 색 온도 감지회로(Color Temperature Detection)를 장착해 디지털 카메라 수준의 선명한 화질을 구현할 수 있게 했다.

이 대표는 "카메라폰 시장이 고화소 다기능의 멀티미디어 시장으로 전환되고, 대중화됨에 따라 앞으로도 3D 그래픽 등 잠재력 높은 시장이 많다"며 "차별화된 솔루션을 구현, 제공해 여러 가지 특화된 제품개발에 힘쓸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엠텍비전(주)는 직무발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연구원들의 특허제출을 '특허왕'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연구원들의 특허제출을 장려하고 있다.

엠텍비전(주)은 STB와 TV같은 가전제품시장과 자동차 전장의 imaging분야와 multimedia 분야로 진출을 모색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제품에 기술을 적용해 세계 마켓쉐어를 25% 이상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반도체 메모리에 금속배선 공정 탑재

[동탑산업훈장] 삼성전자(주) 최길현 수석



“메모리 제품에 보다 신뢰성과 비용 효율성이 높은 금속배선 공정을 탑재함으로써 현 메모리 및 차세대 메모리 제품의 개발기간 단축과 가격 경쟁력 향상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길현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은 반도체 메모리에 금속배선 공정을 탑재하는 기술 개발로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최 연구원은 삼성전자 반도체연구소에서 DRAM 및 FLASH 제품의 Metalization공정을 개발하고 이를 특허화 함으로써 반도체 분야의 기술 우위 확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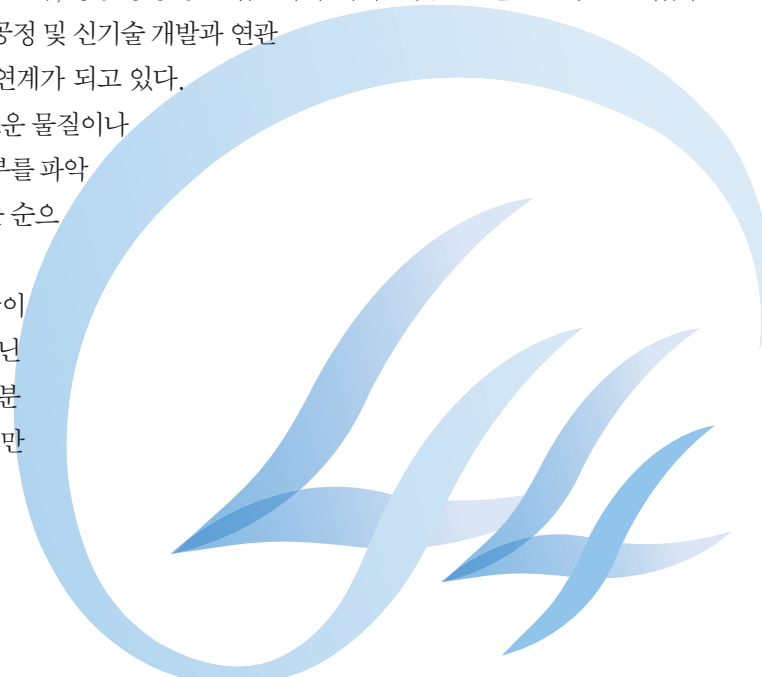
이 기술은 반도체 메모리 제품 전반에 관련한 기술이기에 DRAM 및 Flash 제품의 속도 및 성능 향상을 가져와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디지털카메라나 컴퓨터, 핸드폰의 메모리 용량 및 처리속도 증가, 디지털 TV의 선명도 향상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최 연구원은 "DRAM 및 Flash 제품의 집적도 및 속도 향상 등과 관련 있어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를 산출하기는 어려우나 관련 특허로 인한 신제품 개발 기간 단축, 성능 향상 등 간접효과가 뛰어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반도체연구소는 업무 자체가 신공정 및 신기술 개발과 연관되어 있어 업무를 진행하면서 바로 발명과 연계가 되고 있다.

특히 반도체 신제품 개발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물질이나 공정 아이디어가 있을 경우, 선 발명 존재 여부를 파악한 후 특허화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검토하는 순으로 진행돼 직무발명이 유난히 많은 곳이다.

최 연구원은 "미세화 진행에 따른 공정 난이도의 증가에 따라 앞으로는 금속배선만이 아닌 반도체의 정보 저장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도 집중해 좀 더 우수한 반도체 제품을 만드는데 일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필룩스 ‘슬림라인 등기구’로 발명의 날 동탑산업훈장

[동탑산업훈장] (주)필룩스 노시청 대표이사



노시청 (주)필룩스 대표이사는 설치시간 및 전력 소비량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슬림라인 등기구’를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제44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동탑 산업훈장을 수여했다.

일자형 튜브로 구성된 기존의 형광램프는 다수의 형광램프를 이웃해 연결할 경우, 형광램프 간 소정의 이격거리가 발생한다. 이는, 빛이 부드럽게 이어지지 못하고 끊기는 현상을 일으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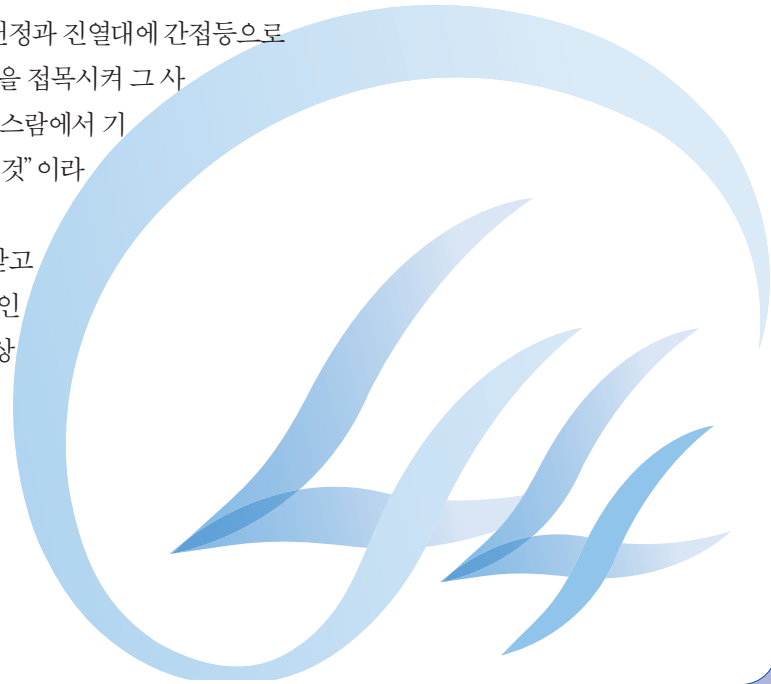
(주)필룩스의 슬림라인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존 일자형 형광등 등기구의 양측에 형광램프와 평행으로 “U”형의 보조튜브를 장착해, 이웃하는 등기

구와의 거리를 줄여 빛의 끊김 현상을 제거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하우스 내부에 안정기가 실장된 일체형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안정기, 하우스 및 램프를 각각 설치할 필요가 없어 시간절약과 유지보수가 용이하며, 등기구에 디밍 기술을 접목시켜 LED 램프로 대체할 경우, 전력의 소비량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노 대표는 “슬림라인 등기구는 현재 건물 천정과 진열대에 간접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필룩스가 개발한 디밍기술을 접목시켜 그 사용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다”며 “이는 독일 오스람에서 기술제휴 요청을 받을 만큼 기술성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현재 유럽에서 그 기술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이러한 조명기술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브랜드가 될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불평없이 살아가기

-삶의 기적을 이루는 21간의 도전

저자 윌 보웬 | 역자 김민아 | 출판사 세종서적

책소개

오프라 윈프리도 인정한 불평을 끊는 방법!

우리는 때때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불평하기를 일삼는다. 이 책은 우리가 무엇에 대해 불평을 하고, 왜 하는지, 또한 불평이 일상화된 삶은 얼마나 고달픈 것인지 설명한다. 이를 토대로 불평을 끊을 수 있는 간단한 원칙을 제시하여, 독자로 하여금 좀 더 즐겁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본문에서는 불평하지 않고 사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겪게 되는 네 가지 단계를 설명한다. 첫 번째는 의식을 하지 못하고 불평을 하는 상태이고, 두 번째는 의식을 하면서 불평을 하게 되는 단계이다. 이 단계를 거치면 스스로가 얼마나 자주 불평을 하는지 깨닫게 된다고 말한다. 세 번째는 의식하면서 불평을 하는 단계로, 자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인식하게 되어 좀더 긍정적인 단어들을 사용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마지막은 불평하지 않게 되는 것으로 전보다 풍만한 행복을 느끼게 되며, 나아가 주변 사람도 자신으로 인해 생기를 띄게 된다고 강조한다.

불평은 감정 표현이 담긴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습관화될 때, 불평 또한 습관이 된다고 조언한다. 이것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결국은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보라색 고무 밴드를 한쪽 손목에 끼우고 있다가 불평을 했을 경우, 다른 쪽 손목으로 옮기라고 제시한다. 21일 동안 불평을 참음으로써, 고무밴드를 다른 쪽으로 옮기지 않고 계속 유지하게 된다면 불평은 말끔히 사라질 것이라고 역설한다.

대학 지식의 파급을 통한 발명의 확산¹⁾



추기능

(현)해군사관학교 교수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BK21 연수연구원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박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석사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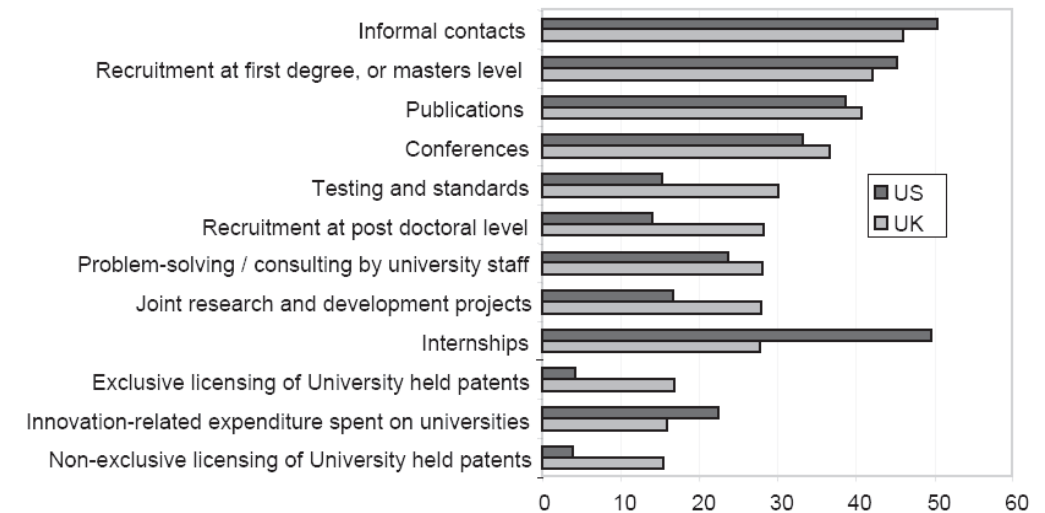
I. 대학-산업간 연계

혁신은 여러 행위자들과 기관들로 이루어진 커뮤니티에 의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이러한 커뮤니티를 혁신체제 (System of Innovation)라고 부른다. 혁신체제는 과학기술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업, 정부, 학계 간의 지식의 흐름과 관계로 표현될 수 있으며, 혁신체제 내 여러 주체들의 상호작용은 기업과 경제 전체의 혁신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OECD, 1996) 오늘날 기초연구와 응용연구 간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기는 하지만, 전통적으로 대학은 기초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새로운 과학적 지식의 주된 생산을 담당하고, 기업은 응용적이고, 상업적인 연구활동을 통해 시장화 가능성이 높은 지식인 기술의 생산을 담당한다고 여겨져 왔다. 대학과 기업은 혁신체제 내의 주요한 행위자들로 상호작용을 통해 혁신의 시너지 효과를

파를 누릴 수 있다. OECD 국가들은 과학적 지식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부문과 과학적 지식의 생산주체인 대학간 연계 수준을 높이는 정책을 펴고 있다(OECD, 1996). 대학-산업 간 협력은 대학이 창출한 과학적 지식을 효율적으로 상업화시킬 수 있게 하며, 산업에 의해 획득된 기술을 대학 연구자들이 습득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대학-산업 간 연계(university-industry linkage)는 지식흐름의 상승적 작용을 통해 혁신과정을 강화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기술혁신에 기여하는 대학과 산업 간의 연계방식은 다양하다. [그림 1]은 영국과 미국의 기업들이 다양한 대학-산업간 상호작용 채널들을 실제로 어느 정도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Hughes, 2006; Cosh, Hughes, and Lester 2005) 대학과 산업 간에 가능한 연계방식 중에서 비공식적 접촉이 많고, 그 다음으로 학사·석사 졸업자의 채용, 저서·논문 등의 활용, 학술회의

[그림 1] 대학과 산업 간 상호작용 유형(단위%)



자료: Cosh, Hughes, Lester(2005), Hughes(2006)에서 재인용

참석과 같은 전통적인 방식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미국 기업들은 영국 기업들과 달리 인턴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사 졸업자의 채용, 대학 교수들에 의한 기술적 문제 해결·컨설팅, 공동 R&D 등의 방법도 어느 정도 활용되는 상호작용 채널들이다. 대학보유 특허에 대해 기업이 통상실시권이나 전용실시권을 갖는 것은 그다지 선호되지 않는 방법이다. (Hughes, 2006; Cosh, Hughes, and Lester 2006) Hughes(2006)는 대학-산업 간 연계(university-industry linkage) 과정에서 대학의 역할을 4가지로 유형화하고 있다. 첫째, 학생들을 교육하여 기업부문에 인적 자원을 공급하는 가장 기초적인 역할이다. 둘째, 연구활동을 하고 코드화된 지식스톡을 증가시키는 역할이다. 셋째, 기업의 특정 기술적 요구에 대한 문제해결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넷째, 각종 비공식적 접촉 또는 학회 개최 등 공식적 회합을 통해 공적 영역(public space)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네 번째 기능을 통해 코드화된 지식뿐 아니라 암묵지도 전달할 수 있게 되며, 다른 3가지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하게 된다. (Hughes, 2006) 본 고에서는 대학의 지식이 기업으로 파급되는 메커니즘의 한 단면을 지도교수로부터 지도학생으로의 지식 전파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지도교수와 지도학생 간 지식이전이 일어나는 과정에는 위에서 언급한 4가지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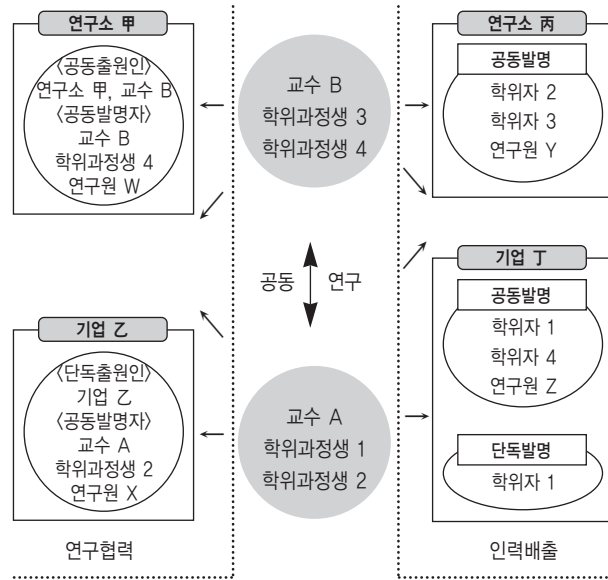
들이 내포되어 있을 것이다.

II. 지도교수-석박사과정생 간의 지식파급

[그림 2]는 대학지식이 기업이나 연구소로 파급되는 경로를 보여주고 있다. 대학의 지식은 기업·연구소와의 연구협력이나 학위자 배출을 통해 기업·연구소로 이전된다. 교수 A에게 학위과정생 1, 2가 지도를 받고 교수 B에게 학위과정생 3, 4가 지도를 받아 학위취득 후 각각 2, 3은 연구소 丙으로, 1, 4는 기업 丁으로 진출하여 발명을 하는 상황을 가정한다. 이들 중 학위과정생 2와 학위과정생 4는 이미 재학시절에 각각 연구소 甲, 기업 乙과의 공동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특허출원을 성사시키고 발명자로 이름을 올린 적이 있다. [그림 2]는 공동연구 결과를 특허출원함에 있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가능한 상황 중에서, 연구소 甲과 교수 B는 공동프로젝트 결과물인 특허를 공동출원한 경우를 예시하며, 기업 乙은 연구자금을 제공한 대가로 출원인을 기업명의로 하고 교수 A는 단지 발명자로만 기재된 경우를 예시한 것이다. 출원형태야 어떠하든 간에 상관 없이 학위과정생 2와 4는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교수로부터 코드화된 지식뿐 아니라 know-how 등 암묵적 지식을 전수받게 된다. 이들이 연구소 丙과 기업 丁

1) 이번 호 및 다음 호는 대학교수의 지식이 그 지도하에 있는 석박사 과정생을 통해 확산되는 과정을 특허자료를 통해 살펴본 것으로 한국발명진흥회 연구보고서인 '발명자의 지식재산 창출 실태 분석(추기능, 2008)'의 제 3장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참고문헌 및 전체 내용은 연구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그림 2] 대학지식의 파급경로



등으로 진출하게 되면서 스스로 취득 또는 지도교수로부터 이전 받은 코드화된 지식 및 암묵적 지식을 연구소나 기업으로 전파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본 고에서는 학위과정 재학 중에 지도교수와 함께 특허출원을 한 적이 있는 발명자의 지식이 기업, 연구소 등으로 파급된다는 전제 하에, 그러한 지식의 원천 및 특허 창출 실태를 세밀히 분석하기로 한다.²⁾

III. 지도교수-발명자 및 지도학생 -발명자 분석 결과

[표 1]은 특허를 출원할 가능성이 있는 전공분야 교수들을 각 학과별로 정리한 것이다. 소속학과는 자연과학계열 과 공학계열 모든 학과 및 인문사회계열 일부 학과가 그 대

상이다. 모든 전공분야의 교수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것은 동명이인이 발생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해서 총 1,021명의 교수가 선정되었다. 가장 교수 수가 많은 학과는 의학과로 255명의 교수가 포함돼 전체의 24.98%를 차지하며, 그 다음은 치의학과로 83명의 교수가 포함돼 8.13%를 차지했다. 지구환경시스템공학(지구환경 과학 포함)은 63명으로 전체의 6.17%, 전기·컴퓨터 공학 부는 48명으로 4.70%, 수의학과가 41명으로 4.02%를 차지 하고 있다.

[그림 3]은 1,021명의 교수의 나이별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50대 중반의 교수가 가장 많다.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그 전후 나이 대에 비해 교수 수가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행정상 주기적인 신규 교수 채용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 뒤의 [그림 5]에 서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발명자들

이 많이 소속되어 있는 전공분야에서는 주기적 임용에 영향을 덜 받은 듯하다. [그림 4]는 1,021명의 교수가 최종 학위를 취득한 연령 분포를 보여준다. 교수들은 30대 초~중반에 가장 많이 학위를 취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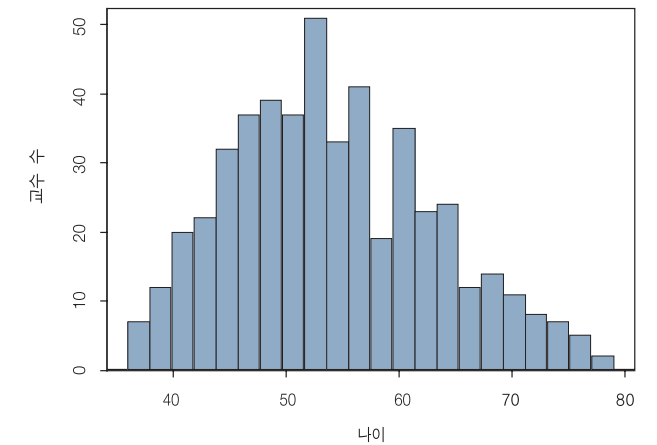
[그림 5]는 전체 1,021명의 교수 중에서 발명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적이 있는 491명의 교수를 대상으로 해서 나이 별로 분포를 살펴본 것이다. 발명자 교수의 나이는 40대 중반~60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두텁게 분포되어 있으며, [그림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교수 수가 특정 시간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적어지는 현상은 발견되지 않는다.

[표 1] 전공분야별 교수 수

순위	학과	교수 수 (명)	비율(%)	순위	학과	교수 수 (명)	비율(%)
1	의학	255	24.98%	23	농생물학	9	0.88%
2	치의학	83	8.13%	24	통계학	9	0.88%
3	전기.컴퓨터공학부	48	4.70%	25	환경보건학	9	0.88%
4	수리학	41	4.02%	26	응용화학	8	0.78%
5	물리학	36	3.53%	27	생물자원공학	7	0.69%
6	지구환경시스템공학	35	3.43%	28	식품영양학	7	0.69%
7	재료공학부	32	3.13%	29	동물자원과학	6	0.59%
8	화학	31	3.04%	30	물리교육	6	0.59%
9	지구환경과학부	28	2.74%	31	산림과학부	6	0.59%
10	농생명공학부	26	2.55%	32	원자핵공학	6	0.59%
11	약학	25	2.45%	33	의류학	6	0.59%
12	기계항공공학	23	2.25%	34	화학교육	6	0.59%
13	생명과학부	22	2.15%	35	수학	5	0.49%
14	제약학	17	1.67%	36	수학교육	5	0.49%
15	수리과학	14	1.37%	37	식물생산과학부	5	0.49%
16	화학생물공학부	14	1.37%	38	임산공학	5	0.49%
17	보건학	13	1.27%	39	지구과학교육	5	0.49%
18	전기공학부	12	1.18%	40	천문학	5	0.49%
19	조선해양공학	12	1.18%	41	환경조경학	4	0.39%
20	산업공학	10	0.98%	42	건축학과	4	0.39%
21	환경계획학	11	1.08%	43	조경학	4	0.39%
22	건축학	9	0.88%	44	컴퓨터공학부	4	0.39%
총계		1,021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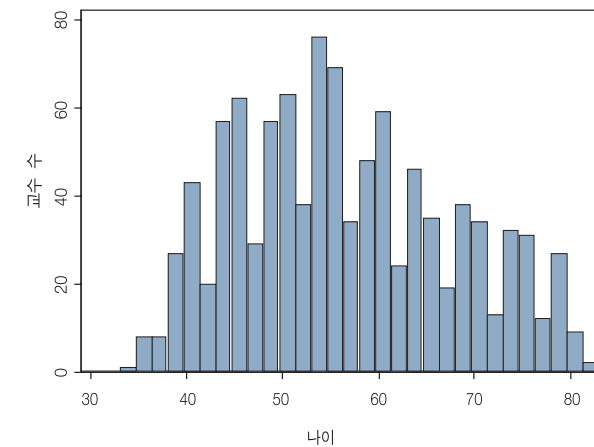
2) 본 장에서 사용된 자료는 서울대 교수 및 서울대 출신 석박사 학위자에 한정하여 이들에 관한 연구자 정보, 지도교수-지도학생 여부에 대한 정보, 특허출원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는 1992년 이후 서울대 석박사 취득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된 발명자인 교수는 총 491명, 지도학생과 공동발명을 한 적이 있는 교수는 총 251명, 학위과정중에 발명자로 참여한 학생 수는 총 1,154명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5] 발명자 교수의 나이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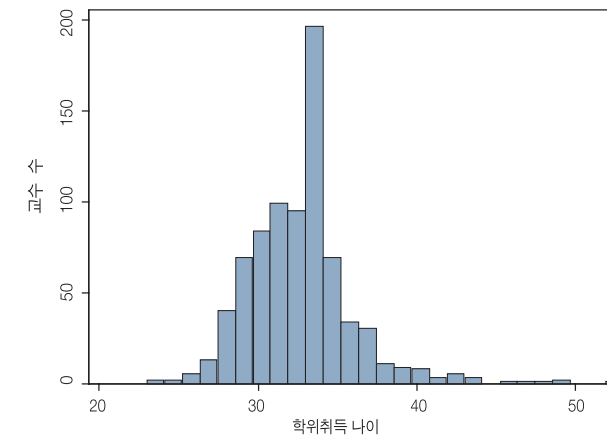


발명자 교수의 최종 학위취득 연령은 대부분 30대 초~30대 중반이다. (그림 6) [그림 4]와 비교해 볼 때 발명자 교수들의 학위취득 연령대가 훨씬 좁은 구간에 몰려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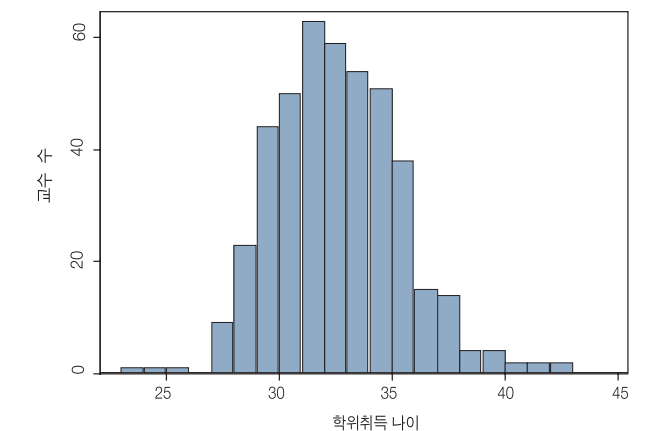
[그림 3] 분석대상 교수의 나이별 분포



[그림 4] 최종학위 취득 연령분포



[그림 6] 발명자 교수의 최종 학위취득 연령 분포



[표 3-2] 발명자 교수의 학과별 분포

순위	학과	교수 수 (명)	비율(%)	순위	학과	교수 수 (명)	비율(%)
1	의학	89	18.13%	21	식품생산과학부	4	0.81%
2	전기·컴퓨터공학부	44	8.96%	22	컴퓨터공학부	4	0.81%
3	치의학	35	7.13%	23	건축학	3	0.61%
4	재료공학부	31	6.31%	24	농생물학	3	0.61%
5	농생명공학부	24	4.89%	25	동물자원과학	3	0.61%
6	약학	22	4.48%	26	바이오시스템	3	0.61%
7	화학	19	3.87%	27	산업공학	3	0.61%
8	기계항공공학	19	3.87%	28	식품영양학	3	0.61%
9	수의학	18	3.67%	29	원자핵공학	3	0.61%
10	제약학	17	3.46%	30	건축학과	2	0.41%
11	생명과학부	16	3.26%	31	물리교육	2	0.41%
12	물리학	14	2.85%	32	섬유고분자공학	2	0.41%
13	화학생물공학부	13	2.65%	33	수리과학	2	0.41%
14	지구환경시스템공학	13	2.65%	34	식품공학	2	0.41%
15	전기공학부	11	2.24%	35	에너지시스템	2	0.41%
16	응용화학	7	1.43%	36	원예학	2	0.41%
17	지구환경과학부	7	1.43%	37	응용화학부	2	0.41%
18	조선해양공학	6	1.22%	38	임산공학	2	0.41%
19	생물자원과학	5	1.02%	39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2	0.41%
20	산림과학부	4	0.81%	40	건설환경공학부	1	0.20%
		총계				491	100.00%

[표 2]는 발명자 교수를 학과별로 정리한 것이다. 가장 많은 수의 발명자가 소속된 학과는 교수 수가 가장 많은 의학과로, 89명이 소속되어 전체 발명자의 18.13%를 차지한다. 의학과 교수 255명중에 89명이 발명자이므로 발명자 비율은 34.9%이다. 그 다음으로 발명자 교수 수가 많은 학과는 전기·컴퓨터공학부로 전체 발명자의 8.96%인 44명이 소속되어 있다. 전기·컴퓨터공학부 교수 48명중 44명이 발명자여서 발명자 비율은 91.7%에 이른다. 재료공학부는 32명의 교수 중 31명이 발명자이며, 농생명공학부도 26명 중 24명이 발명자일 정도로 발명자 비율이 높은 학과(부)이다.

[표 3]은 1,021명 전체 교수의 최종학위 출신대학원을 정리하고 있다. 서울대 교수를 배출한 대학원 수는 총 193개 교이며 서울대학교 출신이 423명으로 41.4%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대 박사 출신 교수의 절반 이상이 의학, 치의학, 약학 전공이다. 해외대학 출신으로는 MIT가 24명으로 가장 많고 미시간대와 콜로라도 광업대가 각각 16명으로 그 다음으로 많다. 일본의 동경대학 출신도 15명으로 해외대학 중에서 4번째로 많다. 서울대 외의 다른 국내 대학 출신으로는 고려대가 6명으로 가장 많고, 충남대와 KAIST가 각각 3명씩 배출하여 그 다음 순이다.³⁾

[표 4]는 발명자인 교수를 출신 대학원별로 정리한 것이다. 서울대학교 의학, 치의학과 출신이 85명으로 가장 많고, 전체의 17.56%를 차지하고 있으며, 발명자 비율은 37.0%이다. 서울대(관악캠퍼스) 출신은 69명으로 전체의 14.26%를 차지하며, 발명자 비율은 약 43.1%이다. 해외 대학중에서는 MIT 출신이 15명으로 가장 많으며, MIT의 발명자 비율은 62.5%로 서울대 출신보다 높다. 일리노이대

3) [표 3]에 나타나지 못한 국내 대학원 중 2명 이상의 서울대 교수를 배출한 대학원으로는 본문에 언급한 대학 외에 성균관대(2명), 전남대(2명), 이화여대(2명), 포항공대(2명)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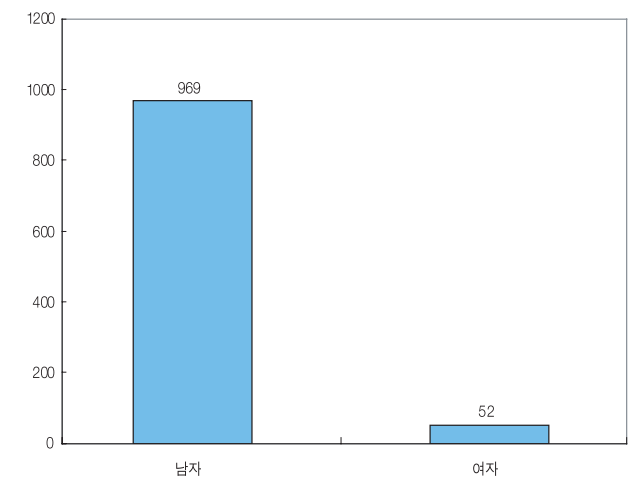
[표 3-3] 출신대학원별 교수 수

순위	대학원명	인원 (명)	구성비 (%)	순위	대학원명	인원 (명)	구성비 (%)
1	서울대학교(연건캠퍼스)	230	22.53%	32	Univ. of California, Los Angeles	6	0.59%
2	서울대학교	160	15.67%	33	고려대학교	6	0.59%
3	서울대학교(수원캠퍼스)	33	3.23%	34	Oregon State Univ.	5	0.49%
4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24	2.35%	35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4	0.39%
5	Colorado School of Mines.	16	1.57%	36	Indiana University at Bloomington	4	0.39%
6	Univ. of Michigan	16	1.57%	37	Texas A&M University	4	0.39%
7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 - Champaign	15	1.47%	38	Univ. of California at San Diego	4	0.39%
8	東京大學	15	1.47%	39	Univ. of Delaware	4	0.39%
9	Purdue Univ.	14	1.37%	40	Univ. of Iowa	4	0.39%
10	University of Wisconsin - Madison	14	1.37%	41	Univ. of Massachusetts at Amherst	4	0.39%
11	Univ. of Minnesota	12	1.18%	42	Univ. of Southern California	4	0.39%
12	Stanford University	11	1.08%	43	University of Utah	4	0.39%
13	Univ. of California at Berkeley	11	1.08%	44	Yale Univ.	4	0.39%
14	University of Washington	11	1.08%	45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3	0.29%
15	Harvard University	10	0.98%	46	Florida State University	3	0.29%
16	Pennsylvania State Univ.	10	0.98%	47	Louisiana State Univ. Agricultural and Mechanical College	3	0.29%
17	Iowa State Univ.	9	0.88%	48	Rensselaer Polytechnic Institute	3	0.29%
18	Brown Univ.	8	0.78%	49	The University of Georgia	3	0.29%
19	Northwestern University	8	0.78%	50	Univ. of Arizona	3	0.29%
20	Princeton Univ.	8	0.78%	51	Univ. of Illinois at Chicago	3	0.29%
21	Univ. of Maryland at College Park	8	0.78%	52	Univ.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3	0.29%
22	Johns Hopkins Univ.	7	0.69%	53	Univ. of Pittsburgh	3	0.29%
23	The Ohio State Univ.	7	0.69%	54	Univ. of Tennessee - Knoxville	3	0.29%
24	Univ. of Chicago	7	0.69%	55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3	0.29%
25	Univ. of Pennsylvania	7	0.69%	56	University of Sydney	3	0.29%
26	Univ. of Texas at Austin	7	0.69%	57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 State Univ.	3	0.29%
27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7	0.69%	58	Westminster Choir College	3	0.29%
28	Columbia Univ.	6	0.59%	59	충남대학교	3	0.29%
29	Cornell Univ.	6	0.59%	60	한국과학기술원	3	0.29%
30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6	0.59%	61	北海道大學	3	0.29%
31	Texas A & M Univ.	6	0.59%	62	Arizona State Univ.	2	0.20%

(UIUC)는 출신 교수 15명 중 13명이 발명자여서 발명자 비율이 86.7%에 이른다.

전체 교수의 남녀 성비를 보면 남자가 969명, 여자가 52명으로 여자 교수의 비율은 5.1%에 불과하다.(그림 7) EU15개국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 연구자의 비율이 과학분야 23%, 공학분야 12%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Giuri and others, 2007) 발명자 교수의 경우 남자가 471명, 여자가 20명이어서 여자 발명자 교수의 비율은 4.1%이다.(그림 8) 이러한 수치는 EU6개국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여성 발명자의 비율이 2.8%에 불과했던 것에 비교하면 낮은 수치는 아니다.(Giuri and others, 2007)

[그림 7] 교수의 남녀 구성



[표 4] 출신 대학원별 발명자 교수 수

순위	대학원명	인원(명)	구성비(%)	순위	대학원명	인원(명)	구성비(%)
1	서울대학교(연건캠퍼스)	85	17.56%	33	Texas A & M Univ.	3	0.62%
2	서울대학교	69	14.26%	34	The University of Georgia	3	0.62%
3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	15	3.10%	35	Univ. of Illinois at Chicago	3	0.62%
4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 - Champaign	13	2.69%	36	Univ. of Southern California	3	0.62%
5	Univ. of Michigan	12	2.48%	37	University of Utah	3	0.62%
6	University of Wisconsin - Madison	10	2.07%	38	Westminster Choir College	3	0.62%
7	서울대학교(수원캠퍼스)	10	2.07%	39	한국과학기술원	3	0.62%
8	Purdue Univ.	9	1.86%	40	Arizona State Univ.	2	0.41%
9	東京大學	9	1.86%	41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2	0.41%
10	Brown Univ.	8	1.65%	42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2	0.41%
11	Univ. of Minnesota	8	1.65%	43	Johns Hopkins Univ.	2	0.41%
12	Univ. of California at Berkeley	7	1.45%	44	Polytechnic Institute	2	0.41%
13	Northwestern University	6	1.24%	45	Rensselaer Polytechnic Institute	2	0.41%
14	Pennsylvania State Univ.	6	1.24%	46	Rheinisch - Westfaelische Technische Hochschule Aachen	2	0.41%
15	Stanford University	6	1.24%	47	Rutgers the State Univ. of New Jersey - New Brunswick	2	0.41%
16	The Ohio State Univ.	6	1.24%	48	Texas A&M University	2	0.41%
17	Cornell Univ.	5	1.03%	49	Univ. Stuttgart	2	0.41%
18	Iowa State Univ.	5	1.03%	50	Univ. of Arizona	2	0.41%
19	Univ. of Maryland at College Park	5	1.03%	51	Univ. of California at Riverside	2	0.41%
20	Univ. of Texas at Austin	5	1.03%	52	Univ. of Delaware	2	0.41%
21	Columbia Univ.	4	0.83%	53	Univ. of Iowa	2	0.41%
22	Harvard University	4	0.83%	54	Univ. of Maryland	2	0.41%
23	Princeton Univ.	4	0.83%	55	Univ. of Missouri-, Columbia	2	0.41%
24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4	0.83%	56	Univ. of Tennessee - Knoxville	2	0.41%
25	Univ. of California at San Diego	4	0.83%	57	Universitaet Karlsruhe	2	0.41%
26	Univ. of California, Los Angeles	4	0.83%	58	University of Florida	2	0.41%
27	Univ. of Chicago	4	0.83%	59	University of Houston	2	0.41%
28	Univ. of Massachusetts at Amherst	4	0.83%	60	University of London	2	0.41%
29	Univ. of Pennsylvania	4	0.83%	61	Vanderbilt Univ.	2	0.41%
30	University of Washington	4	0.83%	62	충남대학교	2	0.41%
31	Louisiana State Univ. Agricultural and Mechanical College	3	0.62%	63	포항공과대학교	2	0.41%
32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3	0.62%	64	大阪大學	2	0.41%

[표 5] 교수의 최종학위 취득국가

국가	인원(명)	비율(%)
대한민국	458	46.17%
미국	440	44.35%
일본	43	4.33%
독일	19	1.92%
영국	10	1.01%
캐나다	9	0.91%
프랑스	7	0.71%
오스트레일리아	5	0.50%
벨기에	1	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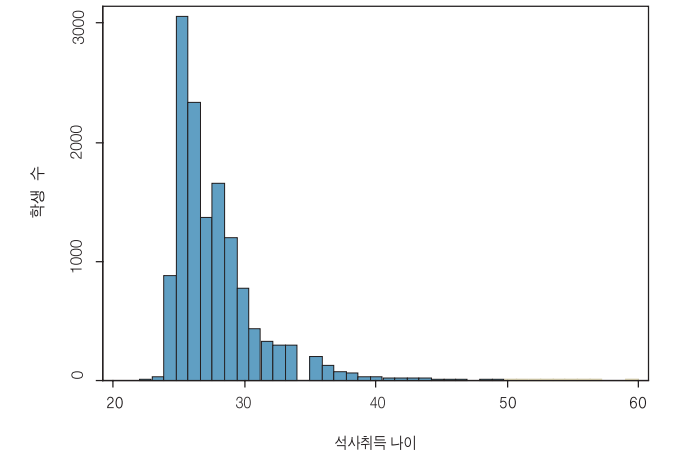
[표 6] 발명자 교수의 최종학위 취득국가

국가	인원(명)	비율(%)
미국	259	53.18%
대한민국	175	35.93%
일본	22	4.52%
독일	16	3.29%
영국	5	1.03%
캐나다	4	0.82%
프랑스	3	0.62%
호주	3	0.62%

에 소속된 학과들이다. 박사를 가장 많이 배출한 교수가 소속된 학과는 재료공학부, 응용화학, 기계항공, 전기·컴퓨터공학 등 공학계열이다.

[그림 9] 석사학위 취득 시의 나이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25세 정도에 가장 많이 석사 학위를 취득하며 20대 중반~후반에 취득 연령이 집중되어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박사 학위는 20대 후반부터 취득하기 시작해 취득 연령이 30대 초~중반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취득 연령대가 석사학위보다 넓게 분포되어 있다.(그림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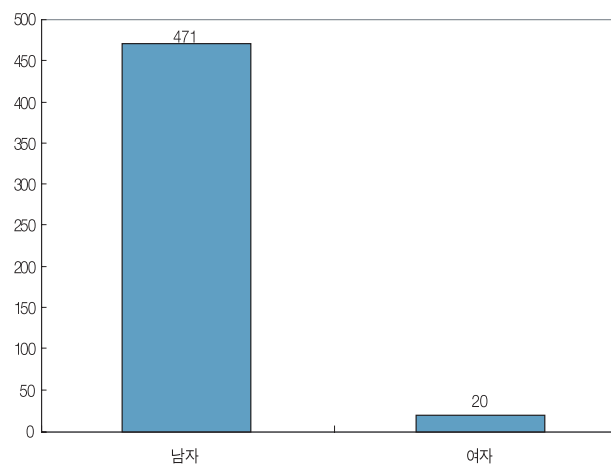
[그림 9] 석사과정생의 학위취득 나이 분포



[표 6]은 1,021명의 교수 가운데 석·박사 배출이 가장 많은 순으로 상위 11명을 정리한 것이다. 한 명의 지도교수에 게서 배출된 석사 수로는 108명이 가장 많고, 박사 수로는 36명이 가장 많다. 가장 많은 석사를 배출한 교수가 소속된 학과는 환경계획, 환경보건, 환경조경 등 주로 환경대학원

[그림 11]은 석사과정생이 학위를 취득할 때의 지도교수 나이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각 석사과정생이 학위를 취득할 때의 지도교수 나이를 확인하고 이를 모두 모아서 분포

[그림 8] 발명자 교수의 남녀 구성



[표 5]는 1,021명의 교수들의 최종학위 취득국가를 보여주고 있다. 국내 박사가 46.17%, 미국 박사가 44.35%, 일본 박사가 4.33%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상장기업 임원의 국내-미국 박사 비율과 비슷한 수치이다. 서울대 교수가 최종 학위를 취득한 대학원의 소재 국가 수는 8개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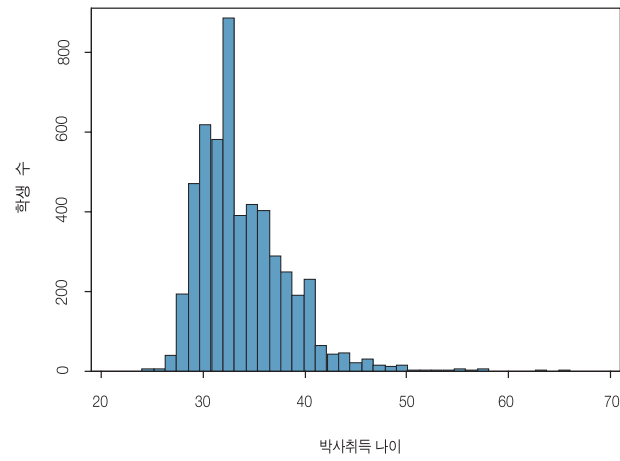
발명자 교수 중에서 미국 박사의 비율은 53.18%, 국내 박사는 35.93%로 미국 박사 비율이 더 높다(표 6). 독일 박사는 19명 가운데 16명이 발명자여서 발명자 교수의 비율이 84.2%에 달한다. 이는 미국이나 독일 등 선진국에서 유학한 교수들을 통해 해외지식이 국내로 이전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표 7] 석·박사 배출 상위 교수의 학과 분포

순위	석사			박사			전체		
	교수 ID	배출 인원	학과	교수 ID	배출 인원	학과	교수 ID	배출 인원	학과
1	가	108	환경계획학	A	36	재료공학부	가	122	환경계획학
2	나	77	환경보건학	B	33	재료공학부	라	94	건축학
3	다	76	환경계획학	C	32	전기공학부	다	88	환경계획학
4	라	74	건축학	D	30	응용화학부	아	87	재료공학부
5	마	74	환경보건학	E	30	기계항공공학	나	86	환경보건학
6	바	70	환경조경학	G	28	전기, 컴퓨터공학부	아	86	건축학
7	사	69	건축학	H	26	전기, 컴퓨터공학부	마	85	환경보건학
8	아	69	건축학	I	26	전자공학	D	85	응용화학부
9	자	67	환경조경학	J	25	재료공학부	C	83	전기공학부
10	차	65	보건학	K	24	치의학	E	83	기계항공공학
11	카	63	환경계획학	L	24	전기, 컴퓨터공학부	사	81	건축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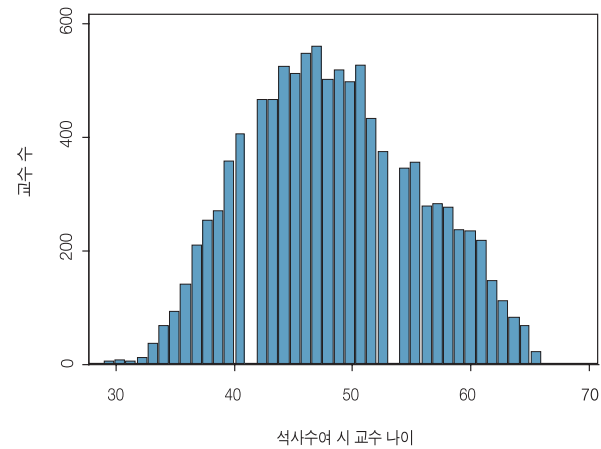
주: 교수 ID가 동일하면 동일인임을 의미한다.

[그림 10] 박사과정생의 학위취득 나이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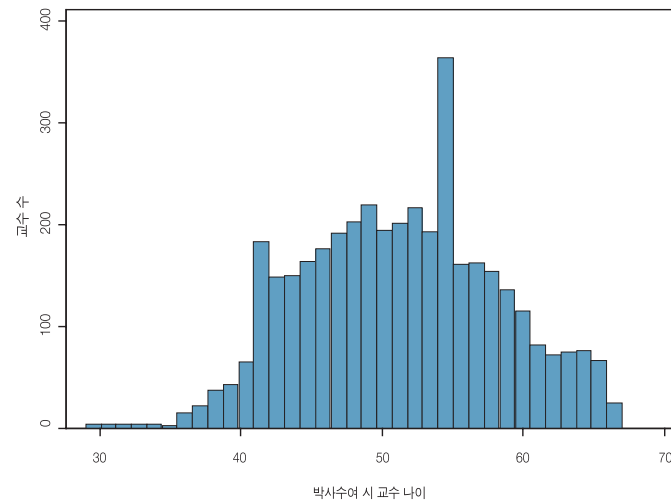
도를 그린 것이다. 40대초~50대초에 걸쳐 활발하게 석사 학위자를 배출하고 있으며, 가장 왕성한 나이인 40대 중후반을 중심으로 좌우가 대략 대칭인 형태를 띠고 있다.

[그림 11] 석사학위 수여 시 지도교수의 나이 분포



[그림 12]는 박사학위자를 배출할 때의 지도교수의 나이 분포도이다. 박사학위를 많이 배출하는 연령대는 40대초~60대초에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특히 많은 학위자를 배출한 연령대는 50대 중반이었다.

[그림 12] 박사학위 수여 시 지도교수의 나이 분포



(다음호에서 계속: 발명자인 교수 491명 가운데 자신의 석박사 학위과정생이 공동발명자로 기재되어 있는 교수 수는 총 251명이며, 이들 지도교수와 함께 공동발명자로 특허문헌에 등재된 지도학생수는 총 1,154명이다. 다음 호에서는 발명자인 교수의 지식이 석박사 학위과정생을 통해 확산되는 과정을 특허자료를 가지고 살펴보기로 한다.)

발명특허 2009. 6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 [지재권일반]

1998년 6월 미국 정부에서 발간한(인터넷의 주소의 운영에 관한 백서)에 의해 그 해 11월 탄생한 비영리 국제기구로, 인터넷상에서의 도메인 이름과 IP 주소, 프로토콜의 범주와 포트번호를 할당하는 업무를 담당. 또한 유명 상표권에 대한 도용 분쟁을 해결하고, 새로운 최상위도메인을 인가하기도 함.

국제예비심사청구 [특허]

국제예비심사는 국제출원의 필수적 절차가 아니라 출원인이 선택할 수 있는 절차로 국제출원서의 제출과는 별도로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청구서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국제예비심사보고서 [특허]

국제예비심사보고서는 국제출원에 대하여 국제예비심사기관이 국제조사기관이 발견한 선행기술을 참고하여 심사를 수행하여 당해 국제출원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청구항이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기준을 충족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한 보고서.

국가의 지정(PCT) [특허]

PCT 출원서의 제출은 국제출원일에 조약에 구속되는 모든 계약국의 지정을 구성함. 다만, 한국, 독일, 러시아의 경우 “자기지정”과 관련하여 별도로 그 지정여부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가기술정보서비스센터 [지재권일반]

연방지원 연구개발에 따른 학술적, 기술적, 공학적 정보에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연구결과의 유통기능을 수행하는 미국의 기술정보기구로 NTIS는 연구결과를 대학, 민간부분,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확산시킴으로써 연방지원 연구결과의 광범위한 이용을 촉진하고 있음.

국가관할권 [법일반]

한 국가가 사람, 물건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총체.



새로 도입된 재심사제도와 직권보정제도

이수웅 변리사

현 특허법인 로알 대표변리사
 국민대학 법과대학 겸임교수
 대한변리사회 회장 역임
 평화통일 자문회의 상임위원 역임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회장 역임

제1. 재심사청구제도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

1. 의의

재심사청구제도는 2009년 1월 3일자 개정법에 의해 도입된 제도이다.

(특허법 67의 2, 1항)

재심사청구는 특허출원인이 특허청으로부터 특허출원거절결정등본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명세서나 도면을 정정하여 거절 받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다시 심사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종래의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후 30일 이내에 명세서나 도면을 보정한 경우의 심사전치제도를 폐지한 후 새로이 도입된 제도이다.

2. 제도적 취지

① 심사촉진 : 이 제도는 종래의 심사전치주의에 대체된 제도로서 거절불복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특허출원인이 즉시 거절한 원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를 요청하는 것이므로 심사를 촉진시킬 수 있다.

② 권리취득용이 : 종래의 특허출원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기 때문에 심사촉진과 더불어 권리취득이 용이하다.

③ 거절불복심판청구사건 증가 억제 : 이 제도는 거절한 원심사관에게 즉시 재심사를 청구하는 재도이므로 거절불복심판청구사건을 줄이므로 심판사건의 신속처리를 기할 수 있다.

3. 재심사청구의 요건

① 청구시기 : 이 청구는 특허청으로부터 거절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출원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특허법 132의3) 이 법 제 15조 제 1항에 따라 연장된 경우에는 그기간 내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특허법 67의21항)

② 명세서나 도면에 관한 보정서 제출: 특허청에 재심사청구를 할 때에는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보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의 보정은 법 제 47조에 따른 보정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즉 발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4. 적용대상 예외

① 재심사에 의해 거절결정된 경우 : 이 제도는 재심사 청구 후 다시 특허청으로부터 특허출원거절결정이 있는 경우 재심사 청구할 수 없다.(특허법 67의21항)
 이 경우는 다시 심사청구하여 거절결정을 받은 사건을 또다시 재심사 청구를 금지하여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기함과 동시에 다른 심사사건의 심사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② 특허출원거절결정 불복심판청구의 경우 : 이 경우는 특허출원거절결정 후에 재심사 청구와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중 어느 한쪽만을 이용하도록 하여 심사절차의 중복을 피하고, 나아가 심사, 심판 절차의 촉진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5. 재심사 청구의 효과

① 원 거절결정의 취소간주 : 재심사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원 특허출원에 대하여 종전에 취해진 특허출원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특허법 67의2,2항) 따라서 재심사청구 결과

에 따른 새로운 특허여부 결정이 가능하게 된다.

② 재심사청구의 취하금지 : 재심사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특허법 67의2,2항) 이는 심사절차의 낭비제거를 위함이다. 따라서 특허거절결정을 받은 출원인은 재심사청구하기전에 재심사청구를 할 것인가 또는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를 할 것인가를 신중히 판단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③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 재심사청구 후 다시 거절결정되면 특허심판원에 거절 결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6. 종래의 심사전치제도와 비교

종래에는 특허출원인이 특허청으로부터 특허출원거절결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심판원에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나 도면을 보정하면 특허심판원에서는 심판절차(심판사건번호부여 및 해당 심판관 지정)를 거치지 아니하고 심사본부에서 심사했던 원 심사관에게 이송하여 다시 심사하도록 하고 원 심사관이 심사한 결과 거절 이유가 해소된 때에는 특허거절결정을 취소하고 특허결정을 하여야 한다.(구 특허법 175조1항) 이 경우 특허거절결정의 심판청구는 소멸된 것으로 본다.(동항)

또 심사관은 구법 제 173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결과 특허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시 특허거절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그 심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특허청장은 이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동 2항)

이와 같이 종래의 심사전치제도에서는 여러 단계를 거쳐 재심사하여 특허여부 여부를 결정하였으나 이번 새로이 도입된 재심사청구는 여러 단계를 생략하고 곧바로 원 심사했던 심사관에게 재심사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심사절차의 간소화로 인한 권리취득을 용이하게 한 것이다.

제2. 심사관의 직권보정제도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

1. 의의

심사관의 직권보정제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에 명백한 오기, 탈자 기타 잘못 기재된 내용이 있

으면 특허청 심사관이 직권으로 보정할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특허법 66조의 2,1항)

종래까지는 특허출원서의 명세서, 도면 및 요약서 등에 명백한 오기나 탈자 등 잘못 기재된 내용이 있으면 특허청 심사관은 특허출원인에게 의견서 제출통지서(즉 거절이유통지서)를 통지하여 출원인으로 하여금 직접 의견서와 명세서 및 도면 등을 보정하게 하였다.

2. 제도적 취지

1) 심사절차의 신속도모 : 이 심사관의 직권보정제도는 명백한 오기, 탈자 등 잘못 기재된 내용을 특허출원인에게 거절이유통지서를 보내고, 특허출원인이 의견서와 동시에 보정서를 제출하게 하면 심사절차의 지연은 물론 심사절차의 복잡을 야기하게 되므로 이 제도는 심사절차의 신속화, 심사기간의 단축을 도모할 수 있다.

2) 특허출원인의 경제적 이익도모 : 이 심사관의 직권보정제도 도입으로 간단한 오자, 탈자 등 명백히 잘못 기재된 내용인데도 이에 대하여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하게 하면 심사지연 등으로 인해 출원인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가져오는 폐단이 있으나 이 제도의 도입으로 출원인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

3) 권리취득용이 : 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명백한 오기 등을 심사관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심사기간이 단축되어 권리 취득기간이 단축되고 용이하여 출원인에게 유익한 제도이다.

3. 심사관의 직권보정사항

심사관이 특허출원서상의 명세서, 도면 및 요약서 등을 직권으로 보정하려면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여야 한다.

-명백한 오자, 탈자

-명백한 잘못 기재된 내용

이 경우는 애매모호한 내용이라 할 수 있으나 명백한 잘못 기재된 내용이여야 한다. 즉, 명백한, 불명료한 내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4. 특허출원인에게 고지

심사관이 직권보정을 하려면 법 제67조2항에 따른 특허

결정등본송달과 함께 그 직권보정사항을 알려야 한다. (특허법66조의2,2항)

이는 직접 이해관계에 있는 특허출원인에게 알림으로서 출원인에게 불이익을 가져오지 않기 위함이다.

5. 특허출원인이 직권보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특허출원인은 심사관의 직권보정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드릴 수 없는 경우 특허법 제79조 제1항에 의거 특허료를 납부할 때까지 그 직권보정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동3항)

특허출원인이 특허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그 해당 직권보정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동4항)

심사관은 직권보정사항에 대해 출원인의 의견서를 접수하면 이를 수용할 것이고 달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6. 잘못 기재된 것이 아닌 내용이 직권보정된 경우

심사관의 직권 보정사항이 명백히 잘못 기재된 것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직권보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동5항)

이는 특허출원인이 특허청심사관으로부터 직권보정사항 통보를 받아보고 이에 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명백히 잘못 기재된 것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직권보정사항이 이루어진 경우 그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함으로써 출원인에게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발명특허 2009. 6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uestion 영문으로 된 등록증이나 등록원부의 발급이 가능합니까?

Answer

- 2006년 5월 1일부터 특허등록증 및 실용신안등록증에 한하여 영문등록증이 발급이 되고 있으나 디자인등록증 및 등록원부는 발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문등록증이 필요하면 번역 후 공증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Question 등록공고란 무엇입니까?

Answer

- 등록공고란 심사를 거쳐 디자인등록결정을 받고 등록료를 납부하여 디자인권이 설정등록 된 이후에 이루어진 디자인의 내용을 공보에 게재하여 공중에게 공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39조 3항)
디자인심사등록출원,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 모두 설정등록 후에 등록공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고제도의 취지는 등록된 디자인의 내용을 공개하여 그 권리내용을 공시하여, 타인의 중복투자를 방지함과 아울러 디자인문헌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의 경우에는 설정등록일로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 일반공중으로 하여금 이의신청을 통한 공중심사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부실권리를 조기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Question 디자인설정등록 후 등록공고일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어느 정도 인가요?

Answer

- 디자인설정등록 후 등록공고일까지 약 일주일정도 소요됩니다.

Question 등록공보의 내용을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지요?

Answer

- 디자인설정등록 이후에 인터넷을 통하여 공고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등록된 디자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1년 7월 2일부터는 인터넷공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공보로 게재된 공보는 권리별 이의신청 기간동안만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한국특허정보원(www.kipris.or.kr)을 통하여 검색 및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공보열람방법은 “특허청홈페이지(www.kipo.go.kr) → 정보광장 → 인터넷공보 → 디자인” 화면에서 나타난 검색항목 등을 이용하여 검색하시면 됩니다.

출처 특허청 홈페이지



중국특허(전리)분쟁지도

[연재 일정 안내]	
연 재	목 차
2009. 1월호	보고서 작성의 배경 및 목적
2009. 2월호	중국의 전리제도
2009. 3월호	중국의 상표제도
2009. 4월호	기타 지적재산권 관련 제도
2009. 5월호	중국 전리분쟁의 판례동향
2009. 6월호	중국 전리분쟁의 판례분석

* 상기 연재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e특허나라(www.patentmap.or.kr)에서 전체 본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중국 전리분쟁의 판례분석

주요판례 심층 분석 - 사례

가. 판결 요지

사건번호	(2005)民三提字第1号	판결일자	2005. 8. 22.
원고	대련인달신형장체 (大连仁达新型墙)건축재창	피고	대련신익건재 (大连新益建材)유한공사
원고대리인	북경시립방(立方)올사사무소	피고대리인	대련지혜(智慧)전리사무소
전리종류	발명	전리번호	ZL98231113.3
1심승패	원고 승소	전리법조항	전리법 제56조
소송결과	피고 승소	법원/주심	최고인민법원/王永昌

나. 주요 쟁점

다여지정원칙이 침해소송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인지 여부 및 균등론의 판단기준이 “각 요소의 비교방법”에 의거하는지 여부

다. 사실 관계

원고 인달창은 실용신안권을 가지고 있는 왕모씨로부터 콘크리트 박벽통체 부재에 관한 독점적 실시권의 허락을 받은 후 실용신안권의 기재와 구성요소의 일부가 다른 제품을 판매하는 신익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사죄광고를 요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1심 및 2심 판결에서 인달창이 승소했다. 피고(신청인) 신익공사는 2심판결에 불복하여 최고인민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라. 소송 경과

본 사안에 있어서 실용신안권과 본건 제품은 ① “통체부”와 “통저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② 실용신안권의 통체부에는 2개층의 유리섬유포를 적층하게 되어 있는데 반해, 본건 제품은 1개층의 유리섬유포를 적용하고 있고, ③ 실용신안권의 통저부에는 유리섬유포가 적용되어 있는데 반해, 본건 제품의 통저부에는 유리섬유포가 적용되어 있지 않다는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하여, 1심 법원(대련시 중급인민법원)은 ① “통저부”는 “통체부”에 비해 부차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구성요소라는 전제하에, ② 통저부에 있어서 유리섬유포가 적용되어 있지 않다는 본건 제품의 차이점을 주목하기 보다는, 양 기술 모두 통체부에 유리섬유포를 적용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여기서 유리섬유포가 1개층인지 2개층인지 여부는 단순한 숫자의 차이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신익공사는 손해배상 및 사죄광고를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하였고, 2심 법원(요녕성 고급인민법원) 역시 위와 같은 1심 판결을 지지하는 판결을 하였다.

마. 상소심 판결요지

원심 판결은 “통저부가 통체부의 부차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통저부의 층구조가 청구범위에 명확하게 기재된 이상 “다여지정원칙”을 경솔하게 적용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았다.

그런데 양 기술의 통저부 구조는 유리 섬유포를 포함하는지 여부의 차이가 있고, 권리요구서와 설명의 기재된 한정조건을 감안할 때, 통체부 역시 유리 섬유포가 2개인지 1개인지 여부의 차이까지 존재한다.

따라서 원심 판결은 법률 적용을 잘못하여 균등 침해를 인정하는 오류를 범하였으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바. History map

(2005) 民三提字 第1号	최고인민법원	원심파기
(2004) 遼民四知終字 第67号	요녕성(遼寧省) 고급인민법원	전리침해
(2003) 大民知初字 第25号	대련시(大連市) 중급인민법원	전리침해

사. 결론 및 시사점

침해판정에 있어 “다여지정원칙”의 적용에 대하여 중국에서는 이론과 실무에 있어서 계속 논쟁이 되어 왔는데, 이 사건에서 최고인민법원은 최초로 다여지정원칙의 적용을 기본적으로 부정하는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최고인민법원은 다여지정원칙의 적용을 근본적으로 부정하지 않았고, 어떤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다여지정원칙이 어떻게 운용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 판결은 균등론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전체적 효과를 분석하는 방법” 대신에 “각 요소를 비교하는 방법”을 채택함으로써, 균등론이 무분별하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므로, 청구범위의 작성에는 이전보다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발명특허 2009.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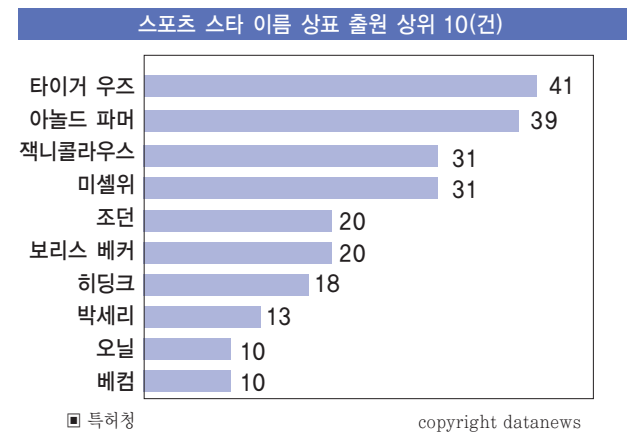
Tiger Woods 상표 사례

법무법인 다래 / 이인중 변호사

‘TIGER WOODS’ 하면 제일 먼저 무엇이 생각날까? 아마도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은 그가 골프를 치는 사람이든 치지 않는 사람이든 ‘TIGER WOODS’ 라고 하면 ‘골프황제’ 로 불리고 있는 미국의 골프선수인 ‘TIGER WOODS’ 를 떠올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생각이 ‘골프의 천재’ 라는 생각일 것이고 골프를 무척이나 잘 친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그 만큼 골프선수인 ‘TIGER WOODS’ 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골프와 관련하여 좋은 모습으로 다가와 있다.

그러므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유명한 스포츠 스타인 ‘TIGER WOODS’ 라는 이름을 내세워 ‘골프용품점’ 이나 ‘골프교실’ 등을 운영한다면, 사업이 잘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미국의 ‘TIGER WOODS Enterprise S. A’ 사는 국내에서 상표 ‘TIGER WOODS’ 를 상표출원을 하였는데, 현재 출원공고이며 아마도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TIGER WOODS’ 에 못지 않게 우리나라의 스포츠 스타도 많은데, 이들의 이름으로 상표출원을 하면 어떨까?



이와 관련하여 상표법은 제7조 제1항 제6호에서 “타인의 유명한 성명, 명칭 또는 상호, 초상, 서명, 인장, 아호, 예명, 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하고 있어,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타인이 유명한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 등의 성명이나 명칭, 초상 또는 예명을 상표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이 자기의 이름이나 예명을 직접 상표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이 가능하며 그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도 등록이 가능하다. 그리고 유명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은 대부분 연예기획사(엔터테인먼트)에 소속되어 있는데, 이들 연예기획사는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의 이름이나 예명의 사용과 관련하여 계약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들이 출원하는 경우에도 상표등록이 가능하다.

국내 유명한 스포츠 스타의 이름을 상표로 하여 상표등록 출원한 예가 그리 많지는 않지만, 그 예를 찾아보면, 박찬호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타인이 “박찬호 야구클럽” 이라는 상표를 ‘야구공, 야구용 배트, 마스크트 인형’ 등에 사용하려고 상표출원한 바 있으나 등록이 거절되었으며, 박찬호 선수가 아닌 박찬호라는 사람이 “박찬호 감자탕” 이라는 상표를 간식당등에 사용하려고 출원한 바 있으나 역시 거절되었다.

그 외에도 타인이 야구선수 ‘이승엽’ 의 이름과 같은 상표 “이승엽” 을 의류판매대행업 등에 사용하려고 상표출원하였으나 거절되었으며, 축구선수 ‘박지성’ 선수가 자기의 이름을 딴 “박지성 축구교실” 을 상표로 출원하여 심사대기 중인데 상표등록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된다.

‘본 사례는 지식재산경영(2008) 저서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발명특허 2009. 6

해피 CEO 인터뷰	42
특허기술 평가결과 활용사례 (주)엠스코	44
우표로 본 인물과 역사	49
발명칼럼 21세기 기업에 필요한 지식재산 인재	50
지식재산강의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54
문화산책	80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토목시장의 선두주자를 꿈꾼다!

평산에스아이(주) 이종화 대표이사

바람에 많이 흔들리는 나무의 뿌리가 튼튼하듯 치열해지는 경쟁 환경 속에서 그 어느 기업보다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추구해 온 평산에스아이(주)의 이종화 대표이사를 만나보자



평산에스아이(주) 이종화 대표이사

제44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의 산업포장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수상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뜻깊은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산업포장이라는 큰 상을 받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임직원 여러분들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이며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산에스아이(주)의 중점 사업은 무엇입니까?

특허기술을 이용하여 생산된 파형강관을 이용하여 동물이동터널, 소교량, 고속도로의 통로나수로 구조물 및 빗물저류시설 등의 토목 구조물의 건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서는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파형강관을 97년 중앙고속도로에 성공적으로 시공하셨는데, 발명동기 및 발명과정에 어떤 노력들이 있었습니까?

한국은 통수로 및 터널 등의 일반 지중구조물 시공에 일반적으로 철근콘크리트를 이용한 구조물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며 이로 인하여 공사비 증가, 천연골재의 과다 사용에 따른 자연파괴 및 공사기간 증가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의 토목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해외의 선진국에서 많이 적용하고 있는 파형강관 구조물의 적용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파형강관의 제작방법이 난해하고 설계할 수



국지도57호선

있는 기술력이 전무하였습니다. 평산에스아이는 기존에 해외에서 적용하는 타격식에 의한 파형강관 제작방법을 롤러에 의한 파형강관 제작방법으로 기술개발을 하였으며 산학

연과의 지속적인 공동연구를 통하여 국내실정에 맞는 설계법과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평산에스아이(주)는 연구개발로 우수한 제품 및 구조물로 인식되어 현재까지 국내에 많은 시공실적과 해외수출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공사례를 소개해주시시오.

질의하신 것과 같이 본 제품은 철근콘크리트와 대비할 경우 30%의 공사비 절감 및 공사기간은 최대 50% 정도 단축이 가능합니다. 현재까지 1,900여 개소를 국내에 적용하면서 570억 원의 국가예산절감에 크게 기여 하였습니다. 따라서 건설공사의 원가절감을 추진하는 정부의 정책에 부합하여 많은 토목공사 현장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지며 아래와 같은 시공사례가 있습니다. 홍천대명비발디와 김포장기지구는 생태이동통로로 적용된 구조물로서 경관이 고려된 매우 아름다운 구조물입니다. 반송기흥의 고속도로에 적용된 교량 구조물로서 콘크리트 거더교와 연결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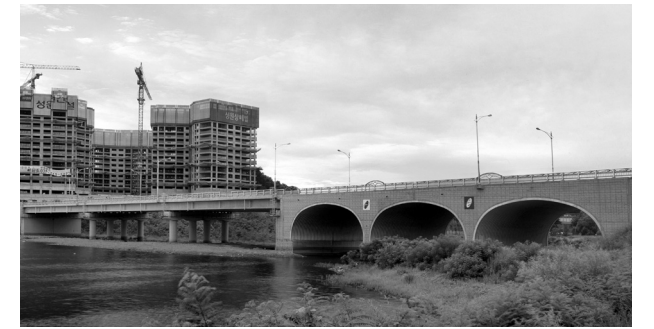
5. 대표이사님의 경영비전은?



홍천 대명 비발디



김포-장기지구



반송-기흥간(공세교, 하갈교)

기존 콘크리트 구조물의 한계를 극복하여 토목엔지니어링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며 환경친화적인 구조물을 지향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토목시장의 선두 주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시장경쟁력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한 연구개발과 주주, 임직원 및 국가사회 발전을 위해 끝없이 도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대표이사님께서 생각하시는 평산에스아이(주)의 나아갈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속적인 투자와 산학연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국내의 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해외 시장에서도 파형강관을 통한 국내토목 기술력의 우수성 홍보와 외화획득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CEO를 꿈꾸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정보화 시대에 자신의 분야에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공부해야 하며 고정관념을 버리고 사물을 다르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또한 열정과 노력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정진해 나가면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발명특허 2009. 6

매출대비 12%의 R&D 투자가 부른 성공, 윈터치형 튜브커넥터

특허기술 평가 안했다라면 샘플,
양산테스트 할 수 없었을 것



창사 이래 지속적인 발전을 해 온 (주)엠스코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와 함께 찾아 온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위기를 극복하면 기회가 주어진다는 신념 아래 기술개발에 매진한 끝에 기술평가에 의한 자금지원 등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지난 2006년에는 38%의 신장률을 기록했다.

‘윈터치형 튜브커넥터’ 역시 그러한 노력의 결정체 중 하나다.

(주)엠스코는 지난 1986년에 설립되어 그간 고압 및 유압조절시스템용 밸브류와 관이음쇠류를 생산해 왔다. 현재 이 회사는 각종 피팅류, TGS 시스템 부품 등을 일반 산업기계 분야와 현대자동차(주)의 중대형 트럭 및 버스라인에 공급하고 있다.

한편 (주)엠스코는 지난 2007년 새로운 도전과 발전을 위한 비전을 위해서 진보정밀공업(주)에서 기술혁신(Engineering innovation), 경영혁신(Management innovation), 고객만족(Satisfaction of customer)을 추구한다는 뜻의 (주)엠스코로 사명을 변경했다.

자동차에 있어서 제동장치 즉 브레이크 시스템은 주행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속도를 제어하는 한편 탑승자 및 적 재화물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매우 중요한 장치로, 차체의 운동에너지를 고체 마찰에 의한 열에너지로 전환시

켜 운동을 중지시키거나 운동속도를 감속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MCT LINE



자동화 LINE

이러한 브레이크 시스템은 그 기능적 요구특성과 안전성, 작동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제동력 전달매체에 의해 일반적으로 유압 배력식 브레이크(Hydraulic servo type brake), 공기식 브레이크(Full air type brake)로 나뉜다.

이 중 유압 배력식 브레이크란 운전자의 제동 시 브레이크 페달에 작용하는 발의 힘을 유압으로 바꾸어 이를 파이프를 통하여 제동장치에 전달하여 제동력을 발생시키는 형식이다.

또한 공기식 브레이크란 압축공기의 압력으로 제동력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여기서 제동 시 브레이크 페달에 작용하는 발의 힘은 공기밸브의 개폐만을 위한 것이 된다. 이때문에 공기식 브레이크에는 압축공기를 발생시키는 콤프레셔와 이를 저장하는 에어탱크는 물론 공기의 단속과 공급 역할을 수행하는 각종 부품이 장착되어 있다.

기존 튜브커넥터... 변화된 자동차 환경에 부적합

한편 공기식 브레이크에서 압축공기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자동차에 에어탱크를 설치한 다음 튜브커넥터를 이용하여 튜브를 통해 해당 장치에 에어를 분배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의 자동차 메이커들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공기식 브레이크의 튜브커넥터로 고정 나사식 튜브커넥터를 사용했다.

그러나 이 고정 나사식 튜브커넥터는 여러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차종에 따라 에어탱크의 설치 위치가 다르므로 튜브 피팅 시 에어 브레이크와 연료분사기 등으로 연결하는 호스의 방향이 다르게 된다. 그러나 고정 나사식 튜브커넥터가 -형, T형, L형 등으로만 그 방향이 한정되어 있어 튜브와 피팅 커넥터 사이에 소켓(Socket)과 같은 체결기구가 다시



측정실

필요했다. 뿐만 아니라 고정 나사식 튜브커넥터는 일일이 나사를 조여야 조립하기 때문에 작업자에게 커다란 불편함을 주고 있었고, 완전 고정식이기 때문에 향후 완제품을 유지, 보수하는데도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 밖에도 고정 나사식 튜브커넥터는 상용자동차의 고급화로 브레이크부품을 포함한 자동차의 공기압 보조기기에 대한 장착의 편의성과 더 높은 공기압에 대한 내구성이 요구되었으나 이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일례로 기존의 고정 나사식 커넥터로는 최근 북미와 유럽에서 한층 강화된 자동차에 대한 안전 법규(내압)를 만족시킬 수 없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자동차 메이커들은 이 고정 나사식 커넥터를 시급히 교체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국내 여러 피팅류 생산 가능 업체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 피팅류의 개발을 요구했고, 특히 외국의 사

례를 들어 손쉽게 체결할 수 있는 ‘윈터치형 피팅 커넥터’를 개발해 줄 것을 부탁했다. 하지만 이 윈터치형





피팅 커넥터는 이미 다른 나라에 의해 국제 특허가 출원되는 등 그 개발이 규제되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은 이미 개발된 원터치형 피팅 커넥터의 기술적인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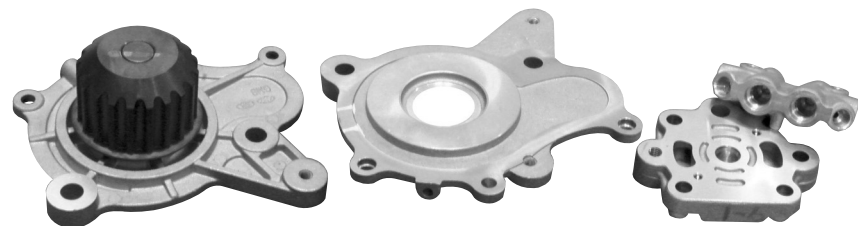
결국 우리나라 자동차 메이커들은 지난 2002년부터 원터치 피팅 커넥터를 수입해 적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렇게 수입, 적용된 원터치 피팅 커넥터는 작동 시 o-ring의 고정장치가 없어서 고압용으로 사용될 경우 압력 발생으로 인한 o-ring의 형상 변형이 나타나는 등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유체압력 상승 시 공기누설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

고압에도 견딜 수 있는 '원터치형 튜브커넥터' 개발

그래서 ㈜엠스코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30kgf/cm² 이상의 고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기누설(air leak)을 방지할 수 있는 커넥터를 개발하는데 나섰다.

이것은 당시 새로운 제품 개발 및 기술 개발을 요구하는 고객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엠스코가 자신을 위해 야심차게 던진 주사위이기도 했다. 단순 창작기능의 저가 제품 중심의 안정적인 수익에서 올 수 있는 장기적인 경영상 어려움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수익구조를 구축



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엠스코는 지난 2000년부터 연구개발에 본격 착수, 지난 2002년 마침내 '원터치형 튜브커넥터'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이렇듯 3여 년의 공을 들여 개발한 '원터치형 튜브커넥터'는 마침내 국내특허(특허 제10-0537777호) 및 국외특허(US 6,869,108 B2)를 취득했다.

한편 이 '원터치형 튜브커넥터'는 기존 수입 원터치 피팅 커넥터의 문제점인 안정성을 향상시켜 고압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엠스코는 이 제품을 위해 백업-씰(back-up seal)과 튜브 가이드(tube support)를 고안하여 적용하는 한편, 이 제품이 항상 고압에서 사용되고 사용 환경이 대기 중에 항상 노출되어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튜브 피팅의 몸체(body)를 포함한 슬리브(sleeve)와 콜릿(collet)은 황동재질을 적용했다. 또한 튜브를 지지하고 안내하는 튜브 서포트(tube support)는 강성을 지닌 스테인레스(stainless) 재질을 채택했다.

하지만 '원터치형 튜브커넥터'는 즉시 상용화되지 못했다.

개발당사자인 ㈜엠스코가 우리나라 상용자동차 시장이 이 제품을 완전 채택할 만큼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상용화 작업을 뒤로 미룬데다가 우리나라 상용차 업체들은 이 제품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인데다 가격이 너무 비싸다며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었다.

사업성 평가로 자금지원 받아 샘플, 양산 테스트 마쳐

그러나 최근 2~3년 사이 이러한 상황은 많이 달라졌다. 위에서도 언급 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우리나라 자동차 메이커들은 원터치형 피팅 튜브커넥터를 수입, 채용했다. 뿐만 아니라 특수작업차(포크레인, 고소작업차 등)의 유압 라인에도 원터치형 피팅 튜브커넥터 적용이 검토 중이다.

그러한 만큼 이 분야의 수출시장도 밝아졌다. 고소작업차의 경우 현재 세계적으로 북미지역 상용차에는 원터치 튜브커넥터가 50% 정도 적용 중이며 향후 3년 내 90% 이상 적용 추세이며, 유럽에는 100% 적용 중이고, 일본은 수출차에만 적용 중이다. 이와 함께 이 제품이 자동차를 위해 개발된 것이기는 하지만 각종 산업설비의 에어장치 및 에어활용 각종 장치 및 설비에도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다품종으로 규격화, 표준화한다면 신규시장 개척도 가능할 것이 예상된다.

하지만 ㈜엠스코의 '원터치형 튜브커넥터'는 아직 상용화 되지 못했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여전히 신뢰성 검증을 위해 공인기관 인증서 제출 및 실차 시험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 하지만 지난 5년간 '원터치 튜브커넥터' 개발을 위해 막대한 인력과 자금을 쏟아 부었던 ㈜엠스코로서는 신뢰성 검증을 위해 다시 '원터치 튜브커넥터'에 투자할 여력이 별로 남아 있지 않았다.

그래서 ㈜엠스코는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로부터 특허기술 사업성평가 보조금 5백만 원을 지원 받아 공인기관인 기술보증기금 창원기평에 특허기술사업성평가를 신청해 지난해 5월 11일부터 6월 15일에 걸쳐 특허기술사업성평가를 받았다.

그 결과 '원터치 튜브커넥터'는 사업성 부분에서 기술평가 A등급을 받아 ㈜엠스코는 이를 토대로 지난해 6월 18일 특허기술가치평가연계보증으로 1억 6천여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지원금을 통해 ㈜엠스코는 '원터치형 튜브커넥터'의 샘플, 양산 테스트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현재 ㈜엠스코는 이 제품을 자동차에서 활용하기 위한 마지막 실험단계 중 하나인 실차실험(6개월 간 실제 주행 시 6만 회 이상의 브레이크를 가동해야 하는 실험)에 들어갔으며, 이는 올해 중 완료될 계획이다.

18억 매출 기대... 수입 대체 효과도 있어

이 실험이 계획대로 완료되어, 현대자동차의 승인을 받을 경우 ㈜엠스코는 연간 18억의 매출을 이 '원터치 튜브커넥터'를 통해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역시 연간 27억 원을 들여 수입하던 '원터치 튜브커넥터'를 그 2/3 수준인 18억 원으로 낮추어 구매할 수 있게 돼 연간 9억 원의 비용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입대체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이렇듯 사업성을 갖춘 성공적인 기술개발 뒤에는 ㈜엠스코의 십여 년에 걸친 튜브커넥터 개발에 대한 기술적 노하우와 정밀 가공기술, 기술연구소의 우수한 연구인력에 의한 시험, 평가 기술이 조합되어 있었다고 ㈜엠스코는 자평한다. 이와 함께 특허기술 평가를 통한 자금확보 등이 사



업화에 궁극적으로 기여했을 것이라 덧붙였다.

하지만 ㈜엠스코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원터치 튜브커넥터'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

'원터치 튜브커넥터'는 고정된 원터치 피팅 튜브와의 체결 간편성만 확보된 것이기 때문에 ㈜엠스코는 원터치 피팅부의 자유회전이 가능한 회전형 튜브 피팅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자료조사에 착수했다. 새롭게

연구되고 있는 이것은 장착성 뿐만 아니라 피팅부의 자유로운 회전에 의해서 어떠한 장착부위에도 적용이 용이하며, 튜브의 굽힘응력을 최소화하여 내구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기술개발 노력과 함께 (주)엠스코는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현대자동차에만 만족하지 않고 타 대우상용차(주)에 개발계획과 개발예상품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으며, 이 회사는 곧 고정식의 피팅류를 윈터치형 튜브커넥터로 교체할 예정이다. 또한 (주)엠스코의 영업대리점을 활용하여 산업기계 부품으로 적극 판매·홍보하고 있다.

면에서도 현대자동차에만 만족하지 않고 타 대우상용차(주)에 개발계획과 개발예상품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으며, 이 회사는 곧 고정식의 피팅류를 윈터치형 튜브커넥터로 교체할 예정이다. 또한 (주)엠스코의 영업대리점을 활용하여 산업기계 부품으로 적극 판매·홍보하고 있다.

www.emsco21.net

CEO 인터뷰 _ (주)엠스코 권오경 대표

권 대표는 지난 1986년 진보정밀공업을 설립한 이래 지금까지 (주)엠스코의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07년에는 한국마케팅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온수보일러 감압밸브장치, 튜브카플러 등의 분야에서 국내 특허 및 미국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발명인이기도 하다.

이 제품이 회사와 업계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요.

미국 Parker社와 노르웨이 Raufoss社, 일본의 Nitta Moore社 등만이 보유하고 있던 기술을 완성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이들 제품이 일정 압력 이상에서 일으키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제품을 더 나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R&D 투자 등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이 매출대비 3~4% 정도를 R&D에 투자하는데 비해 우리 회사는 매출대비 12%를 R&D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러한 투자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R&D 투자 등 지원은 회사전략 및 비전 아래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급변하는 세계화 속에서 우리 회사는 현대자동차(주)의 1차 협력업체로서의 부품공급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OEM 업체를 향한 활발한 시장개척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회사는 R&D 5개년 계획인 진보비전 21(JV10)에 의한 기술개발을 통해 그간의 노동집약적 사업구조에서 벗어나 자동차 부품 전문회사로 발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님의 평소 경영철학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적극적인 사고, 능동적인 행동, 합리적인 경영이라는 이념 아래 특히 적극적인 사고를 통한 신기술·신제품 개발에 주력하라고 주문하는 한편 능동적인 행동을 바탕으로 한 도전정신으로 시장개척과 판로개척에 힘쓰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저는 합리적인 경영을 통한 이익의 재분배를 통해 직원들에게 회사에 대한 신뢰와 자부심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특허청 및 한국발명진흥회에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은 대개 판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어떤 기술을 개발해 이를 상품화 해 매출을 일으키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은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이렇듯 불확실한 기술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기란 어려운 일인데 이러한 중소기업에게 자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특허기술 평가는 정말 유용합니다.

발명특허 2009.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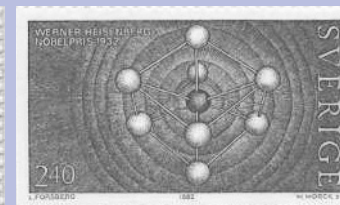
우표로 본 인물과 역사

펜지어스 [Penzias, Arno (Allan), 1933. 4. 26 ~]



미국의 천체물리학자인 펜지어스는 독일 뮌헨에서 출생, 1962년 컬럼비아대학에서 물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1964년 우주의 기원에 관한 빅뱅이론을 설명할 수 있는 3K의 우주배경복사(宇宙背景輻射)를 발견하였다. 이 공로로 1978년 R.W. 윌슨(Wilson, Robert W., 1936 ~)과 함께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하였다.

하이젠베르크 [Heisenberg, Werner (Karl), 1901. 12. 5 ~ 1976. 2. 1]



독일의 이론물리학자인 하이젠베르크는 1901년 12월 5일 뷔르츠부르크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1926년 코펜하겐대학교 강사를 거쳐 이듬해에 라이프치히대학교 교수가 되었는데, 그 해에 실증적인 입장에서 선 현미경의 사고실험(思考實驗)을 고찰하여 불확정성관계(不確定性關係)를 제창, 양자량에서의 관측문제의 기초를 마련하였고 새로운 이론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였다. 그 후 수소분자의 문제, 다체문제(多體問題), 강자성(強磁性)의 연구 등으로 나아가, 1929년 W.파울리와 함께 장(場)의 양자론을 발표하여 양자역학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1932년 원자핵 분야에서는 핵이 중성자와 양성자로 구성된다는 새로운 이론을 발표하였다. 우주선(宇宙線) 분석에서 중요한 공헌을 하였으며, 장(場)의 양자론의 한계를 논하는 등 양자론의 진보에서 항상 지도적 역할을 하였다. 불확정성원리의 연구와, 양자역학 창시의 업적으로 1932년 노벨물리학상을 받았다.

자료제공 화상 아프리카(http://blog.daum.net/philook)

21세기 기업에 필요한 지식재산 인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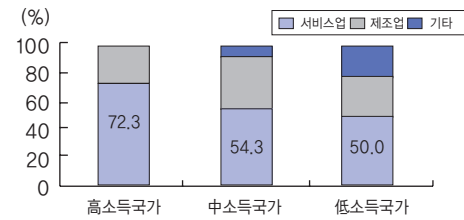
현대자동차 특허팀 / 윤승현 선임연구원

무한경쟁 시대와 지식재산권

바야흐로 21세기는 개인 간, 기업 간, 국가 간 국경없는 무한 경쟁의 시대이다. 전통적인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과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이 산업혁명의 경제현상을 설명하던 시대를 거쳐, 이제는 인터넷의 발달로 전 세계가 미국에서 발발한 금융위기나 중동전쟁과 테러위협에 동시에 일희일비할 정도로 지구촌화, 동조화가 진행 중이다. 즉, 국경을 넘어 날마다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하고, 지구 반대편의 생산기술이 짧은 시간 내에 전이되는, 바로 지식 정보가 권력이 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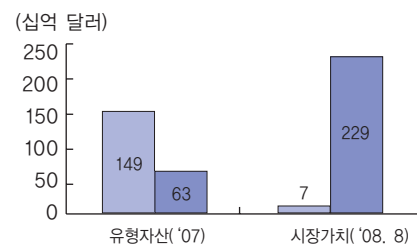
저명한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그의 저서에서 제3의 물결의 사회로의 변혁이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제3의 물결은 흔히 불리듯, 정보화 사회 같은 이름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사회에서는 탈대량화, 다양화, 지식기반 생산과 변화의 가속이 있을 것이라고 그는 예측했으며, 이는 바로 지식정보를 이용하고 가공하는 인력의 필요성을 말해준다. 현대 경영학의 태두 피터 드러커는 경영이라는 것이 결국 사람에 관한 것임을 강조한다. 즉 '지식근로

자' 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이 바로 드러커인데 그는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한다. "당신은 P&G로부



자료 : World Bank

GDP 중 서비스업 비중 비교('05)



자료 : 각회IR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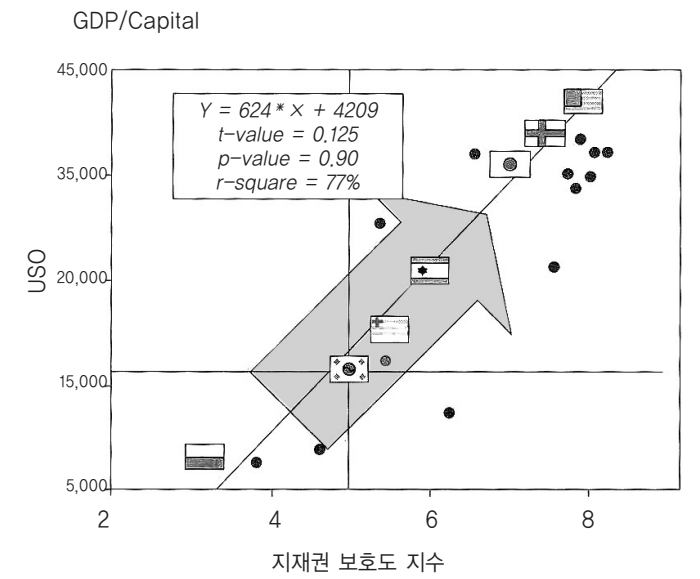
GM과 MS 비교

터 모든 것을 가져가도 좋다. 예컨대 건물을 가져가고, 제조공장을 가져가고, 그리고 다른 모든 물질적 자산을 가져가더라도 회사에 상표와 사람들만 남겨둔다면, 우리는 10년 내에 당신이 가져간 모든 것을 다시 건설할 수 있다" 아래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선진국일수록 서비스산업 지향적이고 GM보다 유형자산이 열세인 MS의 시장가치가 30배가 넘는 사실은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시사해 준다.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오늘날 선진국은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한계에 다다르자 지식재산권을 통한 견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없는 현대기업은 생존자체가 불가능한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예전의 노동, 자본 집약형 패러다임으로 그저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기업경쟁력 강화에 한계가 있게 된다. 즉 고용률이 점차 낮아지면서 반도체, 자동차 등의 주력산업이 주기적인 공급 과잉과 원가경쟁으로 상장이 지체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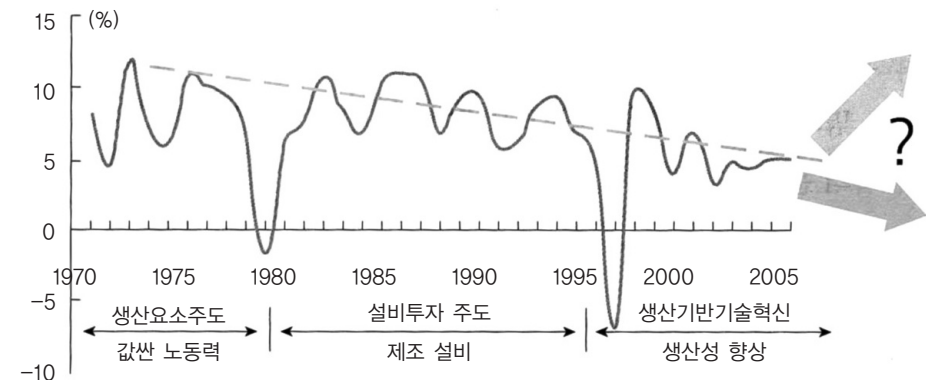
단적인 예가 이제는 국내에서 더이상 생산하지 않는 DVD플레이어다. 대당 10달러 전후인 로열티를 지불하는 체제에서는 아무리 싸게 만들어도 특허권자를 이길 방법이 없다. 디빅스 플레이어 역시 20%가 넘는 로열티를 물고 있다. 게다가 열친 데 덮친 격으로 이런 기술은 생산기지가 있는 후진국과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다. 굳이 삼성과 TI의 천문학적 특허소송 사례를 들지 않아도, 매년 2조 원이 넘는 CDMA 휴대폰의 천문학적 로열티를 거두어 들



OECD 국가 지재권 보호도와 1인당 국민소득

이는 쿨컴社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바로 "기술전쟁=특허전쟁"의 시대가 열린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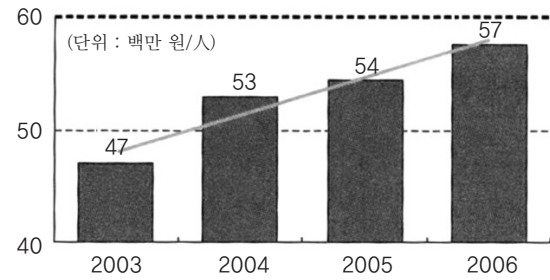
이런 상황에서는 그저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적극적인 연구활동을 통하여 기존 제품과의 차별화, 혁신화하여 영리하게 블루오션을 찾아내는 전략이 절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결과물을 적극적으로 권리화함으로써 지적재산권을 통한 수익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를 이용한 제품 경쟁력 확보가 절실하다. 우리에게 지적재산권은 그대로 주저 않을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동력을 발굴하여 미래로 도약할 것인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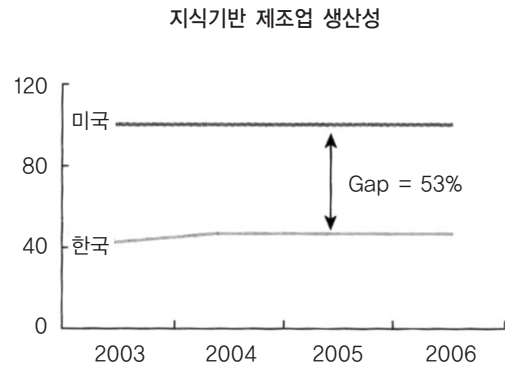
연도별 경제성장률 추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 전문인력

경영학이 인간에 관한 것인 것처럼, 지식재산 역시 많은 부분이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경영자와 우수한 IP 전문인력에 달려 있다. 국내외의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글로벌 대기업들은 모두 지식재산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인력의 숫자 이외에도 인력의 질에 많은 부분이 좌우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은 IP인력의 부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고 있으며, 지식재산 전담 조직의 보유비율은 미국의 15% 수준이고, IP인원까지 고려하면 5% 수준이 된다.



Source : OECD 국가별 데이터(http://stats.oecd.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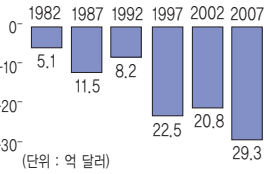
미국 기준 지식기반제조업 생산성 수준

그렇다면 우리는 태부족인 IP인력을 어떻게 양성하고 키워내야 할까? IP업무는 대부분 전문적 학습과 경험 및 판단을 요구하는 일로서, 자료화하거나 전산화, 아웃소싱으로는 100% 대체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IP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재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우선 IP인력은 기술분야의 이해도 즉 공학적 지식이 뛰어나야 한다. 이런 바탕 위에 법학적 지식이 가미된다면, 튼튼한 공학과 법학의 두 다리로 뿔 수 있는 기본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미국에서 특허변

다출원 기업 등의 지식재산활동 시 어려움 (99개 업체 설문조사 : 복수 응답)

어려움	비율
① 지식재산 인력의 부족	61.6%
② 국내·외 경쟁사의 IP 정보부족	46.5%
③ IP에 대한 경영진 인식부족	43.4%
④ IP 보호를 위한 높은 비용	42.4%
⑤ 국내·외 법적 등 IP 정보부족	23.2%

* Source : 특허청, '07년



기술무역수지 현황

호사로 불리는 이들의 대다수가 학부에서 공학을 전공한 후 법대(로스쿨)을 진학하는데서 증명된다. 이 두가지를 갖추면 IP인재의 기본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업의 지식재산 전담부서 운영비율의 국제비교

구분	한국	미국	서유럽
전담조직 보유비율	9.4%	69%	43%
전담부서의 평균인원	42명	12.5명	7.0명

* 미국, 서유럽 : 유럽특허청(2003), 한국 : 지식재산전문인재상 연구 및 수요조사(특허청 '07)

그러면 기본 위에 무엇을 우선적으로 더 쌓아야 할까? 공학과 법학이 두 기둥을 이어주는 연결 고리가 필요한데 바로 경영학이다. 이는 미국의 버클리나 듀크대 등 다수 IP 교육 과정이 공대, 법대, 경영대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경영학은 가교 역할을 한다. 즉, 어떠한 특허가 이익을 가져다 주는지에 대한 예측과 판단이 바로 경영 마인드인데 이 경영 마인드의 습득 여부가 나중에 기업에 커다란 수익(또는 손실)을 가져다 주게 된다.

하나 더 기능적인 면을 강조하자면, 최근에는 대부분의 정보와 소송이 외국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외국어의 중요성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마치 전구에서 진공 상태를 유지하여 법학, 공학의 두 전극 간의 경영학 필라멘트가 더 오래 빛나게 하는 것처럼 언어적 기능이 IP인력에게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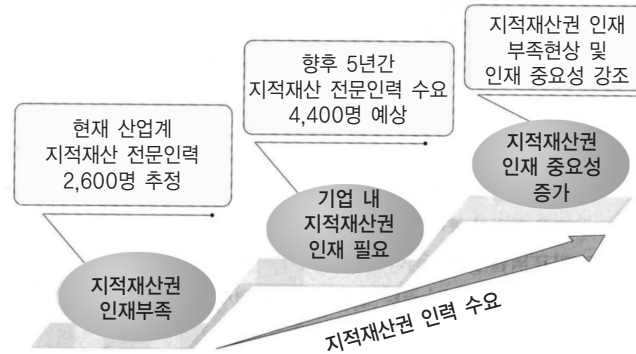
어쩌면 기업에 있어서 이상적인 IP인재란 슈퍼맨이어야 하는지도 모른다. 더욱이 오랜 경험이 잘 버무려 숙성되어야 하는 김치와도 같은 Slow Food라면 현재의 IP인력 부족이 쉽게 이해될지도 모르겠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국과 일본에서는 은퇴한 IP인력이 업계를 떠나지 못하고, 선행 기술조사나 IP자문 등의 업무로 60세 이후의 삶에 더욱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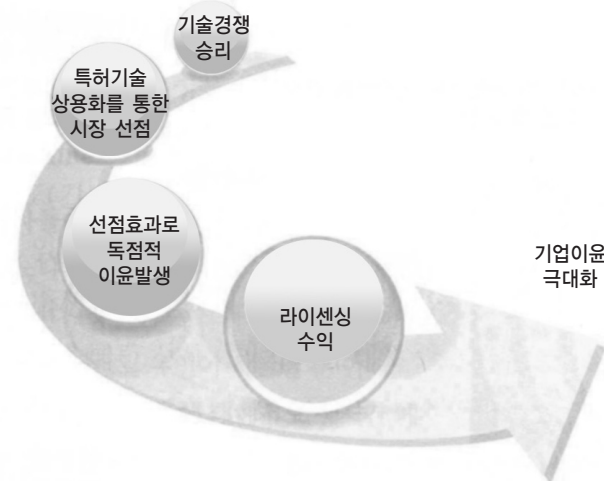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고부가가치 지식노동이 인정받는 미래 사회에 있어, 기업에는 고도로 훈련된 IP인력이 절대 필요하며 이것이 기업의 성패를 가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뒤쳐진 IP능력을 유일하고도 풍족한 자원인 인력을 IP 전문가로 적극 양성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참조 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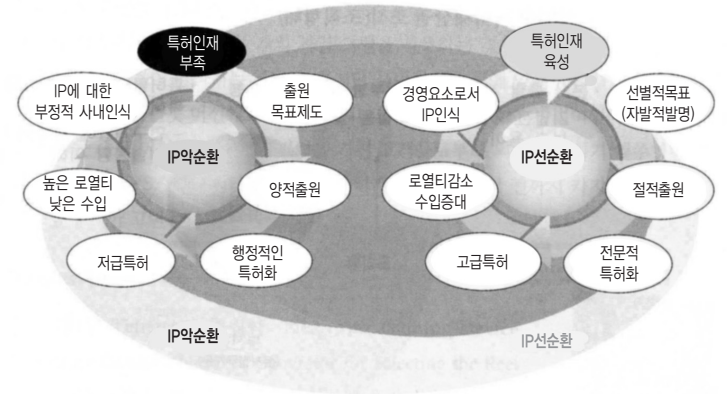
1. 기업의 지식재산 인력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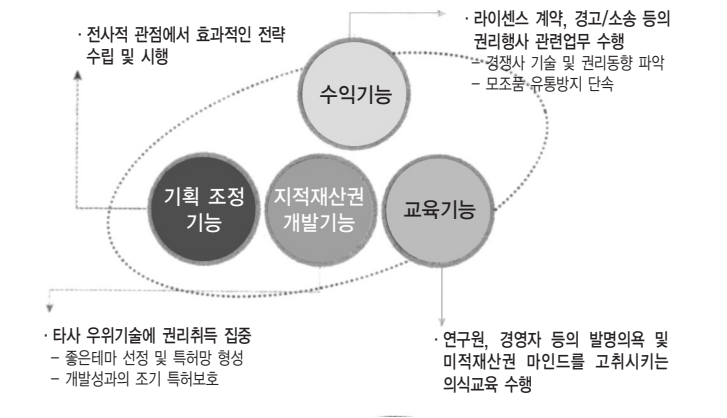
2. 지식재산권의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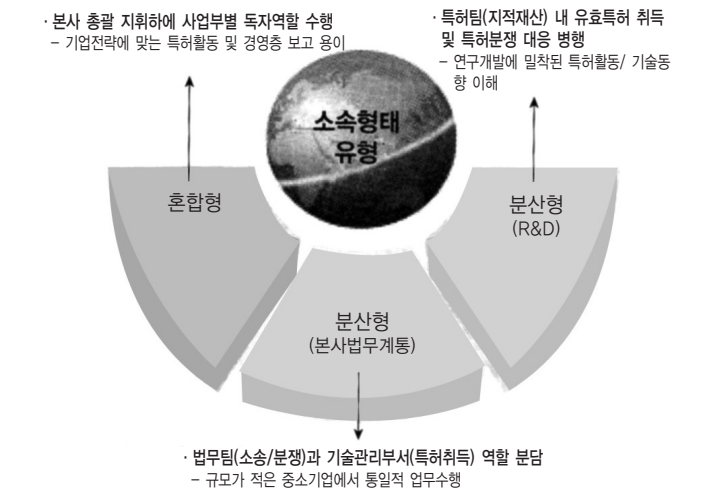
3. 기업과 지식재산 인재 순환구조



4. 기업의 지식재산권 조직(기능별)



5. 기업의 지식재산권 조직(조직형태)



'본 사례는 지식재산경영(2008) 저서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법정실시권의 구체적 내용



김 현 호

연세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
 명지대학교 겸임교수
 국제지식재산연구원 강사
 기업기술가치평가사
 (현) 특허법인 맥 대표 변리사

법정실시권의 종류

1. 직무발명에 의한 사용자의 통상실시권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에 대하여 종업원 등이 특허를 받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를 받았을 때에 사용자 등이 그 특허권에 대하여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사용자와 종업원 간의 이익을 균형있게 조정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발명진흥법 8)

2. 특허료의 추가납부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

특허료의 추가납부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효력제한기간 중 국내에서 선의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안에서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한 특허권에 대하여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을 갖는다. 이는 특허료 불납에 의한 특허출원의 포기 또는 특허권의 소멸상태를 신뢰한 선의의 실시자를 보호하며 기존의 산업설비를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특허법 81의3)

3.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특허출원 시에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발명을 하거나, 그 발명을 한 자로부터 지득하여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안에서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한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이는 선의의 최선발명자와 선출원자 간의 공평을 유지하고, 선출원주의의 폐단을 보완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특허법 103)

4. 무효심판청구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특허 또는 등록실용신안에 대한 무효심판청구등록 전에 자기의 특허발명 또는 등록실용신안이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그 발명 또는 고안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발명 또는 고안 및 사업목적의 범위안에서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이 인정되며, 이를 강화상 중용권이라 한다. 이는 특허청의 행정처분을 선의로 신뢰한 자를 보호하며, 기존의 산업설비를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특허법 104)

5. 디자인권 존속기간만료 후의 통상실시권

특허출원일전 또는 특허출원일과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권이 특허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디자인권자 및 그 디자인권의 전용실시권자, 등록된 통상실시권자¹⁾는 원디자인권의 범위 또는 원권리의 범위안에서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을 갖는다. 이는 원디자인권자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하고 기존의 산업설비를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디자인권이 존속기간만료로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그 이외의 사유로 소멸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특허법 105)

6. 질권행사로 인한 특허권의 이전에 따른 법정실시권

특허권자가 질권설정 이전에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이 경매 등에 의하여 이전되더라도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을 갖는다.(특허법 122)

7.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등록 전에 선의로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안에서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을 갖는다. 이 실시권은 확정된 심결을 신뢰한 선의의 실시자를 보호하며 기존의 산업설비를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심결확정 후의 실시에 대하여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강화상 후용권이라 한다.(특허법 182)

8. 재심에 의하여 강제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법정실시권

통상실시권허여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 의하여 이와 상반되는 심결 또는 판결의 확정이 있는 경우에, 재심청구등록 전에 선의로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사업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원통상실시권의 사업목적 및 발명의 범위내에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을 갖는다. 이 실시권은 특허청의 확정심결을 신뢰한 선의의 실시자를 보호하며, 기존의 산업설비를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특허법 183)

제1절 특허료의 추가납부기간경과 후 회복한 특허권 등에 대한 통상실시권

I. 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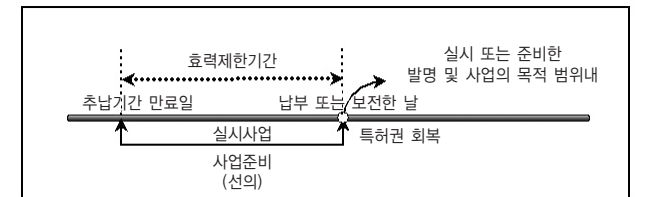
1. 의의

특허료 추가납부기간 경과 후에 회복한 특허권 등에 대한 통상실시권이란 특허료의 추가납부기간경과 후에 납부 또는 보전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의 효력제한기간 중 국내에서 선의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에게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발명 또는 사업목적의 범위안에서 인정되는 통상실시권을 말한다.(특허법81의3⑤)

2. 제도적 취지

특허법은 i) 특허료 불납 또는 미납에 의한 특허출원의 포기 또는 특허권의 소멸상태를 신뢰한 선의의 실시자를 보호하며 ii) 기존의 산업시설을 보호함으로써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법목적에 달성하기 위해 본 규정을 두고 있다.

[추가납부에 의한 통상실시권(특허법 81조의 3)]



II. 성립요건

1. 시기적 요건

- (1) 특허료의 추가납부기간경과 후에 납부 또는 보전에 의하여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이 회복되었을 것

1) 단, 법정실시권자는 등록이 불요하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여 특허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보거나 특허권이 소멸한 후, 납부 또는 보전할 수 없었던 특허료를 납부 또는 보전한 경우이거나,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여 실시 중인 특허발명의 특허권이 소멸한 후,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부터 3월 이내에 제79조의 규정에 따른 특허료의 3배를 납부하여 특허권이 회복한 경우이어야 한다. 이미 특허권이 설정등록되었다가 소멸간주 후 회복된 경우 뿐 아니라, 특허출원된 발명이 포기간주되었다가 회복된 후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때에도 그 특허권에 대하여 법정 의 통상실시권이 인정된다.

(2) 「효력제한기간 중」의 실시사업 또는 사업준비 일 것

제3자가 특허료의 추가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하거나 보전한 날까지의 기간(효력제한기간) 중에 실시사업 또는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2. 주체적 요건

선의이어야 한다. 즉,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특허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특허료를 추가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하거나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못하였음을 알지 못하여야 한다. 또는, 소멸한 특허권의 특허발명이 실시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야 한다.

3. 객체적 요건

1) 실시사업 또는 사업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실시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사업자가 계속의 의사를 가지고 그 발명의 실시(특허법 2III)를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것을 말한다.

2)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

백하지 않다. 공장의 건설, 기계의 구입 등의 경우를 포함함 은 명백하나 공장부지나 기계를 주문한다든지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등 객관적으로 사업의 준비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 예비적 행위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실시자가 투하한 노력과 비용, 사업설비는 무용의 것으로 되어 버리므로 이 제도의 존재의의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4. 지역적 요건

「국내」에서 실시사업 또는 사업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가 국내에 한정되는 데에서 오는 당연한 결과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밖에서 발명실시의 사업을 하거나 사업준비를 하는 경우 실시권 은 발생되지 않는다.

III. 범위

특허료 추가납부기간 경과 후에 납부 또는 보전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에 대한 통상실시권자는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발명 또는 사업의 목적의 범위」²⁾안에서만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1. 발명의 범위

특허료 추가납부기간 경과 후에 납부 또는 보전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에 대한 통상실시권자가 계속 실시할 수 있는 발명의 범위는 특허권자의 발명의 전부거나 아니라 효력제한기간 중 현실로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준비를 하고 있는 발명에 한정된다.

2. 사업목적의 범위

1) 특허료 추가납부기간 경과 후에 납부 또는 보전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에 대한 통상실시권자는 실시하고 있던 사업의 목적을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으면 되므로, 특허료 추가납부기간 경과 후에 납부 또는 보전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에 대한 통상실시권은 특허출원 당시의 사업목적의 범위에 한정된다. 따라서, 동일한 사업목

적의 범위내에서라면 사업규모를 확장(예컨대 공장부지의 확장, 종업원의 증원, 영업소의 확장 등)하는 것은 무방하다.

2) 다만, 발명의 내용이 용접방법에 관한 발명인 경우에, 효력제한기간 중 통상실시권자가 선박사업만을 사업의 목적으로 하여 정관에 규정한 경우에는 효력제한기간 경과후에 항공기제조사업도 사업의 목적으로 하도록 정관을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효력제한기간 중 사업목적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되므로, 통상실시권자는 항공기제조에 그 용접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

IV. 대가

본조의 법정실시권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특허법 81의3㉔)

제2절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I. 서설

1.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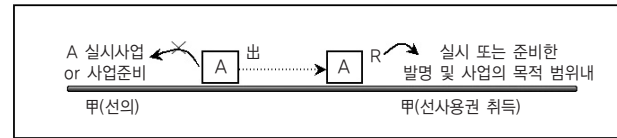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이란 특허출원 시 타인의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발명을 하거나 그 발명을 한 자로부터 지득하여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에게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의 목적의 범위안에서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한 특허권에 대하여 무상(無償)의 통상실시권을 말한다.(특허법 103) 이와 같이 발명의 선사용자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강화상 선사용권 또는 선용권 이라고도 한다.

3) 선발명자보호설은 획일적인 선출원주의 원칙을 관철함으로써 발생하는 불합리를 시정하고, 선발명자와 선출원자 간의 보호의 균형을 꾀하기 위하여 선사용권 제도가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4) 공평설은 특허출원 시에 이미 실시하거나 또는 실시준비를 하고 있는 선의 사업자가 그 후에 설정등록된 특허권 때문에 실시를 계속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은 선의의 선사용자를 희생시키고 특허권자를 지나치게 보호하는 것이 되어 현저하게 공평에 반하게 되므로 이의 시정을 위하여 선사용제도가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5) 경제설은 특허출원 시에 이미 실시하거나 실시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의 계속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선의의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할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상 또는 산업정책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이다.
6) 교사설(敎師說)은 발명자는 국민의 교사라는 이론적 배경하에서 선사용자는 특허권자의 발명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특허권에 복종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이다.
7) 노하우(know-how) 보호설은 노하우에 대하여도 법률상의 보호가 필요하며 선사용권은 그러한 의지의 표현이라는 견해이다.

2)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의 목적의 범위로 규정되어야 하는데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발명 「또는」 사업의 목적의 범위로 규정되어 있는 현행 법은 입법불비라 여겨진다.

정되는 것(경제설)의 절충인 공평경제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선사용권(특허법 103)]



II. 성립요건

1. 주체적 요건

- 1) 선의이어야 한다. 여기서의 「선의」는 타인이 특허출원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발명을 하거나 그 발명을 한 자로부터 지득하여 발명의 실시사업 또는 사업의 준비를 한 경우를 말한다.
- 2) 「타인이 특허출원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한 발명」이란 타인이 특허출원한 발명인지 모르고 스스로 발명한 것이 타인의 출원발명과 동일하게 된 경우로서, 특허출원 이전에 발명이 완성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특허권자 이외의 자의 발명을 절취·모방하거나 강박하였는지 여부는 여기에서 문제되지 않는다.
- 3) 「발명한 자로부터의 지득」은 그 발명을 스스로 발명한 자로부터의 지득은 물론 발명을 전득한 자로부터의 지득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스스로 발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타인이 실시하는 것을 보고 그 발명의 내용을 알아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실시행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타인으로부터 발명을 지득한 경우에 그 발명의 지득경로(root)는 문제되지 않으나, 여기서는 선사용되는 발명의 과도한 보호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허출원한 발명자로부터 발명을 지득한 경우는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일반적이다.
- 4) 「발명을 하는 것」과 「지득하는 것」은 자연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인은 원칙적으로 선사용권의 보호대상은 될 수 없고, 다만 승계인으로서 선사용권의 발생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2. 객체적 요건 및 지역적 요건

국내에서 그 특허발명이나 고안의 실시사업 또는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가 국내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그 밖에 「실시사업」 및 「사업의 준비」에 관하여는 특허료의 추가납부기간경과 후에 회복한 특허권 등에 대한 통상실시권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3. 시기적 요건

「특허출원 시」에 실시사업 또는 사업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특허출원 시」란 특허출원을 한 때, 즉 특허출원일을 의미하므로 특허출원 후 출원공개 전 사이에 발명의 실시사업 등을 하고 있어도 선사용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과거에 실시사업 등을 하고 있었으나 특허출원 시에 일단 사업 등을 중단하거나 포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허출원시는 i) 분할출원(특허법 52②), 변경출원(특허법 53②)의 경우 원출원일, ii) 조약우선권주장출원(특허법 54①), 국내우선권주장출원(특허법 55③)의 경우 선출원일, iii) 국제특허출원의 경우 우선일의 출원일을 말한다.

III. 범위

선사용권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발명 또는 고안」 및 「당해 사업의 목적 범위」안에서만 타인의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특허료의 추가납부기간경과 후에 회복한 특허권 등에 대한 통상실시권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VI. 대가

선사용권자는 대가의 지급없이 무상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다.

V. 관련문제

1. 선사용권과 공연실시

선사용자의 출원 전의 실시가 공연히 행하여진 경우에는 당해 특허발명은 신규성이 상실된 것으로서 특허무효

사유가 되므로 선사용권제도는 주로 비밀실시자에게 실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연실시의 경우에 무효심판에 의하여 당해 특허를 무효로 할 것도 없이 당연히 실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공연실시자에게도 유리한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선사용권의 원용

선사용권자가 제3자에게 실시를 위탁하는 경우(예컨대, 제품의 주문생산)에도 이를 선사용권의 정당한 행사로 볼 것인가, 즉 실시를 위탁받은 제3자가 선사용권을 원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 경우에 소위 1기관으로서의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제3자의 실시 역시 선사용권의 범위에 속하므로 제3자는 특허권자에 대하여 선사용권을 원용할 수 있다.

3. 선사용권자가 제조한 물건의 제3자의 사용

선사용권자가 제조한 물건을 양수한 제3자가 그 물건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이 적법한가에 대하여는, 특허권자로부터 실시허락을 받은 통상실시권자가 제조한 제품을 사용 또는 판매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적법하다. 통상실시권의 효력은 허락실시권이든 법정실시권(또는 강제실시권)이든 똑같기 때문이다.

4. 실시태양의 변경

특허출원시 선사용자가 실시하고 있는 발명의 태양 또는 형식을 변경하는 것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특허법 제103조에서는 「발명의 범위」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태양 또는 형식의 범위」라고는 하지 않음에 비추어 볼 때 그 태양이나 형식의 변경이 이른바 균등의 범위에 속한 경우에는 발명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선

사용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사용권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⁸⁾

5. 특허권 성립 전의 선사용권의 지위

선사용권은 특허권에 대한 권리이므로 특허권 성립 후의 선사용자는 법정실시권자로서 특허법의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특허권 성립 전의 선사용자의 지위에 대하여는 특허법에 규정된 바 없으므로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는 선사용권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장래 선사용권자로 될 수 있는 자를 특허권의 성립 이전이라고 하여 보호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선사용권의 요건을 갖춘 자는 특허권의 성립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선사용권자와 마찬가지로 보호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⁹⁾

제3절 무효심판청구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I. 서설

1. 의의

무효심판청구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이란 특허 또는 등록실용신안에 대한 무효심판청구의 등록 전에 자기의 특허발명 또는 등록실용신안이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그 발명 또는 고안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 그 특허 또는 등록실용신안이 무효로 된 경우에 현존하는 특허권(또는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말한다.(특허법 104 ①) 이러한 무효심판청구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강학상 중용권(中用權)¹⁰⁾이라고도 한다.

8) 이와 관련하여 일본 최고재판소는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발명의 범위"란,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의 때에 선사용권자 실제로 일본 국내에 있어서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었던 실시형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시형태로 구현되어 있는 기술적 사상, 즉, 발명의 범위를 말하는 것이고, 따라서, 선사용권의 효력은 특허출원의 때에 선사용권이 실제로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었던 실시형태 뿐만 아니라 이것에 구현된 발명과 동일성을 잃지 아니하는 범위내에 있어서 변경한 실시형태에도 미치는 것으로, 아마 선사용권 제도의 취지가 주로 특허권자와 선사용권자간의 공평을 꾀하는 것에 있는 것으로 비추어보면, 특허출원의 때에 선사용권자가 실제로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실시형태 이외로 변경하는 것을 일체 인정하지 않은 것은 선사용권자에게 있어서 가혹하고 상당하지도 아니하다."라고 판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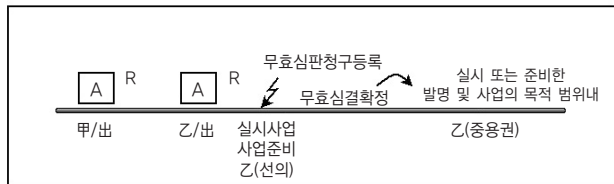
9) 특허출원 공개 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보상금청구권을 고려하여 출원 중인 발명임을 경고한 경우에 문제된다.

2. 제도적 취지

1) 특허권자 또는 실용신안권자는 일단 그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을 국가로부터 정당하게 받은 것이므로 그 발생 즉시 실시의 사업을 하거나 사업준비를 하는 것이 통례이다. 따라서 사업을 개시하거나 사업준비를 한 이상 그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이 무효가 되었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이것을 실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선의의 실시자에게 너무 가혹할 뿐 아니라 산업보호의 공익적 입장에서 보아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2) 또한 특허가 잘못 부여된 경우는 어느 의미에서 국가의 잘못이기도 하므로, 무효된 특허발명 등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려는 자에게 일정조건하에서 그 발명 등의 실시를 계속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존 사업시설 및 선의의 실시자를 보호하려는 데에 제도의 취지가 있다.

[중용권(특허법 104)]



II. 성립요건

1. 주체적 요건

(1) 「선의」일 것

여기에서의 선의는 자기의 특허발명 또는 등록실용신안이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 발명 또는 고안의 실시사업 등을 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중용권을 가지는 자

① 동일발명에 대한 2 이상의 특허 중 그 하나를 무효로 한 경우의 원특허권자.(특허법 104① I)

1) 2 이상의 특허 중 그 하나를 무효로 한 경우란 신규성(특허법 29① 각 호), 진보성(특허법 29②),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특허법 29③), 선출원주의(특허법 36)의 위반으로 중복특허된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특허에 관하여 법 제133조의 특허무효심판에 의한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물론 이 경우의 원특허권자라 함은 최초의 특허를 받은 특허권자만이 아니라 그 특허권을 양도받은 새로운 특허권자도 포함되는 개념이다.

2) 문제로 되는 것은 특허법 제133조 제1항 후단에서 “특허청구항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복수항 중 하나의 청구항만이 무효된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특허법 제215조 및 제215조의 2의 반대해석상 실시권의 설정은 청구항별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중용권 제도의 취지상 인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② 특허발명과 등록실용신안이 동일하여 그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한 경우의 원실용신안권자(특허법 104① II) 前號의 경우는 동일발명에 대해서 2 이상의 특허가 되어 있는 경우임에 반해 本號는 동일한 기술의 내용의 것에 대하여 각각 특허나 실용신안으로 등록된 경우이다. 기타의 사항은 제1호의 경우와 동일하다.

③ 특허를 무효로 하고 동일한 발명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특허를 한 경우의 원특허권자(104① III) 이는 등록된 특허발명이 발명자 또는 정당한 승계인에 의하여 출원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특허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무권리자 특허임을 이유로 특허가 무효로 되고 정당한 권리자에게 특허가 된 경우 그 무권리자 특허임을 알지 못하고 실시하고 있는 특허권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본호가 적용되는 것은 무권리자 특허 혹은 무권리자 출원임을 알지 못하고 선의로 양수하여 특허권자가 된 자만이 해당하고, 무권리자 혹은 무권리자임을 알고 양수한 자는 본호에 의한 법정실시권을 가질 수 없다.

④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하고 그 고안과 동일한 발명

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특허를 한 경우의 원실용신안권자(104① IV)

제3호가 특허를 무효로 했을 경우를 상정한 데 대해 본호는 실용신안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서 기타 사항은 제3호와 같다.

⑤ 이상의 경우에 있어서 그 무효로 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무효심판청구의 등록 당시에 이미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 또는 그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하고 그 등록을 받은 자, 및 법정실시권을 가지는 자(특허법 118②)도 선의의 실시사업 또는 실시준비 등의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중용권을 가질 수 있다.

2. 객체적 요건 및 지역적 요건

국내에서 그 특허발명이나 고안의 실시사업 또는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가 국내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그 밖에 「실시사업」 및 「사업의 준비」에 관하여는 특허료의 추가납부기간경과 후에 회복한 특허권 등에 대한 통상실시권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3. 시기적 요건

(1)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가 되었을 것

법 제104조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특허 또는 등록실용신안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가 되어야 한다.

(2) 「무효심판청구의 등록 전」의 실시사업 또는 사업준비일 것

여기에서 등록은 예고등록을 말하는데, 예고등록이란 특허권에 대한 무효심판청구 등과 같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그 분쟁사실을 공중에게 알리기 위하여 특허청장이 직권으로 특허원부에 그 심판청구사실을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登録令 3) 즉, 무효심판청구의 사실을 특허원부에 예고등록하기 전에 실시사업 또는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III. 범위

중용권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발명 또는 고안」 및 「당해 사업의 목적 범위」안에서만 타인의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특허료의 추가납부기간경과 후에 회복한 특허권 등에 대한 통상실시권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IV. 대가

선사용권의 경우에는 특허권자와 선사용권자와의 이익조정이라는 공평의 이념이 보다 고려되고 있으므로 무상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으나, 중용권의 경우는 당사자 사이의 이익조정이라는 고려는 없고 무권리로 된 자의 기존의 사업이나 그 설비를 보호하자는 산업정책적인 고려에서 인정되는 제도이므로 실시권자는 특허권자 등에게 상당한 대가(실시료)를 지급하여야 한다.(특허법 104②)

V. 파리조약과 중용권

1)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출원을 하는 경우 제1국 출원일과 제2국 출원일 사이에 타인의 출원이 있고 우선권주장출원에 의해 등록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등록되어 무효심판에 의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경우에 중용권이 발생하는지 문제가 된다.

2) 문제는 파리조약 4B와 법 제104조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로 귀착된다. 법 제26조에 의해 조약이 국내법에 우선하는바 파리조약 4B에 의해 중용권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논리상 타당할 듯 있으나, i) 중용권의 취지가 기존 산업설비의 보호를 통해 특허법의 목적인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고, 중용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자있는 특허권에 기해 산업설비를 갖추고 있는 자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점, ii) 제2국 출원일후에 출원하여 착오로 등록되고, 무효심판에 의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경우에는 중용권이 발생하는데 단지 제1국 출원일과 제2국 출원일 사이에 출원하였다하여 중용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중용권이 발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10) 선사용권이 출원 전의 사실에 기초해서 발생하는 것인데 반해, 이 통상실시권은 출원 후에 생긴 일정한 사실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中用權이라고 부른다.

제4절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 실시권

I. 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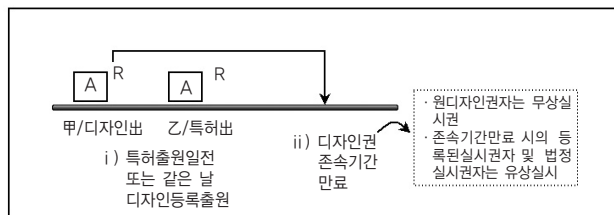
1. 의의

디자인권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이란 특허출원 일전 또는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권이 특허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그 디자인권자 및 그 디자인권의 전용실시권자, 등록된 통상실시권자 및 법정실시권자에게 원디자인권 또는 원실시권의 범위안에서 인정되는 통상실시권을 말한다.(특허법 105)

2. 제도적 취지

동제도는 동일한 객체(발명 또는 디자인)가 특허와 디자인으로 다같이 등록되는 경우(저촉관계)에 디자인권은 특허권에 비하여 존속기간이 짧으므로¹¹⁾ 특허권보다 먼저 소멸한 디자인권은 원래 당해 특허권과 양립하여 온 것이므로 원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의 만료 시 이미 존재하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에 대해서 통상실시권을 인정하여 계속 실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사회적 공평의 관념에 합치된다는데 그 취지가 있다.

[디자인권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특허법 105)]



II. 성립요건

1. 주체적 요건

저촉하는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는 자는 i)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 디자인권의 원디자인권자, ii)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된 디자인권의 소멸시에 디자인권에 존재하던 전용실시권자, 통상실시권자 및 전용실시권의 통상실시권자이다. 다만 이 경우에 디자인권의 통상실시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의 통상실시권자는 특허청에 등록된(그리하여 대항력을 갖춘) 자만을 의미한다. iii) 특허법 제118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즉 법정실시권자는 등록하지 않아도 본조의 통상실시권을 갖는다.

2. 객체적 요건

디자인권이 특허권과 저촉관계에 있어야 한다. 저촉관계에 있다고 함은, 디자인권을 실시하면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고, 역시 특허권을 실시하면 디자인권을 그대로 침해하는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한다. 본조의 통상실시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양 권리가 저촉관계에 있던 중 디자인권이 먼저 소멸된 경우이다.

3. 시기적 요건

(1) 디자인권의 출원일이 특허출원일과 같거나 그 전일 것

소멸된 디자인권의 원디자인권자 등이 존속중인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갖기 위하여는, 그 디자인출원일이 특허출원일보다 선출원이거나 최소한 같은 날의 출원이어야 한다. 디자인등록출원이 저촉되는 특허권의 특허출원보다 후출원인 경우에는 디자인권자는 디자인권이 존속하는 기간 중에도 선출원권리자인 특허권자의 동의 등이 있어야만 등록디자인 및 그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수 있으며, 존속기간 만료 등으로 소멸한 경우에도 당연히 특허권에 구속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 디자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되었을 것

본조의 통상실시권이 인정되는 것은 디자인권이 정상적으로 「존속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에 한한다. 등록료의 불납, 디자인권의 포기 또는 무효심판에 의하여 조기에 소멸된 디자인권에까지 혜택을 주는 것은 공평에 반하기 때문이다.

III. 범위

1) 디자인권자가 가지는 본조의 통상실시권은 발생요건으로서 「실시」를 필요로 하고 있지 않으며, 그 범위는 「원디자인권의 범위」내이다. 그러므로 실시기간은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전 기간을 의미하고 특별한 실시태양 등의 제한도 없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당시의 전용실시권자 등이 가지는 본조의 통상실시권 역시 「원권리(또는 원 실시권)의 범위」내에서 인정된다.

IV. 대가

1. 원디자인권자는 무상

원디자인권자는 대가의 지급없이 무상으로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원디자인권자에게 법정실시권을 인정하는 이 유가 권리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이다.

2. 소멸된 디자인권에 대해 등록된 실시권을 가지는 자는 유상

소멸 당시 당해 디자인권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자」또는 「등록한 통상실시권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특허법 105③)

제5절 질권행사로 인한 특허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I. 서설

1.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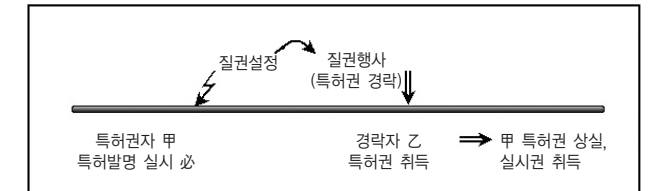
질권행사로 인한 특허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이란 특허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설정 이전에 특허권자가 특

허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이 경매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이전되더라도 그 특허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자에게 통상실시권을 말한다.(특허법 122)

2. 제도적 취지

특허권에 약정담보물권인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 특허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질권자는 질물인 특허권을 경매하여 그 가액으로 우선변제받고 특허권은 경락자에게 이전된다. 이 경우에 특허권자가 질권설정 이전부터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었다면 이미 실시를 위하여 설치된 설비 등을 폐기하여야 하므로 국민 경제상 유익하지 않고 또한 특허권자의 실시상태를 계속 유지시키는 것이 산업발전에 유익하므로 특허법은 이와 같은 경우에 특허권자에게 법정실시권을 인정하고 있다.

[질권행사로 인한 특허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특허법 122)]



II. 성립요건

1) 본조의 통상실시권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다음을 만족해야 한다.

- i) 특허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었을 것,
- ii) 특허권자가 질권설정 이전에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을 것,
- iii) 특허권이 경매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이전될 것을 요한다.

2) 질권설정 이전에 실제로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어야 하므로, 단지 실시사업의 준비만을 하고 있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3) 한편, 본조의 통상실시권은 질권이 설정된 특허권자에 한하며, 그 특허권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자나 등록된 통상실시권자, 법정실시권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자들은 본조에 의한 법정실시권이 주어지지 않아도 당연히 경락에 따른 새로

11)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5년이다.(디자인보호법 40①)

은 특허권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특허법 118①,②)

III. 범위

본조의 통상실시권의 범위에 대하여는 특별히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실시장소와 실시기간의 범위에 대하여는 제한이 없다고 보는데 이론이 없으나 실시내용의 범위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다. 즉 특허권자가 질권설정 이전에 현실로 실시하고 있던 특허발명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견해와 제한이 없이 특허발명의 전 범위에 걸쳐 실시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이에 대하여는 특허법에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다는 점, 원래 특허권자였다는 점 및 통상실시권에 대한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後說이 타당하다고 본다.¹²⁾

IV. 대가

이전된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갖는 前特許權者는 정매 등에 의하여 특허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6절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I. 서설

1.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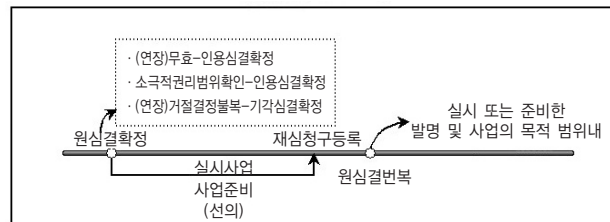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이란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 또는 무효되어 특허권이 소멸되었거나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 다시 재심에 의하여 이와 상반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특허법 181①각 호)에 당해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의 등록 전에 선의로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

사업 또는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에게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의 목적의 범위안에서 그 특허권에 관하여 인정되는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말한다.(특허법 182) 이러한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은 심결확정 후의 사실에 기초하여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後用權(後用權)이라고도 한다.

2. 제도적 취지

- 1) 특허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되어 특허권이 소멸하였다는 심결을 신뢰하여 선의로 특허발명의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후에 소급해서 특허권의 침해책임을 묻는 것은 공평에 반하며, 산업발전을 위하여도 기존의 산업시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 2) 재심청구등록 전의 선의의 실시자에게는 회복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선의의 실시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심에 의해서 특허권이 회복한 이후에도 그 실시를 계속할 수 있도록 법정실시권을 인정하여 선의의 실시자를 보호하려는 데에 본조의 취지가 있다.

[후용권(특허법 182)]



II. 성립요건

1. 주체적 요건

선의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선의란 소멸된 권리에 재심 사유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 또는 장래에 재심사유가 생김으로써 재심청구를 한다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을 말한다.

2. 객체적 요건 및 지역적 요건

국내에서 그 특허발명이나 고안의 실시사업 또는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가 국내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그 밖에 「실시사업」 및 「사업의 준비」에 관하여는 특허료의 추가납부기간경과 후에 회복한 특허권 등에 대한 통상실시권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3. 시기적 요건

(1) 당해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 의하여 이와 상반된 심결이 확정될 것(특허법 181①각 호)

1) 「당해 심결」이란 i) 특허권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결, ii)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결, iii)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 중 어느 하나의 심결을 말한다.

2) 「이와 상반된 심결이 확정」된다는 것은 재심에 의하여 i) 무효된 특허권 또는 무효된 존속기간 연장등록 특허권이 회복되거나, ii)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게 되거나, iii)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특허결정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당해 심결의 확정 후 재심청구의 등록 전」에 실시사업 또는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을 것

「당해 심결의 확정」이란 위 (1)의 각 당해심결의 확정을 말하며, 재심청구의 등록이란 재심청구사실에 대한 예고 등록을 말한다.

III. 범위

본조의 법정실시권자는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의 목적의 범위안에서만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IV. 대가

본조의 법정실시권자는 대가의 지급없이 무상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절 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

I. 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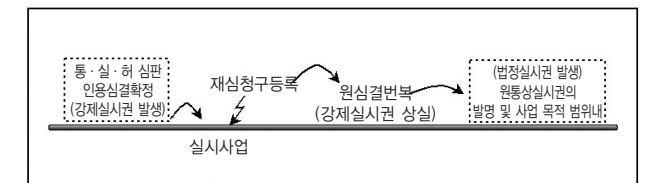
1. 의의

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이란 통상실시권허여심판(특허법 138)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허여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 의하여 이에 상반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 재심청구등록 전에 선의로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 또는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에게 원통상실시권의 사업의 목적 및 발명의 범위안에서 그 특허권 또는 재심의 심결이 확정된 당시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인정되는 통상실시권을 말한다.(특허법 183) 이것은 강제실시권이 법정실시권으로 전환되는 경우이다.

2. 제도적 취지

통상실시권허여의 확정심결을 신뢰한 선의의 실시자를 보호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합당하며,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그 실시 및 기존의 시설을 보호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특허법 183)]



II. 성립요건

본조의 통상실시권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다음을 만족해야 한다.

12) 同旨 : 이종일, 717면.

1) 법 제138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실시권 허여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 의하여 이에 상반되는 심결이 확정될 것

2) 통상실시권을 허여받은 자는 재심청구등록 전에 선의로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 또는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을 것

여기에서의 등록이란 재심청구사실의 예고등록을 의미하며, 선의란 통상실시권허여심결에 재심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III. 범위

본조의 법정실시권자는 원통상실시권자의 사업의 목적 및 발명의 범위안에서만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즉, 통상실시권의 범위는 원래의 통상실시권허여심판에 의해서 허여된 통상실시권의 범위로 한정된다.

IV. 대가

본조의 법정실시권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법정실시권의 비교]

	발명진흥법 8	특허법 81의3	특허법 103	특허법 104
의의	종업원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를 받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를 받았을 때에는 사용자 등에게 인정되는 전범위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말한다.	특허료의 추가납부기간경과후 납부 또는 보전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의 효력제한기간 중 국내에서 선의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에게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발명 또는 사업목적의 범위안에서 인정되는 통상실시권을 말한다.	특허출원 시에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발명을 하거나 그 발명을 한 자로부터 지득하여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에게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의 목적의 범위안에서 인정되는 통상실시권을 말한다.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무효심판청구등록전에 자기의 특허발명 또는 등록실용신안이 무효사유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그 발명 또는 고안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에게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발명 또는 고안 및 사업목적의 범위안에서 인정되는 통상실시권을 말한다.
법적성질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 채권적 성질, 부수적 성질			
성립요건	주체적	① 종업원등이 직무에 관해 발명 ② 사업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할 것	선의 →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추가납부기간내에 특허료를 납부 또는 보전기간내에 보전하지 못하였음을 알지 못할 것, 또는, 실시 중인 특허발명의 특허권이 소멸한 것임을 알지 못할 것.	① 선의 자기의 특허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를 것 ② 취득할 수 있는 자 원특허권자 및 원실용신안권자, 선의의 무권리자, 등록된 실시권자, 법정실시권자
	객체적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할 것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	
	시기적	종업원등이 특허를 받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를 받을 것	효력제한기간 중	특허출원 시
	지역적	국내		
발생	법률의 규정을 만족하면 발생(등록하지 않아도 대항 가능 → 단, 입증의 문제가 있음)			
효력	효력범위	특허발명의 범위 내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 내	
	제한	적극적 효력만 인정	적극적 효력의 제한만 인정	
변동	실시권설정	설정불가		
	질권설정	특허권자의 동의		
	이전	특허권자의 동의, 사업과 함께, 상속 기타 일반 승계		
	특허권포기	X		
소멸	특허권	장래를 향하여 소멸, 소급하여 소멸		
	실시권	실시권의 포기, 특허권의 수용, 혼동, 실시사업폐지(特許法 105 제외)		
대가	① 디자인권자 → 無 ② 실시권자 → 有	無	有	有
설정등록효과	등록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 가능, 그러나 통상실시권의 변동은 등록이 대항요건(특허법 118조)			

	특허법 105	특허법 122	특허법 182	특허법 183	
의의	특허출원일전 또는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권이 특허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그 디자인권자 및 그 디자인권의 전용실시권자, 등록된 통상실시권자에게 원디자인권 또는 원실시권의 범위안에서 인정되는 통상실시권을 말한다.	특허권자가 질권설정 이전에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이 경매 등에 의해 이전되더라도 그 특허발명에 대하여 인정되는 통상실시권을 말한다.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등록 전에 선의로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에게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안에서 인정되는 통상실시권을 말한다.	통상실시권허여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 의하여 이와 상반되는 심결이 있는 경우, 재심청구등록 전에 선의로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에게 원통상실시권의 사업목적 및 발명의 범위안에서 인정되는 통상실시권을 말한다.	
법적성질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 채권적 성질, 부수적 성질성				
성립요건	주체적	① 원디자인권자 ② 전용실시권자 ③ 등록된 실시권자 ④ 법정실시권자	특허권자	선의 → 재심사유를 알지 못함	선의 → 재심사유를 알지 못함
	객체적	특허권과 저촉	질권설정 이전에 그 특허발명을 실시	실시사업 또는 그 사업의 준비	실시사업 또는 그 사업의 준비
	시기적	① 특허출원일 전 또는 특허출원일과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 ②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	질권설정되어 특허권이 경매 등에 의해 이전	①특허권 · 존속기간연장등록의 무효심결, ②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결, ③특허출원 ·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의 거절심결확정 후 재심에 의하여 이에 상반되는 심결의 확정인 있는 경우에 심결확정후 재심청구등록전	통상실시권을 허여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 의하여 이에 상반되는 심결의 확정인 있는 경우에 심결확정후 재심청구등록전
	지역적	국내			
발생	법률의 규정을 만족하면 발생(등록하지 않아도 대항 가능 → 단지 입증책임의 문제)				
효력	효력범위	① 디자인권자 디자인권의 범위 내 ② 등록된 실시권자 원권리의 범위 내	특허발명의 전범위 내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의 목적의 범위	원통상실시권의 사업의 목적 및 발명의 범위
	제한	적극적 효력만 인정	적극적 효력의 제한만 인정		
변동	실시권설정	설정불가			
	질권설정	특허권자의 동의			
	이전	특허권자의 동의, 사업과 함께, 상속 기타 일반 승계			
	특허권포기	X			
소멸	특허권	장래를 향하여 소멸, 소급하여 소멸			
	실시권	실시권의 포기, 특허권의 수용, 혼동, 실시사업폐지(特許法 105 제외)			
대가	① 디자인권자 → 無 ② 실시권자 → 有	有	無	有	
설정등록효과	등록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 가능, 그러나 통상실시권의 변동은 등록이 대항요건(특허법 118조)				

주지 · 저명상표 사용자의 보호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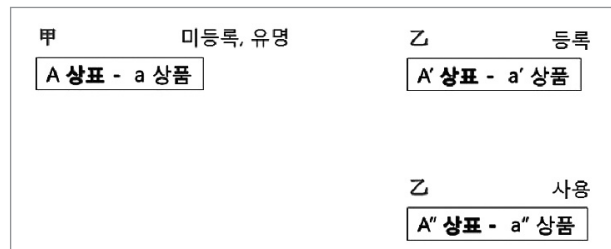


손 지원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기계항공공학부 졸업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박사수로
 서울대학교 정밀기계공동연구소 연구원
 40회 변리사시험 상표법수석합격
 한국특허아카데미 상표법 전임교수
 (현) 태을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사실관계) 甲은 A 라는 표장을 가구류 판매업에 20년 넘게 사용하여 주지, 저명성을 인정받고 있다. 甲과 동업관계에 있던 乙은 갑의 A 표장이 미등록으로 존재함을 발견하고, 이와 극히 유사한 A' 상표를 지정상품 가구류에 대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하여 설정등록을 받았다. 이후 乙은 甲과의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자신이 제조한 가구류에 상기 A' 표장을 부착하여 판매하여 甲의 영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 또한 乙은 등록상표권에 기해 甲의 가구류 판매업에 대한 사용 금지를 요구하였다.

甲이 乙에게 취할 수 있는 모든 법률상의 조치에 대하여 검토하시오.



I. 등록주의의 원칙 및 그 보완

우리 상표법은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규정하여¹⁾ 등록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등록주의는 상표의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특허청에 상표권이 설정등록되었는지에 따라 상표권의 발생을 인정하려는 입법주의로서, 등록에 설권적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다. 등록주의의 목적은 상표등록에 의하여 추상적인 권리범위를 확정함으로써 일반 수요자의 이익과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보를 1차적인 목적으로 한다.

등록주의는 상표의 사용 이전이라도 이를 보호하게 되어, 사용이 예정되어 선택된 상표가 영업적 경쟁력과 신용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제3자의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영업발전 조성기능을 갖게 된다.

그러나 상표권의 부여에 있어 등록이라는 형식행위에 과도한 보호를 주는 것은 선의의 상표사용자의 권리이익을 해치게 되고, 상표브로커의 발호로 상표제도 자체가 남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우리 상표법은 등록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일정한 효과를 인정함으로써 등

록주의의 폐단을 해소하려고 한다.²⁾ 그 일례로서 미등록상표라도 그것이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상품표지로 인식된 경우 또는 주지, 저명한 상표인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타인의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등록배제적인 효력을 갖는다.³⁾ 이는 상표의 사용에 의하여 형성된 사실 상태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또한, 등록주의의 보완책으로서 상표의 선사용자에게 그 상표를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진정한 상표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모방상표의 등록으로 인한 기대이익을 차단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인 선사용권 제도를 두고 있다. 다만, 본 규정의 신설이전의 상표권자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2007년 7월 1일 이후의 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에 대해서만 주장이 가능하며, 법적안정성을 위해 사용사실에 대한 일반수요자의 인정으로서 상표로서 인식될 것⁴⁾이 필요하다.

이하에서 각각의 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甲이 乙에게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II. 乙의 침해주장의 타당성

1. 선사용권

(1) 의의 및 취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자로서,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상표를 사용하고 있고, 그 결과 타인의 상표등록출원시에 국내의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경우에, 그 사용자 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

속하여 사용할 권리를 갖는데, 이를 소위 ‘선사용권’ 이라 한다.

(2) 적용요건

국내에서의 사용이 요건이므로, 외국에서 널리 알려진 상표라도 국내에서의 사용 실적이 없으면 선사용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사용이란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각 목의 행위를 말하므로 광고적 사용만으로도 족하다.

타인의 상표등록출원시에 국내의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었을 것을 요한다. 인식의 정도는 국내의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으면 족하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수준을 말한다. 국내의 수요자 간에 인식되어야 하므로 외국의 수요자간에만 인식된 경우에는 선사용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 내지 제11호의 부등록사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소한 지역에서 수요자간에 인식된 경우라도 선사용권이 인정된다.

2. 권리남용의 항변

(1) 상표권의 행사가 상표법의 목적을 일탈하는 경우

대법원 판례는 상대방에 대한 상표권의 행사가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와 수요자의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상표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여 공정한 경쟁질서와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수요자 사이에 혼동을 초래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표권의 행사는 비록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등록상표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고, 상표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위와 같은 근거에

1) 상표법 제41조 제1항
 2) 최성우, OVA상표법, 228면
 3)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 내지 제12호
 4) 인식의 정도는 국내의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었으면 족하다. 다만, 선사용자의 사실상태로서의 신용을 보호한다는 취지 상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 내지 제11호의 부등록사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소한 지역에서 수요자 간에 인식된 경우라도 선사용권이 인정된다.

비추어 볼 때 상표권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주관적 요건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태도이다.

사안에서 乙이 甲의 사용표장이 미등록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甲과의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오히려 甲의 사용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받아 甲에게 사용금지를 행사하는 것은 상표법의 목적에 어긋나고, 등록주의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2) 무효가 명백한 권리에 기한 권리행사

최근 대법원은 특허의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특허권침해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은 특허에 무효 사유가 있는 것이 명백한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고, 심리한 결과 당해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는 것이 분명한 때에는 그 특허권에 기초한 금지와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의할 때에 후술하는 것과 같이 을의 등록상표에는 무효사유가 명백하기 때문에 사용금지효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항변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소송경제의 취지상 타당한 태도이나, 이는 등록상표의 효력을 무효심결확정 등에 의하지 않고 부정하는 결과로서 등록주의의 예외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판례의 적용은 엄격히 보아야 할 것이 타당하므로 법 제7조 제1항 제7호 등과 같이 무효사유가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이 타당할 것이다.

3. 소결

상기와 같이 乙의 甲에 대한 침해주장은 선사용권 및 권리남용의 항변을 통해 적법하지 않게 되어 甲에게 사용금지 효를 주장할 수 없다.

III. 甲의 乙의 등록상표에 대한 조치

1. 법 제7조 제1항 제9호

(1) 의의 및 취지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 이러한 상표를 소위 주지상표라고 하는데, 등록된 주지상표는 선등록 상표권에 관한 규정⁵⁾에 의하여도 중복적으로 보호가 가능하다.

(2) 본 호는 선사용의 주지상표에 대하여 등록주의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서, 판례는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고 나아가 주지상표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있다”고 보아 공익규정설과 사익규정설을 절충하는 태도이다.

(3) 상표가 동일·유사하고 상품이 동일·유사할 것
상표법은 사용사실 상태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상품출처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등록 주지상표의 등록배제 효력을 유사범위까지 인정하고 있다. 본 호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와 마찬가지로 일반적 출처혼동에 관한 것으로 상표와 유사성을 판단하면 족하고, 개별적·구체적인 거래실정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⁶⁾

(4) 소결

i) 乙의 출원 시에 이미 甲의 서비스표는 국내에서 주지, 저명성을 인정받고 있고, ii) 양 표장이 극히 유사하고, iii) ‘가구류 판매업’ 과 ‘가구류’ 사이에 동종성이 있어 출처의 오인, 혼동을 가져오므로 본 호가 적용된다.

2. 법 제7조 제1항 제10호

(1) 의의 및 취지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을 받지 못한다. 동일·유사한 상품뿐만 아니라 이종상품 및 이종영업에 이르기까지 특정인의 상표로 일반소비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를 소위 저명상표라 하며, 저명상표는 그 상품의 우수성 때문에 대중의 심리에 양질감 내지 저명감정을 획득하고 있어 그 자체가 상품과 영업의 출처를 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상표법은 저명한 상품 또는 영업과의 혼동으로 인한 부정경쟁을 방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형식적 유사의 개념을 벗어나 저명상표와 혼동의 염려가 있는 상표를 부등록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2) 혼동의 염려가 있을 것

혼동이라 함은 대상의 동일성에 대한 인식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혼동이라 함은 대비되는 두 개의 상표품이 시장에서 유통될 경우 거래계의 일반적 경험칙에 비추어 이들 상품의 거래자 및 수요자가 두 상품이 동일한 생산자와 판매자에 의하여 생산·판매된 것을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본 호의 규정에 있어서 부등록사유로의 혼동은 이러한 일반적, 추상적 출처혼동의 유무를 심사하는 것을 충분하다.

(3) 소결

i) 乙의 출원 시에 이미 甲의 서비스표는 국내에서 주지, 저명성을 인정받고 있고, ii) 양 표장이 극히 유사하고, iii) ‘가구류 판매업’ 과 ‘가구류’ 사이에 동종성이 있어 출처의 오인, 혼동을 가져오므로 본 호가 적용된다.

3. 법 제7조 제1항 제11호

(1) 의의 및 취지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식별력이 있는 경우에도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상품의 품질보증기능 및 출처표시기능을 보호함으로써 상품의 품질오인 또는 출처의 혼동으로부터 생길 수 있는 일반 수요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상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공익규정이다.

(2) 수요자기만의 요건

판례는 ‘상품출처의 오인을 초래하여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등록을 거절함으로써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를 보호’ 하기 위한 규정이라 하여 본 호의 후단을 제9호 및 제10호 이외에 상품출처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또 다른 규정으로 보고 있다.

본 호의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i)인용상표나 그 사용상품이 반드시 주지, 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하며, ii)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인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유사해야 함이 원칙이다.

다만, 인용상표의 구체적인 사용실태나 두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사이에 경제적인 관련성의 정도 기타 일반적인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그 상표가 인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된 경우에 못지않을 정도로 인용상표권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이라고 오인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경우라면, 비록 인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된 경우가 아니라고 할 지라도 본 호가 적용될 수 있다.

(3) 소결

판례의 기준에 의할 경우, i) 乙의 등록여부결정시에 이미 甲의 상표는 주지, 저명성을 획득하였고, ii) 양 표장이 유사하고, 상품의 동종성이 인정되므로 본 호가 적용된다.

4. 법 제7조 제1항 제12호

(1) 의의 및 취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지 못한다.

제3자가 출처혼동의 우려가 없는 비유사한 상품에 출원하거나, 외국에서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출원한 경우에 상표등록을 허용함은 상표법의 목적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거절의 근거가 없어

5)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6) 최성우, OVA상표법, 191면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최근에는 모방상표로부터 효과적인 보호를 하기 위해 주지도를 제9호에서 제11호의 정도로 낮추었다.

상표제도가 국제화되고 파리협약상의 속지주의 원칙이 수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외국 상표들이 선원주의와 등록주의가 갖는 한계 때문에 적절히 보호를 받지 못해 통상마찰을 야기시키는 한편 국내 기업 간에도 특정인의 상품표지로 상당히 알려진 상표들이 이중 상품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 선점당하여 거래질서의 혼란을 초래해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상표권의 희석화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실익이 있다.

(2) 상표 및 상품의 범위

본 호는 국내외의 특정인의 상품출처로서 인식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한하여 적용된다. 그러나 상품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 내지 제11호가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에도 본 호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존재한다.

(3) 부정한 목적

법문상의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것은 부정한 목적의 예시이며, 원 상표권자가 국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저지하거나 또는 대리점계약 체결을 강제할 목적으로 상표권자가 미처 등록하지 않은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출원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 나아가 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하더라도 저명상표의 출처표시기능을 희석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원한 경우에도 부정한 목적에 의한 것으로 취급된다.

(4) 소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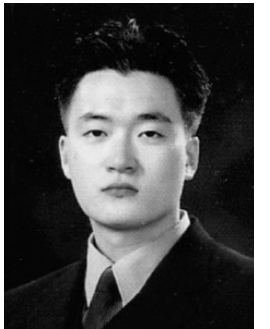
乙이 상표출원을 하는 시점에 이미 甲의 표장은 저명성을 인정받고 있었다는 점, 乙의 사용상품을 수요자들은 甲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乙에게 부정한 목적은 인정될 것이다. 따라서 본 규정에 의해 乙의 등록상표는 무효될 것이다.



새로운 디자인이지만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 _ 창작비용이성

김 응

연세대학교 생물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
한국특허아카데미 디자인보호법 전임 (2005년부터 2007년 7월까지)
합격의법학원 디자인보호법 전임 (2007년 8월부터 현재까지)
(현) 리&목 특허법인 근무



I. 서설

1. 디자인보호법상 등록요건 중 하나인 창작비용이성의 의미 및 취지

제5조제2항에 의하면 출원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 또는 공연실시된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신규성 상실사유에 해당하는 5조1항각호의1에 해당하는 디자인은 제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이는 용이창작이 가능한 디자인에 대해 특정인에게 독점배타권을 부여하는 것은 범목적에 반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창작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참조) 산업재산권법 상의 관련 법규정과의 상호비교

구분	각 산업재산권법상 상호 비교
특허법	제29조 (특허요건) ②특허출원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그 발명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실용신안법	제4조 (실용신안등록의 요건) ②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고안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그 고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
디자인보호법	제5조 (디자인등록의 요건) ②디자인등록출원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디자인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상표법	-

2. 연혁 및 개정법의 태도

(1) 2005년 7월 1일 시행법

종래 제5조제2항에서는 창작비용이성 판단의 기초자료를 국내주지형태로 국한하였으나, 2005년 7월 1일 시행법은 공지디자인의 결합을 창작비용이성 판단의 인용자료로 추가하였다. 이는 창작비용이성 판단의 인용자료를 국내외 공지디자인 등으로 확대하여 창작비용이성이 낮은 디

자인은 등록될 수 없도록 하였다. 종래 제8조적용의 효과로서 출원디자인에 있어서 공지 등에 의해 신규성 상실의 예외임을 규정하였던 것을 창작비용이성의 인용자료에 공지디자인의 결합이 포함되면서(제5조제2항) 2005년 7월 1일 시행법은 신규성 및 창작비용이성의 판단 시에도 당해 공지 등의 행위가 인용자료로 되지 아니함을 규정하였다.(제8조제1항 참고)

(2) 2007년 7월 1일 시행법

무심사등록출원도 제5조제2항의 창작비용이성 규정을 심사항목에 포함하여 국내에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한 용이창작인 경우 거절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제26조제2항 참고) 이는 창작비용이성 유무에 대한 판단 중 국내주지형태에 의한 용이창작인지 여부는 선행디자인을 검색하지 아니하더라도 쉽게 판단이 가능하여 이를 심사하더라도 신속한 권리부여라는 무심사등록제도의 취지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3. 창작비용이성 판단의 전제

디자인의 성립요건, 공업상 이용가능성 및 신규성 여부 판단을 전제로 한다. 출원디자인이 공지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하기도 하고, 국내주지형태 또는 공지등이 된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도 있는 경우에는 신규성 규정을 적용한다.(제5조제2항괄호)

II. 창작비용이성의 적용요건

1. 주체적 요건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즉 당업자를 기준으로 한다. 당업자란 그 디자인을 표현하는 물품을 실시하는 업계에서 그 디자인에 관한 보편적 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객체적 요건

(1) 판단대상 및 판단방법

디자인등록출원전 국내외에서 공지 등이 된 디자인의 결합 또는 국내주지형태와 출원디자인을 상호비교하여 용

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여부로 판단한다.

(2) 공지 등이 된 디자인의 결합을 기초로 한 용이 창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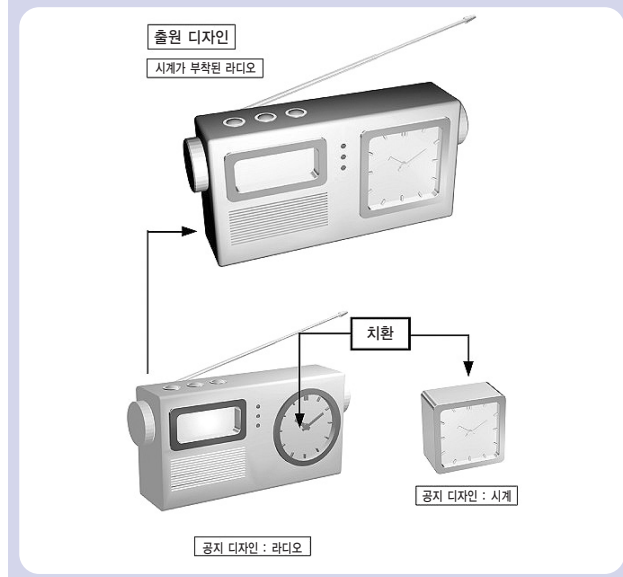
1) 공지 등이 된 디자인이란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또는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디자인을 말한다.

2)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① 디자인의 구성요소의 일부분을 다른 디자인으로 치환하는 치환디자인, ② 복수의 디자인을 합하여 하나의 디자인을 구성하는 디자인, ③ 디자인의 구성요소의 배치변경에 의한 배치변경디자인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물품의 용도, 기능, 형태 등의 관련성으로 인하여 그 디자인의 결합이 당업계의 상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용이창작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하, 구체적인 사례 유형을 심사기준 제5조제3항에 의한 예시를 기준으로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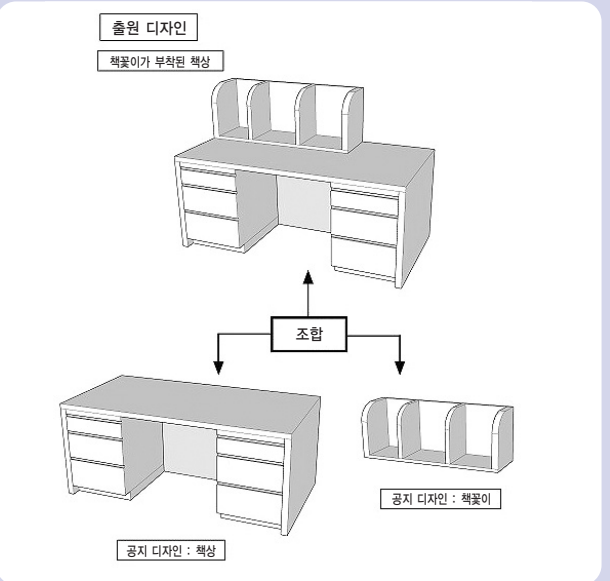
○ 디자인의 구성요소의 일부분을 다른 디자인으로 치환하는 용이창작의 예 : 공지의 시계가 부착된 라디오의 시계부분을 단순히 다른 시계의 형상 등으로 치환한 시계가 부착된 라디오

【사례】



○ 복수의 디자인을 합하여 하나의 디자인을 구성하는 용이창작의 예 : 공지의 책상 형상에 공지의 책꽂이 형상을 부착하여 이루어진 책꽂이가 부착된 책상

【사례】



○ 디자인 구성요소의 배치변경에 의한 용이창작의 예 : 공지 디자인의 구성요소의 배치를 변경한 것에 지나지 않는 전화기

【사례】



다만, 제3 유형인 디자인의 구성요소의 배치변경에 의한 배치변경디자인이 공지 등이 된 디자인의 결합을 기초로 한 용이창작의 유형인지는 의문이다. 심사기준은 공지디자인인 전화기와 출원디자인인 전화기의 외관상 단순 배치 변경만을 비교하여 출원디자인이 창작비용이성 위반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상기 유형은 디자인의 구성요소, 즉 형태의 단순 변경이라 할 것이므로 동일한 물품(전화기)을 전제로 상호 유사한 디자인인지 여부, 즉 신규성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이라고 판단된다.

(3) 국내주지형태를 기초로 한 용이창작

1) 주지형태로부터의 용이창작

삼각형 등의 평면적 형상, 원기둥 등의 입체적 형상, 비행기 등의 물품의 전형적 형상, 비독판 무늬 등의 흔한 모양이 이에 해당한다. 색채는 모양을 이루는 경우에 한하여 판단요소로 하고 단일색으로 칠하여진 것은 창작비용이성 판단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자연물 등에 기초한 용이창작

자연물, 유명한 저작물, 유명한 건조물, 유명한 경치, 운동경기, 각종행사장면 등을 기초로 하여 용이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을 의미한다.

3) 주지디자인에 기초한 용이창작

주지디자인이란 당업계에서 간행물이나 TV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는 디자인을 말한다. ① 이종물품 간에 디자인의 전용이 그 업계의 관행으로 되어 있는 경우(예컨대, 자동차나 비행기 등의 디자인을 완구나 장치물에 전용 등), ② 이종물품 간에 물품의 용도, 기능, 형태 등의 관련성으로 인하여 디자인의 전용이 당업계의 상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예컨대, ET인형의 형상·모양을 저금통에 전용, 탁상용 시계의 형상·모양을 라디오에 전용 등)

4) 다만, 자연물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이 특이한 것이 주지가 아니며, 건조물, 경치라도 보는 각도에 의하여 특징을 지니도록 표현되어 있으면 주지가 아니다.

이하, 구체적인 사례 유형을 심사기준 제5조제3항에 의한 예시를 기준으로 설명한다.

○ 평면적 형상의 예



○ 입체적 형상의 예

-기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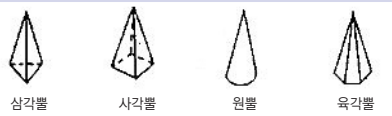
-통



-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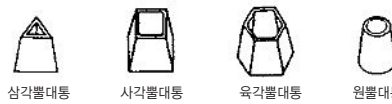
-뿔



-뿔대



-뿔대통



-정다면체



-기타



○ 물품의 전형적인 형상의 예 : 비행기, 자동차, 기차 등의 전형적인 형상

○ 흔한 모양의 예 : 봉황무늬, 거북등무늬, 바둑판무늬, 물방울무늬, 곤무늬 등

○ 색채 : 색채가 모양을 이루는 경우에 한하여 판단요소로 하고 단일색으로 칠하여진 것은 창작비용이성 판단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 자연물, 유명한 저작물, 유명한 건조물, 유명한 경치 등을 기초로 한 용이창작

○ 자연물 : 새, 물고기, 소, 대나무잎, 꽃잎, 소나무, 나무결, 돌, 바위 등

※ 자연물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이 특이한 것은 「주지」가 아니다.

(예) 꽃잎, 곤충의 발 등 자연물의 일부를 특이한 각도에서 현미경으로 확대하여 본 확대사진 등

○ 저작물 : 김홍도의 풍속도, 만화 주인공 “뽀빠이” 등 널리 알려진 그림, 조각, 만화, 영화 등

○ 건조물 : 남대문, 남산타워, 자유의 여신상, 에펠탑, 불국사, 올림픽 주경기장 등 널리 알려진 건조물

○ 경 치 : 백두산천지, 금강산, 한라산 백록담, 후지산, 나이아가라폭포 등 유명한 경치

○ 운동경기 또는 각종 행사장면 : 삼일절 행사장면, 올림픽경기 개최장면, 축구경기, 배구경기 등 각종경기의 장면이 사실적으로 표현된 것

※ 건조물이나 경치라도 보는 각도에 의하여 특징을 지니도록 표현되어 있으면 「주지」가 아니다.

라. 주지디자인을 기초로 한 용이 창작은 다음의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1) 당업계에서 간행물이나 T.V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는 디자인을 『주지디자인』으로 본다.

(2) 주지디자인에 의한 용이창작의 유형

○ 이종 물품 간의 디자인의 전용이 그 업계의 관행으로 되어 있는 경우

(예) 자동차나 비행기 등의 디자인을 완구나 장치물에 전용 등

○ 물품의 용도, 기능, 형태 등의 관련성으로 인하여 이종 물품 간의 디자인의 전용이 당업계의 상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예) - ET인형의 형상·모양을 저금통에 전용 등

- 탁상용 시계의 형상·모양을 라디오에 전용 등

(4) 용이창작 여부 판단

1)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정도란 공지 등이 된 디자인 또는 주지형태 등을 거의 그대로 모방하거나 그 가하여진 변화가 단순한 상업적 변화에 지나지 않는 것을 말한다.(예컨대, 공지된 사각형 천정판 측면에 경사면을 표현한 정도의 것, 주지의 난형(卵形)을 뚜껑과 몸체로 분리하여 과자용기를 만드는 것 등) 상업적 변화란 동 업계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당해 디자인이 그 물품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정도의 변화를 말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지 등이 된 디자인 또는 주지형태 등을 거의 그대로 이용 또는 전용하거나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이들을 취사선택하여 결합한 것으로서 그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새로운 미감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시기적 요건

출원 시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분할출원의 경우에는 원출원시, 조약우선권주장출원의 경우에는 제1국 출원시, 무권리자출원에 대한 정당권리자출원의 경우에는 무권리자출원 시가 기준이 된다. 한편, 실체보정이 요지변경으로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후에 인정된 때에는 그 보정서를 제출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제18조제6항)

4. 지역적 요건

2005년 7월 1일 시행법에 의하면 창작비용이성 판단의 인용자료가 공지 등이 된 디자인의 결합으로 확대됨에 따라 창작비용이성 판단의 인용자료의 지역적 범위는 국제주의 및 국내주의를 병행하게 되었다.

III. 창작비용이성 위반의 효과 및 극복 조치

1. 등록요건의 흠결

(1) 심사등록출원의 경우 거절이유, 정보제공사유,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2) 무심사등록출원의 경우

1) 국내주지형태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의 경우에는 거절이유, 정보제공사유, 무심사이의신청이유, 무효사유에 해당한다.(제26조제2항)

2) 공지디자인의 결합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거절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제26조제2항) 정보제공사유, 이의신청이유,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무심사등록출원에 대하여 정보제공이 있는 때에는 그 제공된 정보 및 증거에 근거하여 창작비용이성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제26조제3항)

2. 출원인의 조치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디자인은 그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자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 대하여 창작비용이성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제8조제1항)

3. 증거제시 여부

(1)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공지공용의 디자인을 창작비용이성 판단의 기초 자료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지공용의 디자인이 게재된 간행물의 서지사항, 디자인 또는 당해 디자인이 게재된 웹사이트의 주소, 화면 등을 의 견제출통지서에 첨부하여 디자인 등록 출원인에게 당해 공지공용의 디자인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다만, 주지형태 또는 주지디자인을 창작비용이성 판단의 기초자료로 하는 경우에는 증거의 제시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IV. 관련문제

1. 물품과의 가분성

창작비용이성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모든 물품에 대해서 적용된다. 즉, 신규성 판단시와는 달리 물품의 동일유사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도 적용이 가능하다.

2. 출원디자인의 구성물 등이 전부 또는 일부가 공지된 경우 창작비용이성 여부

원칙적으로 출원된 디자인의 구성물품 또는 부품(부속품) 디자인 모두가 공지된 경우만을 용이창작으로 판단한다. 다만, 출원된 디자인의 일부 구성물품 또는 부품(부속품)이 공지되지 않은 경우(제8조의 적용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전체적인 미감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용이창작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부분디자인의 경우 창작비용이성 판단

부분디자인의 용이창작에 관한 판단기준은 전체디자인의 용이창작에 관한 판단기준에 따른다.

4. 타법과의 비교

특허 및 실용신안법은 진보성을 요구하는 바 이는 발전적으로 향상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디자인의 창작비용이성은 종전디자인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면 족하다. 저작권법상 저작물도 창작비용이성이 요구되는데, 이는 모방이 아니면 족한 주관적 창작비용이성을 의미한다.

5. 창작비용이성 판단자료의 범위문제

(1) 관련규정

1) 제5조 (디자인등록의 요건) ② 디자인등록출원전에 그 디자인

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디자인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2) 심사기준 제5조제3항제2호(용이창작의 유형)

가.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또는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디자인의 결합에 기초한 용이창작. 다만, 물품의 용도, 기능, 형태 등의 관련성으로 인하여 그 디자인의 결합이 당 업계의 상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용이창작으로 보지 아니한다.

(2) 1990년 이전 구의장법의 태도 및 현행법의 태도

1) 종래에는 공지디자인으로부터 용이창작한 디자인을 제5조제2항으로 거절했다. 그러나 현행법에 의하면 제5조제2항괄호에서 “제1항각호의1에 해당하는 디자인을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공지디자인으로부터는 오직 디자인의 동일 또는 유사판단(신규성 판단)만을 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인용자료가 공지디자인인 경우 제5조제2항으로 거절할 수 없고, 제5조제1항으로만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창작비용이성 판단은 주관적으로 흐르기 쉬운데 비해 동일 또는 유사여부는 창작비용이성 판단보다는 객관성 확보가 용이하므로 동일 또는 유사물품 간에 있어서 제5조2항의 적용남발을 막고, 제5조제1항 규정의 사문화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2) 종래 판례에 의하면 디자인보호법 제5조제2항은 국내의 주지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대한 규정으로서 공지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대한 규정이 아니다.(98허9406, 98허9383)라고 판시하였다.

(3) 2005년 7월 1일 시행법의 경우

1) 문제점

제5조제2항에 의하면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이라고 하는 문언에서 “디자인의 결합”이란 표현을 둘러싸고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규정

상으로 문리해석하면 공지디자인 또는 간행물 게재 등의 디자인의 결합일 것을 요한다.

2) 견해의 대립

1설)

제5조제2항을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우에는 공지디자인 또는 간행물 게재 등의 디자인 그 자체는 창작비용이성 판단의 기초자료로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규정의 개정취지와 맞지 않게 되고, 또 본조의 개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2005년 7월 1일 시행법의 취지는 디자인의 창작비용이성 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 창작비용이성의 판단의 기초자료에 대해 그 범위를 넓혀 국내 외에서 공지된 디자인 또는 간행물 게재 등의 디자인도 창작비용이성 판단의 기초자료로 하려는 것이므로 여기서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이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이라고 해석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제5조제2항에서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이라고 표현한 것은 입법상의 중대한 과오이거나 법리오해에 의한 착오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2설)

제5조제2항이 거절이유가 되는 만큼 법규정 자체로 해석을 하여야 한다고 판단되어 공지디자인은 여전히 유사판단의 인용자료에 머무는 것이며, 단순히 공지디자인의 결합으로부터 용이창작가능한 디자인을 출원한 경우 이를 거절하고자 함이 이번 개정법의 취지이다.

3) 검토

원칙적으로는 제5조제2항 법규정을 문리해석하여 창작비용이성 판단의 기초자료를 공지디자인 단독이 아닌 공지디자인의 결합으로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 “공지디자인의 결합”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라는 것은 “공지디자인”으

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라는 것보다 보다 제한적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등록요건을 판단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를 함부로 확대해석하여 거절한다면 출원인에게 불측의 손해가 생기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창작비용이성 요건 강화측면에서 제5조제2항을 더욱 엄격히 해석하면 공지디자인 자체를 창작비용이성 판단의 기초자료로 해석하는 것 또한 깊이 고려할 가치가 있다. 신규성과 창작비용이성은 그 판단방법 자체가 상이한 규정이므로 출원디자인과 공지디자인 사이에서 동일 또는 유사물품간에 형태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는 신규성 위반으로 거절하고, “비유사물품간”에 그 창작적 가치가 용이한 관계인 경우에는 창작비용이성 위반으로 거절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창작비용이성 판단을 엄격히 하여 더욱 창작 가치가 있는 디자인의 등록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V. 결어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등록요건으로서 공업상 이용가능하고 신규한 디자인을 전제로 창작비용이성을 규정함으로써 출원디자인에 대해 일정한 창작적 가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신규한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일정 수준이상의 창작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을 불허하겠다는 취지라 할 것이다. 한편, 2005년 7월 1일 시행법에 의하면 창작비용이성 판단의 인용대상이 공지 등이 된 디자인의 결합으로 확대되었고, 2007년 7월 1일 시행법에 의하면 무심사 등록출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국내주지형태로부터 용이창작한 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창작비용이성 여부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었다고 할 것이다.

발명특허 2009. 6



브로드웨이의 실력과 뮤지컬 배우에서
매력적인 보컬리스트로

이소정, 쇼팽을 노래하다

쇼팽 피아노곡을 보컬로 재해석한 새로운 장르 개척

쇼팽의 아름답고 서정적인 선율이 뛰어난 상상력이 가미된 이소정의 매력적인 목소리로 노래된다.

‘즉흥환상곡(Impromptu in C Sharp minor, Op. 6)’, ‘빗방울 전주곡(Prelude in D-flat Major)’, ‘이별의 곡(Etude No. 3 in E Major)’ 등 쇼팽의 피아노 곡을 직접 편곡하고 가사를 붙여 노래한 쇼팽 음반을 내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이소정이 오는 6월 29일(월), 30(화)일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에서 <이소정, 쇼팽을 노래하다> 공연으로 관객을 만난다.

이번 공연에서는 이소정이 편곡하고 가사를 붙여 노래하는 쇼팽의 16곡들 외에도 역시 ‘쇼팽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소정의 독특한 쇼팽 해석에 매혹된’ 루마니아의 야심만만한 피아니스트 소린 크레시운(Sorin Creciu)이 쇼팽 플로네이즈 6번(영웅), 왈츠 6번(강아지왈츠) 등을 유려한 피아노 독주로 선보인다.

직접 기획, 편곡, 가사 작업하며 이소정의 다재다능함 유감없이 펼쳐

보컬리스트 이소정은 대중들에게 뮤지컬 배우로 더 잘 알려져 있다. 90년대 미국으로 건너가 세계 4대 뮤지컬 ‘미스 사이공’의 주인공 ‘킴’으로 미국 20여 개 주요 도시에서 호평을 받은 후 ‘98년에는 한국인 최초로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킴’을 공연했다. 이후 이소정은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주요 뮤지컬 무대에서 이름을 떨쳤다. 그러나 이소정의 음악적 출발은 뮤지컬이 아니라 클래식, 그 중에서도 쇼팽이다.

“열 다섯 살 무렵 피아노 리사이틀을 준비하면서 쇼팽의 작품을 만나 사랑에 빠졌어요. 책장의 한구석을 빼곡히 메운 쇼팽 서적이 너무나 뿌듯했지요.”

뮤지컬 배우로 일하면서 클래식과 잠시 멀어졌지만, 홀로 떠난 미국 유학시절의 고독을 달래준 것은 어린 시절 만난 쇼팽의 선율이었다. 그래서 뮤지컬 배우로서의 최전성기를 거쳐 이제 제2의 음악 인생을 시작해야 할 시점, 이소정은 주저 없이 쇼팽을 택했다. 뮤지컬처럼 극 중 캐릭터를 통하지 않고 ‘나 자신’으로 관객과 만나는 첫 무대이니만큼 자신이 좋아하고 그래서 오래 고민한 흔적을 진솔하게 담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쇼팽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소정은 쇼팽의 ‘즉흥환상곡’ ‘혁명’ ‘이별의 곡’ 등 쇼팽의 원곡 중 몇 곡은 멜로디 부분을 발췌하고 템포를 조정했고, ‘웨이브 오브 라이프(Wave of life)’라 제목을 붙인 쇼팽 에튀드 작품 25의 12번인 ‘오션’은 원곡을 그대로 살렸다. 이 곡은 특히 쇼팽에게 헌정하는 의미를 가진다. 쇼팽의 곡을 보컬곡으로 탈바꿈한다는 음악적인 아이디어에 모든 곡을 직접 편곡하고 가사를 붙인 이소정의 다재다능함은 한일 합작드라마 ‘Friends’와 영화 ‘봄날은 간다’의 OST 작사와 노래 등에서 이미 잠시 선보인 바 있다.

보컬과 피아노 연주가 ‘따로 또 같이’ 펼쳐지는 낭만적인 무대

6월 29, 30일<이소정, 쇼팽을 노래하다>에서 함께 연주할 젊고 열정적인 피아니스트 소린 크레시운(Sorin Creciu)은 루마니아 출신으로 유럽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이번 만남은 이소정의 쇼팽 음반에 매혹된 소린 크레시운(Sorin Creciu)이 이소정 측에 먼저 연락을 취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서로의 음악에 대한 존중과 애정이 이루어낼 하모니는<이소정, 쇼팽을 노래하다> 콘서트의 의미를 더할 것이다. 소린 크레시운(Sorin Creciu)은 베를린 피아노 콩쿨을 비롯한 유럽의 주요 콩쿨에서 수상하고 에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을 비롯한 주요 오케스트라들과의 공연, 실내악, 독주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세계 무대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젊고 열정적인 피아니스트와 보컬의 매력적인 하모니, <이소정, 쇼팽을 노래하다>는 쇼팽 서거160년을 기념하고 동시에 쇼팽의 고국인 폴란드와 한국 수교 20주년을 축하하는 2009년의 가장 아름다운 공연으로 기록될 것이다.

발명만화

아무도 몰랐던 몰래발명이야기 82

건강하게 삽시다

화 조절하기 84

즐거운 퍼즐

86

IP Information

아무도 몰랐던 미래발명이야기

「수정액」

글·그림
김민재

어느날 갑자기 등장해
문구사에 돌풍을 일으킨 문구류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이렇듯 문구류의 한 획을 그은만한
수정액은 어떻게 탄생하였을까?



제아무리 강력한 매직펜으로
썼다하더라도 수정액만 있으면
단번에 깨끗하게 지울수가
있었으니 실로 놀라움을 금치 못할
문구류였다.

하지만 수정액이 좀
많이 든다는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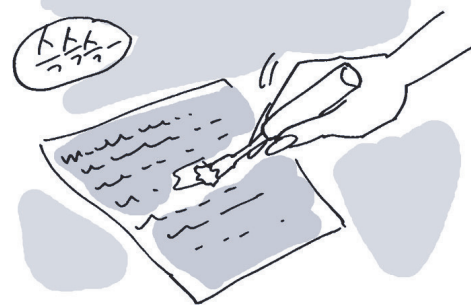


달라스 은행의 비서직을 맡고
있는 네스미스 그레함.

내가 생각해도
타이핑 솜씨가 영
서툴다니깐... -1951년-



그녀의 타이핑은 너무도 서툴러
오타가 난무했다. 그럴때면
그녀는 병에 몇가지의 템페라
페인트를 섞은후 작은 붓으로...



결국 그녀는 이 페인트가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란 확신을
하게 되었고 사업을 확장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는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갔다.



감쪽같이 틀린글자를 수정한 그녀.
이러한 그녀만의 비법은 곧 소문이나게
되었고 그녀는 이윽고



그녀의 연구는 성공하였고 제품에
리퀴드 페이퍼 (Liquid paper,
수정액) 이란 이름으로 특허를 내었다.
이후 그녀의 수정액은 해를 거듭해
갈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화 조절하기

대구 마음과 마음 정신과 김성미

여러분은 화가 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 하나요? 아니면 소리를 버럭 지르고 물건이라도 집어던지나요?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화! 그 정체는 무엇일까. 우선 화는 여러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다. 첫째 화가 나면 누구에게나 반복되는 신체적 얼굴이 있다. 교감신경이 항진되면서 혈압이 오르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소화가 되지 않는다. 둘째 생각(인지)의 얼굴로, '억울하다, 네 탓이다.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며 원망과 분노에 집착하게 한다. 세 번째로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게 없으면서 행동화하게 되는 행동화하는 측면이다.

고요함을 깨뜨리는 감정, 화는 왜 생기는 것일까. 먼저 화라는 감정은 자연스런 반응이다. 내가 어떤 이유 때문에 기분이 상했다는 신호이다. 남에게 배려 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거나, 오해가 생겼을 때 등 뭔가 잘못된 것에 대해 자신을 보호하려는 일종의 사이렌이다. 그러므로 나의 화난 감정 상태를 남에게 알리는 것은 내 자존심을 높이

는 일이다. 분노는 나의 힘! 평소 미루던 일을 화가 났을 때 해치우기도 하고, 묵혀두었던 억울함을 상대방에게 말할 기회를 가지기도 한다. 싸우고 나서 더 친해질 수 있듯이, 화를 표현함으로써 대인관계가 더 친밀해지는 계기도 된다.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 화를 표현하는 유형도 여러 가지다. 성난 표정을 지으며, 욕설을 하며 싸우는 경우(anger-out), 화가 나지만 드러내지 않고, 속으로 비판하거나 아예 피해버리는 경우(anger-in), 그리고 화가 치밀지만 냉정심을 잃지 않고 조절을 잘 하는 경우이다.(anger-control)

우리나라는 유교의 영향 탓인지 화내는 것은 나쁘고 잘 참는 사람은 착하다고 간주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화내는 것을 두려워한다. '너 지금 화났지?' 라고 물으면, 분명히 화난 표정인데도 안 났다고 한다. 화를 억누르자면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어 쉽게 피곤해지고 사는 낙이 없어진다. 담아두고, 쌓아두다가 병이 된다.

화를 부인하는 방법도 가지가지다. 화가 나면 그냥 막 울어버리고, 이불 뒤집어쓰고 잠을 자거나, 폭식을 하고, 방에 틀어박혀있거나, 핫김에 술을 마시거나, 게임에 몰두한다. 화를 억누르는 것은 강박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에 불타지만, '난 아버지를 미워한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 라는 속죄의 의식처럼 계속 손을 씻기도 한다. 화를 남에게 돌리지 않고 나 자신으로

향하는 것이 우울증이다.
화난 감정, 분노감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무조건 '화 내지 마라', '참아라' 고 하기보다는 회로애락이 인간의 자연스런 감정이기 때문에 화를 보듬고 조절하고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 분노조절법을 소개한다. 매일 연습하여 화 '잘 내는' 방법에 익숙해지도록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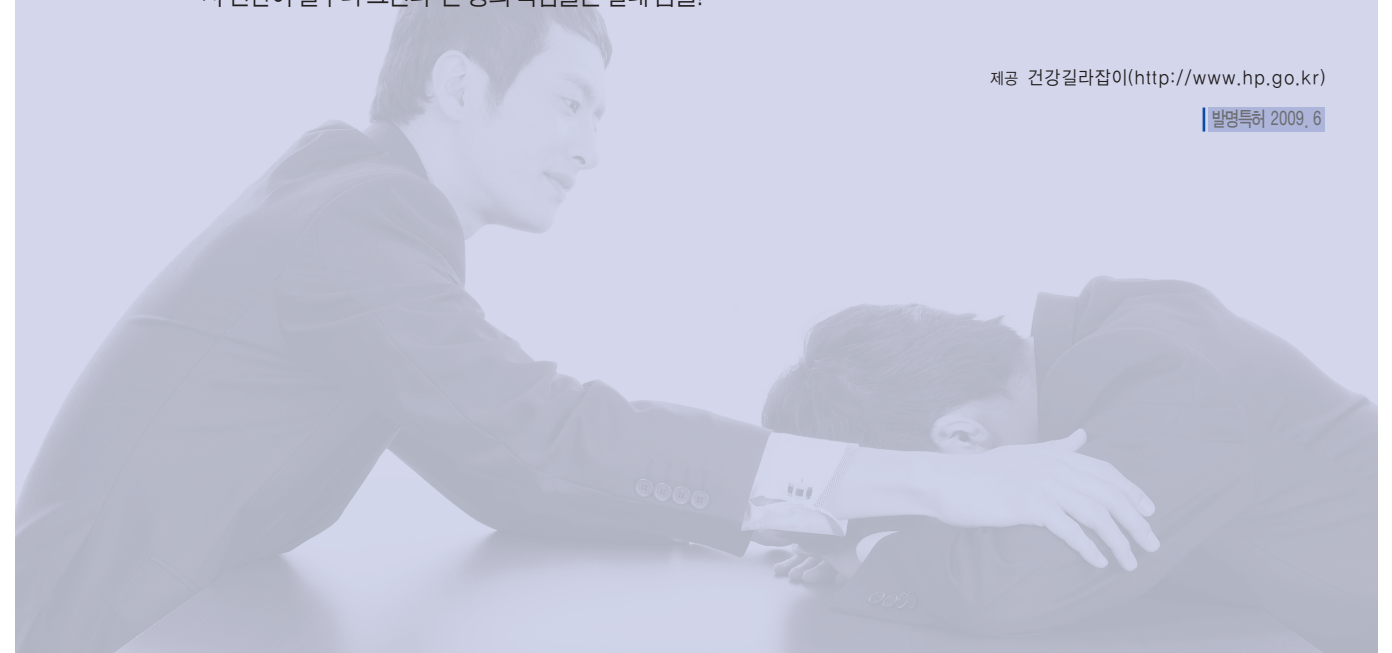
〈분노 조절법〉

화가 치밀어 올라 당장 주먹질이라도 하고 싶다면, 다음의 순서대로 해보자.

- 첫째, 혼자 말하기 :
 - 자신을 진정시키고 "침착하자" 고 되뇌인다
 - 이 일로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단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생긴 것뿐이라고 생각하자
 - 자기격려를 하자: "난 잘 할 수 있다"
- 둘째, 분노의 대가를 미리 생각해보자
 - "내가 화가 나서 ~하게 되면 ...게 될 것이다."
 - 예를 들면 아내를 구타했을 때 득과 실은 무엇인가
- 셋째, 분노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하자.
 -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욕구가 다를 뿐이다.
 - "나 전달법" 으로 일어난 사건과 나의 느낌을 말로 표현하도록 한다
 - 명령조로 하지 말고, 청유형으로 ~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자.
 - '저 인간이 일부러 그러다' 는 등의 독심술은 절대 금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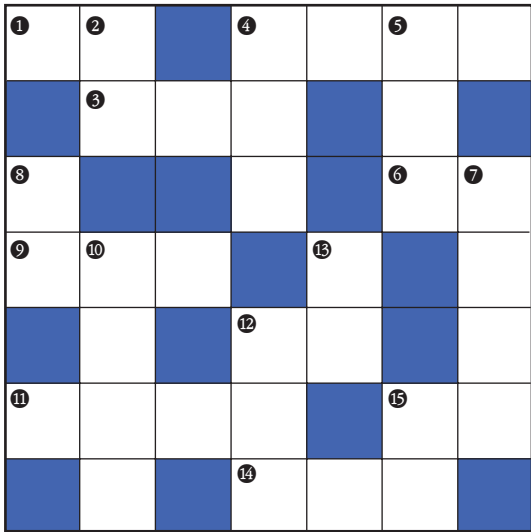
제공 건강길라잡이(<http://www.hp.go.kr>)

발명특허 2009. 6



PUZZLE

함께 풀어봅시다



가로열쇠

1.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것과 관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3. 물고기 따위에 불을 찌어서 말린 제품
4. 한비탕의 봄꿈이라는 뜻으로, 헛된 영화나 덧없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6. 망건에 달아 당줄을 꿰는 작은 단추모양의 고리. 신분에 따라 금(金), 옥(玉), 호박(琥珀), 마노, 대모(玳瑁), 뽕, 뼈 따위의 재료를 사용하였다.
9. 중국 전한(前漢)의 역사가(B.C.145~B.C.86). 자는 자장(子長). 기원전 104년에 공손경(公孫卿)과 함께 태초력(太初曆)을 제정하여 후세 역법의 기초를 세웠으며, 역사책 《사기》를 완성하였다.
11. 번영기 때의 발해를 중국에서 이르던 말
12. 팔려고 내놓은 물건
14. 여자들이 몸치장으로 한복 저고리의 고름이나 치마허리 따위에 다는 물건. 금, 은, 보석 따위에 명주실을 늘어뜨린 것으로, 단작(單作)과 삼작(三作)이 있다.
15. 보통 때 늘 입는 옷

세로열쇠

2. 귀양살이하는 곳을 다른 곳으로 옮김
4. 고려시대에, 공인(工人)들로 조직하여 노동을 전문으로 하던 군대. 주(州), 군(郡) 단위로 편성하였다.
5. 고려시대에 둔, 시정의 기록을 맡아보던 관아. 총렬왕 때에 사관과 함림원을 합하여 만든 예문춘추관을 충숙왕 때 고친 것으로, 후에 공양왕 때 다시 전 이름으로 고쳤다.
7. 같은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앞뒤가 서로 맞지 아니하고 모순됨
8. 무성 영화를 상영할 때 영화에 맞추어 그 내용을 설명하던 사람
10. 말의 귀에 동풍이 불어도 아랑곳하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남의 말을 귀담아듣지 아니하고 지나쳐 흘려버림을 이르는 말. 이백의 시에서 유래한 말이다.
12. 사사로운 이익을 위하여 나라의 주권이나 이권을 남의 나라에 팔아먹는 행위를 하는 사람
13.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따위의 재산 범죄에 의하여 불법으로 가진 타인 소유의 재물
15. 온상의 온도가 내려가거나 수분이 마르는 것을 막기 위하여 온상 위에 덮는 뚜껑

5월 호

즐거운 퍼즐 정답

단	오		오	리	무	중
	감	열	지		가	
감			랏		당	귀
언	해	본		건		주
	등		소	문		대
지	성	문	학		경	첩
	국		교	자	상	

즐거운 퍼즐 정답은 다음호에 게재하며, 정답자 중 3명을 추천하여 월간 <발명특허>지 1년 정기구독권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독자카드에 정답을 적어 매월 20일까지 보내주세요.

해외특허뉴스

해외특허동향, 해외특허정책, 해외특허분쟁

88

KIPA 소식

한국발명진흥회 행사 및 소식

96

KIPO 소식

특허청 소식

98

특허계 동향 특허계 소식

102

회원가입을 축하합니다!

103

발명365

104

ESI社, XSiL社의 반도체 웨이퍼 관련 지식재산권 매입

세 계적인 포토닉스, 레이저 시스템 전문업체인 Electro Scientific Industries社(ESI)는 아일랜드 XSiL사로부터 모든 지식재산권과 일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매입하였다고 발표했다. XSiL사는 강한 기술력과 견실한 특허 포트폴리오 등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반도체 웨이퍼 싱글레이션(wafer singulation) 어플리케이션의 파단강도 및 원료 처리량을 개선한 고수익 프로세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계약은 XSiL사의 주요 지식재산권을 Cignis 반도체 프로세싱 플랫폼에 적용하여 박막 웨이퍼 다이싱 장비를 개선하면서 ESI사의 2009년 4사분기 회계에 효력을 발생시킬 것이다.

ESI사 대표이사인 Nick Konidaris는 “7년여 간에 걸쳐 진행되어온 웨이퍼 레이저 다이싱 장비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XSiL사로 부터의 지식재산권 매입은 ESI사에게 가치 있는 프로세스 개발과 첨단 기술력을 제공해준다”라고 하며, “최근 모바일 장치에 적합한 더 많은 기능과 메모리공간에 대한 필요성으로 인해 얇은 형태의 실리콘 웨이퍼를 개별화할 수 있는 레이저 기반의 공정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Cignis 플랫폼 기술과 XSiL사의 기술을 접목시켜 신(新) 웨이퍼 레이저 다이싱 장비 시장에서 우리의 입지를 드높이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번 지식재산권 매입은 전 세계의 고객들에게 앞선 기술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한 예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 www.esi-group.com

홋카이도 대학 TLO 부서, 타 대학의 민간 기술이전 지원으로 업무 확장

호 카이도 대학은 지난 5월 11일, 대학기술이전촉진법에 근거한 기술이전기구(TLO)로서 문부과학성 장관과 경제산업성 장관의 승인을 받았다. 지난 4월, 홋카이도 대학 산학협력본부 내에 마련한 「TLO 부서」는 홋카이도 대학 이외에도 타 대학 등의 특허 출원이나 민간 기술이전 업무를 시작했다. 문부과학성에 의하면 국립대학법인의 학내 조직이 타 대학의 TLO 업무를 실시하는 케이스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였다.

TLO 부서는 지난 3월에 해산된 민간 기술이전기구인 홋카이도 TLO의 기능을 승계하기 위해 발족되었다. 현재는 산학협력력 코디네이터나 사무직원 등 14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그 중 3명은 홋카이도 TLO에서 승계된 인력이다. 향후 코디네이터 2명의 증원을 예정하고 있다.

TLO 부서에서는 홋카이도 소재 대학의 연구 성과를 특허로 출원하거나 특허 실시권을 민간 기업에게 유상으로 제공하고, 대학에서 발생된 벤처를 지원하는 업무 등을 하였다. 도(都) 내외 대학의 기술 이전을 담당하는 「광역 협력실」을 설치하고, 현재 3개 대학과 기술이전 업무를 위한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같은 지역 내의 민간 기업 등으로 구성된 무료 회원 조직에 특허 정보를 일부 공개하기도 하였다. 홋카이도 대학은 바이오나 나노텍, 정보기술(IT) 계열에서 유효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권리의 유상 제공 등을 통해 연간 2천만 엔 정도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다.

TLO 부서장인 아라이소 쓰네히사(荒磯恒久)는 「도내 대학의 지식재산을 유효하게 활용함으로써 지역 산학협력 활동을 확고히 하고, 연구 성과나 축적된 과학기술을 홋카이도 지역 활성화에 활용하고 싶다」라고 강조하였다.

출처 : www.hokkaido-np.co.jp

일본 IPB, Patent Result에 「페이턴트 스코어」 등의 사업 양도

특 허 분석 툴 등에 관한 사업을 하는 Patent Result와 민사재생절차를 밟고 있는 IPB는 Patent Result에 영업권을 양도하는 것에 합의하고, 지난 5월 11일자로 사업 양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계약에 근거하여 Patent Result는 IPB가 보유하고 있던 특허의 질적 평가 지표 「페이턴트 스코어」와 관련된 서비스, 특허의 평가 툴인 「페이턴트 아틀라스」, 「페이턴트 아틀라스 for professionals」, 특허력 등급 평가 서비스 「페이턴트 익스프레스」 등의 제품과 서비스, 고객, 지식재산권 등을 양도받아 특허 분석 업무를 효율화하는 다양한 분석 툴을 개발·판매할 예정이라고 한다.

출처 : www.ipb.co.jp

유럽연합(EU) 회원국들, 새로운 공동 특허시스템 구축 착수

유 럽연합 회원국은 개인과 기업이 모든 회원국에서 공통된 단일 특허를 얻을 수 있는 「Community Patent」라는 EU 특허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전문가들은 특허는 이노베이션과 창조성을 자극하며, 유럽의 경쟁력을 강화 유지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시멘틱 웹(semantic web) 기술을 사용하여 유럽연합 연구팀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었다. 250만 유로의 자금 후원을 받고 있는 「PatExpert」(앞선 특허 문서 처리 기술) 프로젝트는 기능 서비스의 개발과 특허 절차의 최근 패러다임 변화를 목표로 한다.

「PatExpert」는 특허정보의 검색, 분류 및 다국어 제작을 위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구현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성공하였다. 발명가와 특허 심사관을 포함하여 모든 이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특허 문건을 평가하고 시각화하였다.

이번 프로젝트를 이끈 Leo Wanner 교수는 ICT 결과 보고서에서 “PatExpert의 가장 큰 성공은 문자에서 의미론적으로, 현재의 특허 절차 서비스가 따르고 있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도하였다”고 했다. “특허 분야에서 의미론적 기술의 사용은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으며, 특허 PatExpert에서 사용된 의미론적 기술은 특허 문서의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도록 하며, 검색, 분석 및 평가의 정확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스페인 Pompeu Fabra 대학의 한 연구자는 덧붙였다.

프로젝트가 끝난 지 일 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많은 그룹에서 이미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Wanner 교수에 의하면 “몇몇 기술에 대하여 외부에서 의뢰한 일반 성능 연구를 수행 중이며, 프로젝트 파트너인 Brüggemann Software사도 그들의 주력 특허 관리 제품인 「PatOrg」에 대한 일부 PatExpert 기술을 포함시키려 한다”고 언급했다.

Wanner 교수의 말에 의하면 “PatExpert는 가장 최신의 기술을 제공하므로 상업화가 가능하다고 한다. 또한 그는 “모든 개별 기술들이 독립하여 상용 어플리케이션으로서 기능할 수 있으며, 다른 특허 처리 서비스와도 조합될 수 있다”고 하면서, “현재 이 PatExpert의 기술을 시장에 선보이기 위해 협력하고자 하는 많은 관계자들이 문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특허 절차에 있어 중요한 문제는 업무량이다. 출원 절차는 “기술 명세서”(예컨대 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설명함), “특허 출원”(예컨대 특허청과 출원간의 상호 작용) 및 발명이 승인을 기다리는 “특허 계속” 중인 상태를 포함한다. 특허출원이 특허청의 법률을 충족하고, 벌써 특허를 받지 않았을 때 부여된다.

EPO(유럽특허청)은 특허출원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평가함에 있어 주된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든 문건을 목록화한 선행 기술 보고서를 준비해 놓고 있다. EPO 수장인 Alison Brimelow는 “업무 적체는 특허 시스템의 본질을 변화시키고, 특허 시스템을 정립한 자들이 예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이용될 수 있는 모호성을 만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출처 : ec.europa.eu

장쑤성 상무위원회, 자주적 지식재산권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을 경제 분야 중점 사안으로 결정

최 근 장쑤성 상무위원회는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연구부의 중점사업으로 정했다. 위원회에서는 자주적인 지식재산권을 위한 적극적인 교육과 자체 브랜드 육성을 당면한 경제 연구의 핵심으로 보고 이를 진행하고 있다.

위원회는 현재 경제 불황의 위기를 겪고 있지만, 내수성장을 장려하려는 정책을 실시하고 위기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장쑤성은 일시분기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고, 4월분 경제도 상승적인 추세로 나타나서 발전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그러나 대외 수출입의 하락이 여전하고, 기업 효율성이 하강하는 등 경제발전에 영향을 주는 불명확한 요인들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경제적인 성장을 장려하는 시기에 경제 향상에 대한 목표가 흔들리지 않도록 유지해야 한다고 하였다.

출처 : www.sipo.gov.cn

일본 농림수산성, 농수산물브랜드 보호를 위한 전국조직 설립

일 본 농림수산성은 6월에 해외에서 국산 농수산물의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 전국적인 조직을 설립했다. 중국이나 대만 등에서는 일본 지명을 마음대로 상표로 등록하거나 현지 농산품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산으로 위장 표시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 실태를 조사하여 현지 당국에 개선 요청을 지원한다는 목적이다.

이번에 새롭게 설립되는 전국조직은 「농림 수산 지식재산 보호 컨소시엄」으로, 도도부현(都道府県)이나 농업단체, 기업 등의 참가를 상정하고 있다.

농림수산성이 2009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일차 농산품의 수출을 다루는 농업단체나 기업 중 8%가 상표 등록이나 산지 위장 등의 피해를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농수산물의 산지로 지명도가 높은 홋카이도도 많은 피해를 당해, 대만에서의 현지조사에서는 대만산 우유 라벨에 「홋카이도」라고 크게 표시하거나 산지 불명의 가리비에 「오호츠크 해산」이라고 적는 등의 예가 있었다.

이를 방지한다면 일본 농산품에 대한 신뢰가 실추되는 것으로 연결되고, 일본 지명이 현지에서 제3자에 의해 상표로 등록된 경우 향후 진짜 수출품의 산지 표시가 상표권 침해로 간주되어 수출 그 자체가 어려워질 우려도 있다.

이에 전국조직은 전문 업자에게 위탁하여 중국과 대만에서의 상표 등록 출원 상황을 조사하고, 희망하는 단체에 유상으로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한국을 포함한 현지 소매점에서의 산지 위장 현황을 무료로 조사했다.

산지 위장 등이 발각된 경우에는 피해 단체, 기업 등이 현지 당국에 이의 제기를 하거나 고발 등의 절차를 적절히 실시할 수 있도록 변호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농산품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방정부도 이 조직에 참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출처 : www.hokkaido-np.co.jp

국무원, 중국의약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여 사업발전을 독려

국 무원은 얼마 전 「국무원 중국의약사업발전 지지와 촉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중국 의약법제 수립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해야 하며, 중서(中西)의학 모두 중요하지만 중국의약의 영향이 충분히 발휘되어야 한다는 방침이다.

「의견」에서는 중국 의약사업의 발전을 보장하는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의 의약법제 수립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중국의약 입법절차를 추진하여 법률과 법규를 완성해야 한다. 중국의약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이용을 강화하여 중국의약의 특허심사 표준과 중국 의약품 품종보호제도를 보완했다. 중국 의약품 보호 리스트를 제정하며 중국 의약품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전문적인 보호제도를 만들어 가야한다. 중국 의약품의 전통약재 원산지 보호업무를 강화하고, 전통약재의 우수함을 지식재산권 발전으로 연결시켜야 한다.

또한 「의견」에서는 중국의약의 산업발전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현대 중국의약의 공업과 상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하이테크 산업화의 항목으로 조직하여 지지도를 확대했다. 중국 의약업의 유명 상표 및 저명 상표에 대한 지지와 보호를 강화했다. 중국 의약품의 수출체계를 최적화하고,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여 중국 의약품 관련 기업이 국제시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지해야 한다.

「의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국의약 사업발전 지원 및 촉진의 중요성과 시급성 인식
- 중국의약 사업의 사상과 기본원칙 발전
- 중국의약과 예방보건 서비스의 발전
- 중국의약의 계승과 창조 추진
- 중국의약 관련 인재풀 강화
- 중국의약 산업발전 수준 제고
- 민족 의약발전 가속화
- 중국의약문화의 번영과 발전
- 국제적인 중국의약 사업발전 보장 대책

출처 : www.sipo.gov.cn

영국 지식재산국, 녹색 기술을 위한 특허 출원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제도 실시

지 난 5월 11일에 개최된 중국-영국 경제·재정 회담에서 발표된 바에 따르면, 5월 13일부터 기업이나 사업체들은 특허 출원 "Fast track"의 일종인 환경 지향적 이노베이션 「green channel」을 통한 특허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영국 지식재산국(UK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UKIPO)의 특허사무관 Sean Dennehey는 이번 제도가 녹색 기술(Green technologies)의 특허 등록에 소요되는 시간을 기존의 3년 이상에서 9개월 이내로 단축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특허 등록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중요 기술의 신속한 활용을 어렵게 한다는 민원이 많았고,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다」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하였다. 지난 10년 동안 녹색 기술의 특허 출원은 500%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UKIPO는 주당 23,500여 건의 특허 출원 신청을 받고 있고, 그 중 150~200여 건이 녹색 기술과 관련된 특허이다. UKIPO는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도 이 제도를 도입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출처 : www.ipo.gov.uk

영국 미디어업계, 영국 의회에 인터넷 상의 불법 다운로드 근절을 위한 대책 요구

영국의 거물 미디어 그룹인 「The Copyright Squad」는 그동안 인터넷 불법 다운로드 문제에 관하여 할리우드(Hollywood)의 미디어 기업들과 간담을 가져왔고, 이와 관련해 온라인상의 불법 유통으로부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s, ISP)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 통과에 대하여 영국 의회를 압박하고 있다. 이들이 제안한 내용은 미디어 파일을 불법적으로 유통시킨 사람에 대한 ISP측의 경고 조치와 그 뒤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 다운로드와 관련해서는 인터넷으로부터의 격리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다.

영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협회(UK Internet Service Providers Association, UKISPA)는 자신들도 온라인 불법 침해의 감시와 관리에 책임이 있다는 의견을 계속적으로 피력해 왔다.

이번에 영국의회가 추진 중인 새로운 법안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는 “The Green Paper”가 지난 2월 The Times of London지에 사전 유출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The Times지는 최근 보도를 통해 새로운 법안이 통과 된다면 “Three Strikes” 제도에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ISP도 그리 안전한 입장은 아닐 것이라고 전하며, 많은 개인 온라인 이용자와 ISP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냈다.

한편 BBC의 보도에 의하면, 최근 스웨덴에서 새로운 저작권침해금지법인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nforcement Directive (IPRED)」이 시행되면서, 인터넷 사용량이 33%나 감소하였다고 한다. 스웨덴은 유럽연합 회원국들 중에서도 지식재산권 침해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국가로 지목되어 왔으며, 스웨덴과 유럽연합이 IPRED 제정 등의 저작권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가운데 2009년 4월 세계 최대 ‘비트토렌트’ 방식 파일 공유 사이트 중 하나인 스웨덴의 파일럿 베이(Pirate Bay) 운영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저작권법으로 보호받고 있는 지식재산의 스트리밍이나 다운로드를 제공하는 웹 서버들은 처벌받지 않아 왔다. 한편, 미국에서도 2008년 10월 George W. Bush 전 미국 대통령이 지식재산권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 침해금지법(Intellectual Property anti-piracy law)을 제정하였고, 이에 뒤이어 Obama 미 대통령 정부도 미 무역대표부의 Ron Kirk를 캐나다에 파견하여 지식재산권법의 제정과 강화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게 했다.

유럽 미디어 시장에 영향을 주는 지식재산권 침해자들을 감시하는 목적으로, 각국 미디어 협회들은 합동으로 「EU Green Paper on Counterfeiting and Piracy: A Call to Action」을 발표하여 추진했다. 이들은 이번 보고서에서 연간 불법 침해로 인해 손실되는 액수가 연간 45억 유로에 달한다고 전했다.

출처 : www.wrx.zen.co.uk

일본, 중국의 「원시 코드 강제 공개」로 자국의 IT산업에 대한 우려감 표시

중국 정부가 IT보안 제품의 강제 인증제도 시행을 공표한 것에 대해, 일본 IT업계는 우려 섞인 반응을 보였다. IT보안 제품의 강제 인증제도라는 것은 중국이 WTO에 가맹했을 때 제정한 CCC 인증(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중국강제인증)의 일환이라고 한다. CCC 인증은 전기제품 등의 안전성을 인증하는 공업 규격으로, 방화벽이나 바이러스 대책 소프트웨어 등 IT보안 제품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었다.

문제가 된 것은 「강제로 원시 코드를 공개하게 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디지털 가전도 대상이 된다는 견해도 있었고, 원시 코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문제가 커졌다. 일본·미국·유럽 정부도 「지식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여 강하게 철회를 요구하였다.

결국, 중국은 2010년 5월로 제도 도입을 연기하고 그 대상을 정부 조달품으로 한정했다고 한다. 일본이나 미국은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국가들의 염려는 당연하지만 일방적으로 내몰린 중국에도 할 말은 있을 것이라고 본다.

사실 이 제도는 그 진위보다 1980년대 일본의 IBM 산업스파이 사건이나 TRON 프로젝트의 좌절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일본은 지금 중국과 같은 입장으로, 미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견제당하고 있었다. 그 무렵 일본의 IT산업은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던 시기로, 미국에 있어서는 일본의 IT산업이 큰 위협이었다.

중국은 지금 경제대국, 소비대국의 길에 들어서고 있다. IT산업에 있어서도 머지않아 1980년대의 일본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번과 같은 사건도 예전에는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강제 공개가 요구되는 것은 당연하고, 싫으면 거래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할 수 있었겠지만, 현재는 중국의 시장과 강력한 라이벌 기업들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와 유사한 일은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처럼 비난당하는 쪽에서 비난하는 쪽이 된 일본이지만, 과연 이번 강제 인증제도로 일본 IT산업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일본의 IT산업에는 미국 제품을 상대로 싸울 수 있는 제품, 특히 소프트웨어 제품은 거의 없다는 견해도 있다. 결국 일본의 IT산업은 이번 강제 인증제도에 대해 이렇게 과민반응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며, 사실 중국의 제도 정책보다는 일본 IT산업 자체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출처 : itpro.nikkeibp.co.jp

국가관권국, 전국 통일된 저작권 등록기구 설립

국가관권국의 관리 감독 책임 하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저작권 등록기구를 설립하였다. 이는 저작권 등록방법의 수정 과정 중에 확정된 안건으로, 순조로운 저작권 등록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국가관권국에 의하여 선택된 기구가 전국적으로 통일된 저작권 등록 기구로 지정되었다. 또한 이 등록기구가 사용하는 통일된 명칭이 전국 등록 업무에 사용된다고 한다.

통일된 등록기구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 통일된 규범으로 등록하기 편하고, 등록절차, 심사표준, 등기증서, 등기정보를 모아 공지하고 문의하는 것을 단일화시켜 실행함
- 등록업무의 중복에 따른 혼란의 발생을 피하는데 용이하고, 관리 감독이 편리함
- 등록정보화시스템 개발이 편리하고, 정보가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가재정자원을 절약할 수 있음
- 각 지역 저작권 등록발전의 불균형 사태를 해결하고, 등록비용문제를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

등록기구 통일 과정 중에 반드시 주의하여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전국 각지에 분포한 저작권자가 어떻게 등록을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분산된 저작권자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등록기구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정보전달력을 강화하는 것 이외에도, 적당한 지역에 지사를 설립하는 것도 중요하다. 실제 수요에 근거하여 각지에 기구의 지사를 설립했다. 각 지사의 구체적인 조건에 근거하여 필요한 권리를 부여하고, 재정 정책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용 가능한 자원을 활용하였다.

현재 많은 지역이 저작권과 관련된 산업발전을 위하여 저작권 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다. 지사 설립 시, 반드시 각 지역이 저작권 행정관리 직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또한 지방관권국의 의견과 건의를 충분히 존중하고, 해당 지역에서 조건을 갖춘 사업기구, 사회단체 혹은 기타 기구를 추천하여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각 지역의 지사는 현존하는 조건을 충분히 활용하여 추진한다.

지사가 합리적으로 설립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등록기구 지사의 설립과 관리를 국가관권국의 관리감독 범위에 포함시켰다. 또한 저작권 등록의 신빙성을 높이고, 미래에 설립될 지사의 다른 직책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등록기구와 유사한 「국가 저작권 등록센터」의 명칭을 부여하는 것도 중요하다.

출처 : www.sipo.gov.cn

파나소닉 등, 신규 지상파 디지털방송 녹화기기에 저작권료 추가 거부

지난 4월 8일, 파나소닉이 새로 발매되는 지상파 디지털방송 녹화기기에 「저작권료」는 추가할 수 없음을 통보하는 문서를 저작권 관리 단체에 보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도시바 역시 저작권 관리 단체에 같은 취지를 전달했다고 한다. 현행법에는 제조업체의 협력 의무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 시오타니(塩谷) 문부과학성 장관은 「문제가 있다」라는 반응이다.

저작권료란 DVD 레코더 등 디지털 녹화기기에 부과되고 있는 일종의 「보상금」이다. 제조회사측은 지상파 디지털방송의 녹화는 「더빙 10」등을 통해 기술적으로 복제가 제어되고 있다고 하면서, 보상금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법은 보상금 대상에 대해 지상파 디지털방송의 녹화를 제외한다고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제조업체에 보상금 징수에 협력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행법 규정에 반대하여 제조업체가 협력을 거부하는 방침을 나타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문부과학성 장관의 답변 역시 국가 기관으로서 처음으로 제조업체를 비판하는 내용이 되었다.

보상금은 제조업체가 소비자에게서 제품가격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징수하여, 보상금관리협회 등을 통해서 배우 등 권리자에게 지불하고 있다. 예를 들어 DVD 레코더의 경우에는 1대 당 수백 엔 정도이다. 파나소닉은 4월 8일자 문서에서 새로 발매한 지상파 디지털방송 전용 기종에 대해 「보상금 징수에 협력할 수 없음을 통지해드립니다」라고 협회에 알렸다. 파나소닉 홍보 그룹은 「이번 기기는 지불 대상인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 제조업체만의 판단으로 소비자로부터 징수를 하는 것에는 협력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다.

출처 : www.asahi.com

제공 R&D 특허센터 홈페이지
(www.ipr-guide.org)



우리회 가치창조, 직원과의 대화로 풀어간다

개인과 진흥회의 발전을 위해 독서경영 전개



우리회 최중협 상근부회장은 취임 100일을 기념으로 지난 4월 30일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에서 직원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시간은 외부로부터의 개혁요구에 맞춰 전환기에 놓여있는 진흥회가 향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는 취지로 진행되었다.

최중협 상근부회장은 “개인의 성장과 진흥회의 발전을 위해서 직원들은 새로운 환경에 맞는 사명을 분명히 해야 하고, 기존 생각의 틀, 혹은 관습적인 업무의 틀에서 자유로워져야 하며, 개인의 잠재력을 일깨우고 꿈을 가져야 한다”는 당부와 함께, 직원들의 질문

에도 진솔한 답변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최 부회장은 독서경영을 통해 직원 개개인의 성장과 발전만을 도모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경영에 직접 도움이 되는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매주 월요일, 직접 작성한 편지를 통해 전 직원에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주는 등 격려를 아끼지 않고 있다.



기술경매 사상 최고가 갱신

sbs 「아이디어 하우스」에서 150억 원에 낙찰

기술경매 사상 최고가인 150억 원이 터졌다. 특허청과 우리회가 지원하고 있는 SBS-TV 「아이디어 하우스」 프로그램(발명의 날 특집방송)에서 기존 최고가인 30억 원의 다섯 배 금액으로 낙찰된 기술이 탄생된 것이다.

화제의 기술은 “유아용 비데”로서 개발자는 경북 하이브리드부품 연구원의 선임연구원인 김성욱 공학박사.

김 박사는 그동안 꾸준한 연구 활동을 통해 특허권을 획득해왔는데, 이번 기술도 몇 년간에 걸친 연구 끝에 개발된 제품이라고 한다.

유아를 눕혀서 따뜻한 물로 용변을 닦아내고 온풍으로 물기를 말려주며, 수납함에 들어있는 파우더나 기저귀로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핵심. 또한, 멜로디가 흘러나와서 유아를 편안하게 잠들게 해주는 것도 큰 특징이다.



한편, 김 박사는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의 도움으로 기술이전을 잘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고마움을 표시했다.

특허청과 우리회는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지난 1982년부터 시작한 시작품제작지원사업에서 올해 SBS의 기술경매 프로그램인 「아이디어 하우스」를 일부 지원해주는 것으로 방침을 세우고, 프로그램 제작비와 시작품 제작비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특허·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으로 등록된 권리를 가지고 있어도 자금이 없어서 시작품을 만들지 못하는 개인발명가 및 중소 벤처기업자를 위해 만들어진 사업으로 최고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국고로 무상 지원하였다.

김 박사의 <유아용 비데>도 발명의 날 특집방송을 위해 228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되어 오늘의 영광을 안게 된 것이다.

특허청과 우리회는 앞으로도 시작품 제작지원을 확대하여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최대한 지원해 줄 예정이다.

규제 개혁을 위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과태료 부과 행정의 투명성, 예측가능성 확보 기대

하 반기에는 위조상품 제조, 유통을 조사하는 공무원을 방해할 때 부과되는 과태료의 기준이 구체화된다. 특허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법)'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율하여 하반기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부정법에서는 위조상품 관련 조사 방해 등의 행위에 대해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는데, 과태료 부과는 국민의 의무와 직결되는 사항으로 명확하고 구체적인 규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특허청에서는 법령 위반 행위를 그 정도 및 결과에 따라 유형화하고, 행위 유형과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하는 구체적 부과기준을 부정법 시행령에 마련하였다. 개정 법령이 시행되면 법령위반자는 자신에게 부과될 과태료를 예측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명확해져 자의적인 과태료 금액 결정을 예방할 수 있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시행령은 5월 법제처 심사와 6월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나눔교육 행복한 세상 함께 만들어 가요

발명투어!! 대덕소년원 방문

트 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지난 5월 21일 발명교육의 소외계층인 대덕소년원의 청소년 50명을 대상으로 발명교육을 실시하였다.

그간 발명투어과정은 정규학교 학생중심의 강연이었으나 올해부터는 발명교육을 접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으로 그 대상을 다양화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나눔교육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난 5월 8일부터 9일까지 나눔캠프를 개최하여 지역아동복지센터 공부방 청소년 114명 대상으로 발명을 통한 자기주도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특허청은 발명의 달을 맞이하여 발명교육센터 전문강사(서울보성고 교사 정호근)의 발명에 관한 동영상을 시작으로 나눔과 배려를 실천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인성함양 중심의 발명교육을 소개하였다.

소년원생에 대한 발명교육은 지난 4월 29일 춘천소년원을 시작으로 이번 대덕소년원 방문까지 학생들의 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되어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허청은 이를 계기로 소년원에 대한 발명교육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녹색기술, 부품소재 中企, 강력한 특허로 무장하여 미래시장 선점

특허청, 녹색기술, 부품소재 中企에 '지재권(IP)중심의 기술획득전략' 수립 2차 지원

트 허청은 첨단부품·소재산업분야의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재권(IP)-연구개발(R&D) 전략지원담을 파견하여 '지재권중심의 기술획득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2009년 첨단 부품·소재산업 IP-R&D 전략지원사업"의 2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1,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으로 성장하면, Patent Troll 등 외국 선진기업으로부터 공격적인 특허공세를 받아, 특허소송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을 감안, 일본 등 선진국 기업이 특허망을 촘촘히 구축하여 세계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첨단, 부품소재 분야에서 IP 강소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총 60억 원 규모로, 첨단부품소재분야 중소·중견기업의 신청을 받아 이중 최대 60개 기업을 선정하여 기업당 과제수행비용의 80%(최대 9,400만 원)를 지원한다. 또한, 과제별 20%에 해당하는 기업부담금 역시 전략수립 후 해당 기업이 전략에 기초하여 국내의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특허 경비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미래 그린에너지 기술의 지재권 확보를 위한 첫걸음

특허청 & 한국가스공사 MOU 체결

트 허청과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5월 6일 MOU를 체결하고 특허 등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의 전략적 분석을 통해 연료전지 및 가스하이드레이트 등 미래 그린에너지 기술 개발을 선도하기 위한 공동 협력을 합의하였다.

특허청장은 수소연료전지 등 미래기술은 미래 시장을 주도할 상품을 예측한 후 이를 구현할 핵심, 원천 특허에 관한 최적의 포트폴리오에 따라 개발이 이루어져야 함을 설명하고, 한국가스공사의 기술개발 인프라와 특허청의 전략적 지재권 분석 기법은 최고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한국가스공사는 LNG 터미널, 저장탱크 등에 관해서는 이미 독자 기술을 개발하고, 6년간 1,186억 원을 투입하여 천연가스 액화플랜트 기술과 가스전 등 미래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특허청과 한국가스공사는 금번 MOU를 통해 미래 그린에너지 특허기술 분석 및 기술개발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며, 특히 한국가스공사는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지재권화를 위하여 연구과제의 수립·기획 단계에서부터 선행기술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특허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특허성 평가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치열한 特許 戰爭에 대응할 核心 戰士들을 길러낸다

특허청, 내년 1학기부터 지식재산 전문학위(MIP)과정 본격 도입

빠르면 내년 1학기 중 대학에 지식재산 전문학위(석사, MIP, Master of Intellectual Property)과정이 도입되어 운영될 예정이다.

특허청은 해외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내(社內) 지식재산 전략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식재산 전문학위과정 개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 전문 인력을 본격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해외 소송이 급증하고 지재권 중심의 경영전략이 기업의 핵심 전략으로 등장하면서 지식재산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기업은 공학·특허 법률 등의 분야에서 실무능력을 겸비한 융합형 인재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그간의 지식재산 교육은 법적 측면에서 이론 중심으로 이루어져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과 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특허청에서 지식재산 전문 학위과정 도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지식재산 강국들은 치열한 지재권 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일찍이 해외 소송 사례 실무, 지재권 중심의 경영전략 등 지식재산 학위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동경이과대학(東京理科大学) 등에서는 지식재산전략(MIP) 과정을 개설하여 지식재산 분야의 공학·법률·경영 등 다양한 과목을 교육 중에 있다.

특허청은 우선 시범적으로 2개 이내로 교육기관을 선정, 향후 5년간 총 25억 원 이내로 학위과정 설치·운영을 지원한다. 또한, 2년간 사업 추진 후에는 중간평가를 통해 최적의 교육모형을 발굴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식재산 전문대학원'의 도입도 검토·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대학·출연(연)의 우수발명 해외 특허출원 비용 지원

각각 45개씩 90개 기술 대상...최대 1,200만 원까지

특허청은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기술 등 대학과 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총 90개의 우수기술에 대해 해외 특허출원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해외특허경비 지원사업은 특허청이 국제적 파급효과가 큰 우수 기술이 출원비용 부족으로 권리화 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지원 금액은 PCT(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특허) 출원 200만 원, 미국·일본·중국 등 해외개별국가 출원 300만 원, 유럽 출원 600만 원으로 1개 기술 당 최대 3개국까지, 최대 1,200만 원까지이다.

지원대상은 특허출원 평가모델에 의하여 출원 전 평가를 실시하고, 선행기술 조사를 통하여 사전 검증된 기술로 해외 기술의 질적 향상과 평가 역량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발명인의 성공스토리 책자 발간

총 15편의 발명을 향한 도전과 애환 그리고 성공의 감동 스토리

특허청은 발명의 달 5월을 맞아 발명에 대한 인식제고와 발명의욕을 고취하고자 발명인들의 발명이야기를 책자로 발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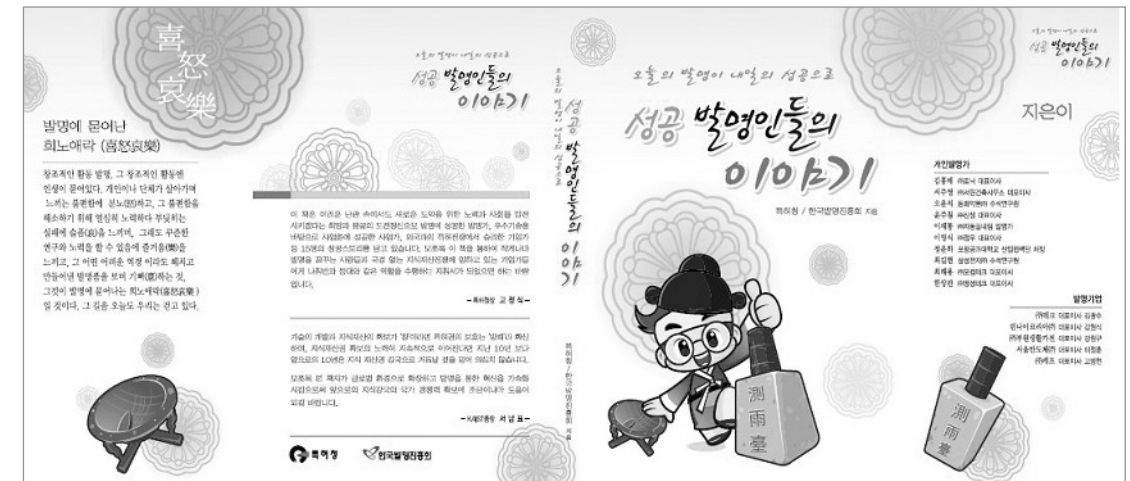
책자는 올해 제44회 「발명의 달」기념식에서 상을 받은 발명인과 기업, 역대 발명대왕 등 수상 경험이 있는 발명인 및 기업 중에서 모범이 되는 사례를 엄선하여 '불굴의 도전정신으로 발명에 성공한 발명가, 우수기술을 바탕으로 사업화에 성공한 사업가, 외국과의 특허전쟁에서 승리한 기업가' 등 발명인 10인과 기업 5개 총 15편의 발명이야기를 담고 있다.

'성공 발명인들의 이야기'라는 책 제목처럼 책자는 발명에 따른 난관과 극복사례, 발명과 관련한 에피소드, 기술 개발 성과, 개발 전·후 비교분석, 사업화 진행 시 어려웠던 일과 극복사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독자들이 지루해 하지 않도록 수필형식으로 편찬하여 재미와 흥미를 더했다.

특허청장은 발간사를 통해 본 책자가 '발명을 꿈꾸는 사람들과 국경 없는 지식재산전쟁에 임하고 있는 기업가들에게 나침반과 등대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지침서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책자는 발명유관기관, 발명교실 등에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책자 표지 이미지)



제공 특허청

녹사평역 발명테마 명소로 떠오르다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 세계 최초 '발명테마역'으로 변신
 "녹사평역에 오면 아이디어가 깨어난다" 한국대학발명협회



지하철 567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와 한국대학발명협회는 6호선 녹사평역을 세계 최초의 지하철 발명테마역으로 탈바꿈하여 지난 5월 22일 오전 11시에 개관식을 하였다.

한국대학발명협회는 녹사평역 지하4층에 발명아이디어 테마관을 설치하여 명실 공히 우리나라 발명의 메카로 꾸민다고 밝혔다.

이곳에는 발명 기업을 소개하는 발명기업 전시관, 주요 발명제품을 전시하는 발명품전시관 등 39개의 전시관이 있으며, 녹색성장을 위한 아이디어 전시관과 100여 명이 수강할 수 있는 세미나실 및 발명강의실, 국내외 발명가를 소개하는 명예의 전당 등으로 꾸며져 발명에 관한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다.

또한 YTN 방송 스튜디오도 설치되어 YTN 과학채널 사이언스 TV에서 매주 발명가 및 발명동아리에 관해 소개하는 '무한상상' 프로그램을 현장 진행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발명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청소년 학습관을 조성하여 매월 다양한 주제로 국내기업의 새로운 발명품을 전시하고, 발명 기업인의 강연도 실시하는 등 발명과 특허가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또한, 한국대학발명협회 교수들을 주축으로 브레인협력단을 구성하여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와 자문을 제공하는 한편, 제품개발을 위한 발명인과 기업체의 네트워크도 구축할 계획이다.

누구나 소중한 아이디어만 가지고 녹사평역에 가면 발명과 특허에 관해 한자리에서 실현될 수 있는 윈스톱 서비스 시스템을 만나볼 수 있다.

이날 개관식 행사에는 지식경제위원장이신 국회의원 정장선,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 이명수 의원을 비롯하여 특허청 김원중 차장, 서울시 이덕수 부시장(행정2부시장),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 한국대학발명협회 교수 및 전국 초·중·고 교사 등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아울러 지난 1월 5일부터 4월 3일까지 초·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공모한 녹색성장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물사랑' 논문·포스터 경진대회 입상자에 대한 시상도 함께 실시하였다.

'물사랑' 경진대회에는 1,200여 명의 학생이 응모하였으며, 환경부장관상을 비롯하여 입상자 30명에게는 총 1,000만 원의 장학금과 해외연수의 특전이 주어진다.

관계자는 "세계 최초로 지하철역에 만든 발명테마관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여 발명에 대해 거리감을 없애고 생활화하는데 기여하고, 관련 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국가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회원가입을 축하합니다!



- 회 원 명 : (주)워크북
- 대 표 자 : 장원중
- 업태/종목 : 서비스 / 산업디자인 등
- 가입년월일 : 2009년 4월 28일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81-7 논현빌딩
- 전화번호 : 02)3448-4495
- 홈페이지주소 : www.walkbook.co.kr



- 회 원 명 : (주)청호컴넷
- 대 표 자 : 강대영
- 업태/종목 : 제조
- 가입년월일 : 2009년 5월 7일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195-12
- 전화번호 : 02)3670-7700
- 홈페이지주소 : www.chunghocomnet.com



- 회 원 명 : 한양특허법인
- 대 표 자 : 김연수
- 업태/종목 : 서비스
- 가입년월일 : 2009년 5월 21일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7-25 큰길타워 9층
- 전화번호 : 02)555-2098
- 홈페이지주소 : www.hanyanglaw.com

- 회 원 명 : (주)바이피엘
- 대 표 자 : 박준원
- 업태/종목 : 제조업 / 화장품
- 가입년월일 : 2009년 5월 7일
- 주 소 :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울문리 941 강원테크노파크 춘천벤처공장 201
- 전화번호 : 033)241-9923
- 홈페이지주소 : www.biopl21.com



INVENTION 365

3

인공소다

지금은 우리나라도 공업이 발달하여 질 좋은 비누를 많이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는 여러 나라에서 육지식물이나 해초에서 얻은 잿물로 비누를 대신해왔다. 잿물이란 식물을 태워 얻은 재를 물에 걸러 만든 액체로, 오늘날의 가성소다처럼 알칼리성이어서 주로 세탁하는 데 사용되었다.

시대가 바뀌면서 잿물은 점차 사라지고, 화학공업이 발달하면서 인공적인 방법으로 소다를 제조하게 되었다. 이 인공소다를 처음으로 제조하여 화학공업의 발달에 기초를 이룬 사람은 프랑스의 외과의사이자 화학자였던 니콜라스 르블랑이다.

그는 소금과 황산을 혼합하여 가열하고 여기서 생긴 황산나트륨에 석회석과 숯을 섞어 뜨겁게 가열하는 방법으로 탄산나트륨(탄산소다)을 얻어냈다. 성공적인 소다 발명이었다.

인공위성

지구의 위성인 달은 지구의 둘레를 돌고 있다. 이 달과 같이 지구의 둘레를 도는 위성을 인공적으로 만들어 그 위성에 여러 가지 관측 기계를 실어서 무전으로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해주면 크게 도움이 된다. 또 이것은 우주 여행을 위한 우주 정거장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데는 로켓이 사용되는데,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로켓이 발달하여 미국과 소련에서 인공위성의 연구가 활발해졌다.

지구의 여러 가지 성질을 같은 해에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전세계 과학자들의 국제지구 관측의 해가 정해져 제1회는 1882년에 모임을 가졌다. 제2회는 50년 후인 1932년, 제3회는 미국과 소련이 인공위성을 써서 전리층이나 상층부를 연구·조사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1957년 소련이 1호를 쏘아 올렸다.

6

5

인공조미료

우리 나라에서 미원이나 미풍이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진 아지노모토라는 화학조미료는 한동안 조미료의 대명사로 일컬어졌다.

이 아지노모토의 발명가는 일본의 이케다 박사이다. 1908년의 어느 날, 저녁 식탁에 오른 국물을 맛보던 이케다는 아내로부터 다시마 국물이라는 말을 듣고 호기심이 발동했다. 국물맛이 너무 좋았던 것이다. 이케다 박사는 다시마를 물에 삶아 국물을 만들고, 계속 열을 가해 수분을 완전히 증발시켰다. 그러자 하얀 침전물이 솥에 남았다. 흰 가루와 소금을 제거하고 다시 열을 가해 여러 가지 요소로 분류하기를 수 차례. 맨 마지막으로 남은 쌀 모양의 결정체를 분석한 결과 글루타민산 소다라는 것을 알아냈다. 맛의 비밀인 글루타민산 소다는 이케다 박사에 의해 밀 등에 있는 단백질에서 분해되어 조미료로 탄생되었다.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남·여)
 주소:
 전화: HP
 □□□ - □□□

받는 사람
월간 발명특허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발명진흥회 19F 고객지원팀
 1 3 5 - 9 8 0

월간 발명특허
광고게재안내

월간 발명특허
2009. 7

독자카드

• 이번호 내용중에서 가장 재미있고, 유익했던 기사와 아쉬웠던 점은?

• 앞으로 꼭 다루었으면 하는 기사는?

• 기타 '발명특허'에 하고 싶은 말씀은?

7월호 퍼즐정답

1	2		4		5	
	3					
8				6	7	
9	10			13		
			12			
11					15	
			14			

월간 「발명특허」

광고게재 안내

우리회 회지인 월간「발명특허」誌는 각 회원사 및 국내외 유관기관, 기업, 도서관, 학교, 발명가, 주부 및 학생 등에 광범위하게 제공되고 있는 발명진흥사업의 활성화를 비롯한 국내외 산업재산권제도 및 정보자료의 대변지입니다. 다음과 같이 본지에 귀사의 홍보를 위한 광고안내를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원고모집안내

월간「발명특허」誌는 국내·외 지식재산권에 대한 분야별 전문적 의견과 논문, 그리고 정책·기획·출원 동향 등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널리 확산 보급함으로써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간되는 전문지입니다. 본 「발명특허」誌가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의 선도 및 기술·정책 전문지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별 전문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모집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논문, 발명칼럼, 판례 등
- 원고제목: 관련 분야별로 자유로이 선택
- 원고분량: 제한없음
- 모집시기: 수시
- 보내실곳: E-mail - eldaah7@kipa.org

광고 및 원고 모집 문의: 한국발명진흥회 고객지원팀 TEL (02)3459-2868

광고가격(1개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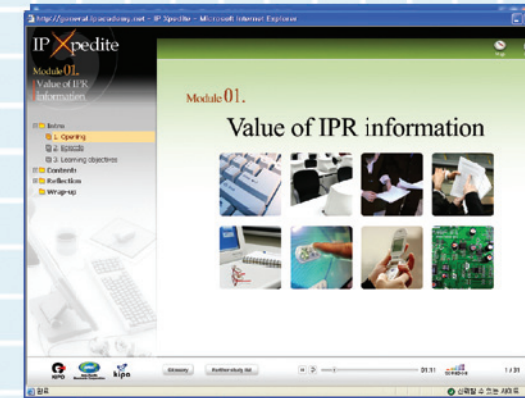
광고게재면	규격	가격	비고
표지 4	칼라 전면	900,000	부가세 별도
표지 3	"	700,000	
표지 2	"	700,000	
내지 화보	"	500,000	
내지 흑백	흑백 전면	300,000	

우리회 지회 안내

지 회	지회장	사무국장	주 소	연 락 처
부산지회	김광부	김유현	부산시 남구 문현3동 243번지	051-645-9683
광주지회	고정주	김 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천동 621-15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층	062-954-3841
대전지회	이상복	박병영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45-1 2층 (대전한일병원 근처)	042-638-4307
강원지회	차명진	송상엽	강원도 춘천시 후평1동 198-25	033-258-6580

편집 : 고객지원팀 김민국 (Tel, 02-3459-2868, Fax, 02-3459-2879)

한국발명진흥회



■ 학습대상

지재권 정보의 기초 개념 및 그 활용방법에 대해 학습하고자하는 대학, 기업, 연구소 등
지재권 기초 개념을 습득한 자로서 지재권 학습의 다음단계로 진행하고자 하는 자

■ 강의소개

본 콘텐츠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가 공동으로 개발한 지재권 정보에
관한 콘텐츠입니다.
모듈별로 제시되는 다양한 에피소드와 함께 다양한 시연을 통해 지재권 정보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 학습목표

국제적 관점의 지재권 정보에 관한 가치, 검색방법,
분석방법 및 특허정보의 해석방법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 수강방법

1. <http://general.ipacademy.net> ▶ 2. 로그인(회원가입)
- ▶ 3. 교육과정 중 일반정규과정 선택 ▶ 4. 수강신청
- ▶ 5. 나의강의실에서 학습



대한민국 명품 스타탄생!

無방부제 숙취해소용 천연차 **여명808**



제43회 발명의 날 (5월 19일)
금탑산업훈장 수훈



한국경제신문·중앙일보 공동
조사·평가 브랜드스톡
2009 대한민국 브랜드스타



Korea
Master Brand AWARDS 2009
2009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



**발명
특허품**

KWCI 1 위
한국소비자생활지수4년연속

"2007 편의점협회 음료전체매출 1위"

여명808은 음주전후 숙취해소에
정말 좋은 세계 11개국 발명특허품입니다.

오리나무 외에 100% 천연식물을 배합하여 808번의 실험
끝에 최적의 숙취해소 효과가 있는 천연차를 탄생시켰습니다.
여명808은 미국 FDA공인 연구기관으로부터 인체 무독성판정
(IW09297-2)을 공인받은 검증된 천연차입니다.
또한 1999년 국가공인기관인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서 숙취해
소에 대한 탁월한 효능이 있음을 8개월간에 걸친 임상실험을
통하여 특허기술평가로 검증되었습니다.



**발명
특허품**



LOHAS 인증을 확인하세요
스타미나증진용 천연차
다미나909
세계 10개국 국제발명 특허품

세계 발명왕
박경현